

2006년 인권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인권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6. 12.

연구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책임자	정 원 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원	김 성 기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장 기 성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조 순 주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목 차

□ 연구 요약 .....	1
I. 서론 .....	15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	15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5
2. 연구내용 및 범위 .....	16
제2절 연구방법 및 조사의 개요 .....	19
1. 연구방법 .....	19
2. 조사의 개요 .....	20
제3절 연구 의의와 한계 .....	23
1. 연구의 의의 .....	23
2. 연구의 한계 .....	24
II. 인권교육의 개념과 국내·외 인권교육 활동 .....	25
제1절 인권의 개념 및 의의 .....	25
1. 인권의 개념 .....	25
2. 인권의 의의 .....	28
3. 인권의 유형 .....	29
제2절 인권교육의 개념 .....	34
1. 인권교육의 정의와 목표 .....	34

2. 인권교육의 필요성 .....	37
제3절 유엔의 인권교육활동 .....	40
1. 인권교육 관련 주요 국제 인권 기준 .....	40
2. 유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 .....	47
제4절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동향 .....	53
1. 인권교육 조직체계 및 업무현황 .....	53
2. 2006년도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주요 사업 계획 .....	53
3.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활동 실적 .....	58
4.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활동 .....	61
III.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71
제1절 법무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74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74
2.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 .....	75
3. 인권교육과정 .....	79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0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91
제2절 군대분야 인권교육 운영 실태 .....	95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95
2. 인권교육 추진 기반 조성 .....	98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100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8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110

제3절 경찰분야 인권교육 운영 실태 .....	115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15
2.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 .....	117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120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7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128
제4절 행정분야 인권교육 운영 실태 .....	130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30
2. 인권교육 추진 기반조성 실태 .....	132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133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37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139
제5절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 .....	140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40
2. 인권교육 추진 기반조성 실태 .....	141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143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50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151
제6절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총괄 분석 .....	153
IV. 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 .....	163
제1절 필리핀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 .....	164
1. 필리핀의 인권 교육 정책 .....	164
2.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소개 .....	166

3.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활동	168
4. 경찰, 군대에서의 인권교육	169
5. 필리핀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시사점	171
6. 필리핀의 대표적 인권교육 실천사례	172
7. 이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178
제2절 일본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189
1. 일본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 변화과정	189
2. 일본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과 추진기구	191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동-오사카를 중심으로	194
4. 일본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시사점	200
5. 일본의 인권교육 실천 프로그램 사례	203
제3절 인도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207
1.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207
2. 공공분야 인권교육 정책	207
3. 인도의 공공분야 관련 주요 인권교육 활동	209
4. 인도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시사점	211
5. 인도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천 사례	212
제4절 한국과 외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사례 비교·분석	216
V. 국내 인권교육 규정 및 제도화 추진 동향	219
제1절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법	220
1. 대한민국 헌법	220
2. 국가인권위원회법	221
3. 교육기본법	223

4. 공무원교육훈련법 .....	225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227
6. 사회복지사업법 .....	228
7. 출입국관리법 .....	230
제2절 인권교육 법제화 및 제도화 추진 동향 .....	232
1. 인권교육의 법제화 동향 .....	232
2. 인권교육 심의·결정 기구의 설치 .....	239
3. 인권교육기관의 설립 .....	240
VI. 요약 및 결론 .....	24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45
제2절 결론 및 함의 .....	252
□ 참고문헌 .....	257
□ 부록 .....	261

## 표 차례

[표-1]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 .....	21
[표-2]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안 .....	22
[표-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분야 2006년 인권교육 주요 사업계획 .....	54
[표-4] 인권특강교육 지원 현황 .....	59
[표-5]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	59
[표-6] 공공분야 연수과정 운영 현황 .....	60
[표-7] 인권교재 및 자료 개발 현황 .....	61
[표-8]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관리 체계 .....	62
[표-9] 법무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64
[표-10] 군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65
[표-11] 경찰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66
[표-12] 행정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68
[표-13]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	70
[표-14] 법무분야 공무원의 규모 .....	74
[표-15] 법무부 인권국 부서의 업무 현황 .....	78
[표-16]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1 .....	80
[표-17]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2 .....	82
[표-18]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 .....	84
[표-19] 교정직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 .....	86
[표-20] 출입국관리직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	88
[표-21] 법무분야 검사·교정직·출입국사무직 인권교육 실태 비교 .....	92
[표-22] 국방부의 장병기본권 교육과정 .....	97
[표-23] 국방부 인권팀의 업무 현황 .....	97
[표-24] 군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육군 사례 .....	99
[표-25] 군대분야에서 강사 운영 실태-공군 사례 .....	102
[표-26] 군대분야 장병기본권 교육 현황-공군 사례 .....	104
[표-27] 군대분야 인권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공군 사례 .....	107
[표-28] 군대분야 육군·해군·공군의 인권교육 실태 비교 .....	111

[표-29]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과정-경찰대학 사례 .....	116
[표-30]	경찰분야 2005년도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19
[표-31]	경찰분야 인권교육 현황 .....	122
[표-32]	경찰분야 2006년도 인권교육 실적 목표 .....	123
[표-33]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방법-경찰 대학 사례 .....	124
[표-34]	경찰청의 인권교육 강사 운영 실태-서울 경찰청 사례 .....	124
[표-35]	경찰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개설과목 및 교수방법 .....	125
[표-36]	경찰분야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26
[표-37]	행정분야의 교육훈련 체계 .....	131
[표-38]	중앙공무원연수원의 인권교육 현황 .....	134
[표-39]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인권교육 현황 .....	135
[표-40]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인권교육 현황 .....	136
[표-41]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현황-1 .....	144
[표-42]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현황-2 .....	148
[표-43]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	149
[표-44]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총괄 분석표 .....	153
[표-45]	경찰, 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HRETP) .....	173
[표-46]	필리핀 HRETP의 제1코스-자신의 가치들 .....	175
[표-47]	필리핀 HRETP의 제2코스-타인의 가치들 .....	176
[표-48]	필리핀 HRETP의 제3코스-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가치들 .....	177
[표-49]	필리핀 HRETP의 제4코스-국가에 대한 가치들 .....	178
[표-50]	필리핀 HRETP의 제5코스-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80
[표-51]	필리핀 HRETP의 제6코스-헌법에서의 권리 .....	181
[표-52]	필리핀 HRETP의 제7코스-평화시기에 당신과 타인의 권리 .....	182
[표-53]	필리핀 HRETP의 제8코스-분쟁 상황에서 당신과 타인의 권리 .....	185
[표-54]	필리핀 HRETP의 제9코스-유치장/감옥에 구금자에 대한 권리 보호 .....	186
[표-55]	필리핀 HRETP의 제10코스-형사재판체계 하에서 인권보호와 증진 .....	187
[표-56]	필리핀 HRETP의 제11코스-인권/법집행기관/국가안전보장기구 .....	188
[표-57]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태 .....	210
[표-58]	인도의 인권훈련 프로그램 .....	213
[표-59]	아시아 4개국 공공부분 인권교육 비교·분석표 .....	218

## 그림 차례

[그림-1]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분석틀 .....	72
[그림-2] 법무연수원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적 .....	76
[그림-3]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오사카 행동계획 .....	196

## □ 연구 요약

### I. 서론

- 공공분야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권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분야 전반에 대한 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5개 분야의 인권교육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그리고 현 제도·법령·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현황, 인권교육 추진체계, 프로그램 개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시아권, 유럽권, 미주권의 공공부문 인권교육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시사점을 주는 필리핀, 일본, 인도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행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 II. 국내 공공부문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각 공공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들은 '인권교육 추진 체계', '인권교육 추진기반조성', '인권교육과정의 실태', '응답자가 제시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음

며, 이를 토대로 각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였  
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이후 지난 5년간 법무분야, 경찰분야 등 주  
로 법집행분야의 인권교육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왔으며, 2005년 이  
후 군대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  
진하고 있음. 그 결과 법집행분야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각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기반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인권침해 가능성은 크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군대와 사회  
복지분야는 2006년에 인권교육이 도입되는 시점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  
회복지분야 총 5개의 분야 중 인권교육의 체계와 기반 구축, 인권교육  
과정 운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분야는 경찰분야  
임.
  - 법무분야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적  
극적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는 못  
함. 군대분야는 2006년부터 장병기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교육역량 구축, 직위별 교육과정 개발, 장기발  
전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향후 군대분야 인권  
교육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복지분야도 군대분야와 마찬  
가지로 2006년부터 사회복지 직무교육내에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  
였으며 사회권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행정분야  
의 경우는 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5개 분야 인권교육의 추진체계를 분석해보면, 경찰분야와 군대분야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경

찰청은 인권보호센터를 두고 있으며, 군대는 국방부법무관리관실 내에 인권팀을 구성하였음. 앞서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조직에서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가 해당부분의 인권교육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경찰, 군대와 같은 공공분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기반구축이나 교육 실행의 측면에서 보다 더 나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공공분야의 경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담부서가 있는 분야의 경우는 독자적인 인권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적 측면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인권교육 자체 프로그램 개발, 자체 네트워크 조직 등의 지표로 살펴보면, 앞서 분석한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경찰과 군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도 경찰과 군대분야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권교육 운영체계도 직무교육 체계 내에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자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경찰과 군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 행정 조직에서 자체 내에 법적 규정과 전담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해당 정책 추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군대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특히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찰에서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는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조직 내의 적극적 의지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인권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

해서는 각 공공분야 자체 내에서의 자구적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당 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 인권교육개선위원회'를 두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과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찰과 군대는 직무교육 내에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다만 군대는 장병기본권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타 부문의 경우는 직무교육 과정 내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행정분야는 일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인권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각 공공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교육의 범주를 6개로 설정하여 실태를 조사하였음. 이러한 교육 범주로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회복지분야의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여성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권교육은 전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대다수 공공분야에서 강의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인권감수성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찰과 군의 육군임. 인권교육 기반 구축 측면에서 인권 강사(지도자) 육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찰분야와 사회복지분야임.

- 이상의 인권교육과정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음.
  - 첫째, 공공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2005년 이후 경찰과 검찰분야는 본격적으로 인권교육 시행 2년차를 맞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담당자는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함을 제시하였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 및 경찰분야 인권교육 지침서와 매뉴얼 개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됨. 이러한 외부 인권교육기관의 지원 노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음.
  - 둘째,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조사결과 인권의 대상자와 접하고 있는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교육과정, 교육참여도 면에서 타 직군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법무분야의 경우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에 시행되는 인권교육이 검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권교육이 직무와 연관된 교육 범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교육의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임.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별도의 국가 교육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직무와 연관된 인권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음.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에 배정된 시간이 대체로 1~2시간 사이로 매우 짧아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인권의 역사, 세계 인권선언, 인권의 법적 의미 등 인권일반에 대한 교육이 거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과정의 수준은 초보적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인권교육이 지식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에 대한 가치관, 태도, 기술을 확립하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으로 서 인권교육'을 넘어 '실천으로서 인권교육'으로 발전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대다수가 강의식의 주입식 교육임. 직무와 연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현장과 연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프로그램의 빈곤'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큼. 또한 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인권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한 상황은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함.
- 다섯째,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공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곳은 경찰 분야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 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수준임. 경찰의 인권교육 인력도 자체 교육 과정 중 '경찰과 인권' 교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국가 인권교육 인력의 '표준화된 인력 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의 주요 내용과 역할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법무, 군대, 경찰, 행정, 사회복지분야별 구체적인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Ⅲ. 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

- 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 초기 유럽권, 미주권, 아시아권 사례를 검토하였음.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유럽권과 미주권은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유럽권의 인권교육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주권은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권과 미주권 국가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자체 직무 시스템에 인권적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3개국 필리핀, 일본, 인도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를 살펴보았음. 공공분야 인권교육 추진 형태를 유형화해보면 필리핀과 인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도형이고, 일본은 법무성 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음.
- 필리핀의 경우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연구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인권위 산하조직으로 인권교육훈련센터인 ‘아태인권연구소’를 두고 있음. 필리핀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헌법차원으로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② UN 인권교육 10년의 이행차원으로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 1998-2007’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③ 국가인권정책조정실이라는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④ 필리핀 엠네스티, 아키노재단, 필리핀 사범대학 등 NGO와 대학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⑤ 경찰·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필리핀의 사례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인권교육훈련센터

설립', '경찰·군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본부'와 법무성이 담당하고 있음. 일본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 ② 독자적인 인권교육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 ③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④ 오사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 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휴-라이츠 오사카라는 인권정보센터를 만들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는 '인권교육 관련법을 제정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인권정보센터를 별도의 법인 형태로 설립했다는 점'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훈련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②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③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과정에 NGO와 유관 단체들이 협력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④ 공공분야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권까지 확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도의 사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과정에 NGO와 유관 단체들이 협력조직으로 참여', '공공분야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권까지

지 확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시행'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IV. 국내 인권교육 규정 및 제도화 추진 동향

- 현재 국내법 중 인권교육 그 자체만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음. 따라서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관련법 중 인권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그러나 개별법을 통해서도 인권교육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조항은 발견할 수 없음.
-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최근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단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나 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음. 따라서 인권 침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전향적인 전개와 보급이 당위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교육 수요적 요청이 크게 일고 있음.
- 이에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구현에 필수적인 인권의식의 형성, 인권교육 자원의 집중과 교육수요에 대한 대비, 체계적인 인권교육관련 기본원칙의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학교(학생), 시민사회(일반 시민 등), 국가사회(공무원 등)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추진기구의 필요성의 대두 등의 이유로 인권교육을 위한 관련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임.

- 인권교육 심의·결정 기구의 소속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임. 인권교육은 인적 자원개발 측면보다는 가치 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다만 이 방안의 경우 위상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형식으로 할 경우 전문성과 다양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관련 범부처 당연직과 외부(학계 및 인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소위원회로 하지 않았을 경우 참석 구성원의 문제와 심의·결정을 담당하는 인권교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와 관계없이 인권교육위원회가 심의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교육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되 심의 기능과 의결 기능을 분리하여 인권교육위원회는 심의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와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음.
  - 법률에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인권교육 정책의 계획과 추진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인권교육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둘 경우 조직이기주의, 외관의 확대를 비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둘째 방안은 국무총리실(대통령) 산하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임. 국무총리실(대통령) 산하 독립위원회를 두는 경우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협의) 등을 위해 유리하며, 당연직으로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

등을 참여시킬 수 있어 집행력의 담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됨.

- 대통령 산하에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추진 방향이 대통령의 의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고,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는 경우 협의 및 집행력 담보가 가능하나 정책의 입안·추진 등 실무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 UN의 권고 사항이나 인권단체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인권교육에 대한 실질적 심의·결정·조정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첫째, 인권교육 전반을 계획,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함.
- 둘째, 인권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셋째, 인권교육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적합한 인권교육 과정 및 교재, 교육방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전문 기관이 필요함.
- 넷째, 인권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 다섯째, 인권교육을 하나의 기관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

므로,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지원, 인권교육 강사의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 기관이 필요함.

- 여섯째, 인권교육은 지방 분권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각 지역과 연계하고, 지원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VI. 결론

- 본 연구 과제인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실태 분석은,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인권교육의 현 위상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공공분야 인권교육실태를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직무관련 교육과정 혹은 양성교육과정에 인권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배치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의 진지성과 체계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와 분석의 대상이 된 5개 공공분야, 10개 직군에서 공권력의 집행과 개인의 권리행사에 영향력이 큰 직무특성을 지니는 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이러한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인권교육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일반 행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사회복지 시설 분야의 인권교육은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법무분야와 군대분야의 경우에도, 내실 있는 인권교육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음. 교육 대상자의 실적은 높았지만,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교재개발 강사진 육성 등을 고려하면, 효과적이고 질 높은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찰분야의 인권교육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육시간의 확대 등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발전이 과제로 나타났음.



# I.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권위주의 시기보다 공직종사자에 의한 인권 침해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공직종사자들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의식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및 일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 세분화 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으로 인해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상황임.
- 공공분야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권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분야 전반에 대한 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필요함.
- 현 제도·법령·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권교육 제도화가 요구되는 영역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하여,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국제기구 및 해외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제도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의 경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

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2. 연구내용 및 범위<sup>1)</sup>

### 1)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연구과제로 5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함.
  - 연구 계획상으로 검찰, 경찰, 교정, 출입국, 군대, 다수인보호시설, 행정 등 7개 분야가 선정되었으나 연구 과정에서 5개 분야 10개 직군으로 조사대상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 5개분야는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이며 직군은 법무분야의 검사, 교정직, 출입국사무소직, 군대분야의 육군, 해군, 공군, 경찰분야의 경찰공무원, 행정분야의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지종사자 등 총 10개임.
  
- 본 연구수행을 위해 새롭게 작성한 구조화된 질문지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분석을 하였음.
  - 각 공공분야의 2005년 교육 실적과 2006년 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직무교육을 중심으로 각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음.
  - 각 부문별 인권교육 추진 체계로 직무교육체계, 인권교육 담당부서 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음.

---

1)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대상은 크게 공공분야 종사자와 사회적 약자(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군대 내 병사, 시설생활자 등)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목적은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전 국민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인권교육과정 운영 실태로 교육과정·교육과목, 교육대상 및 인원, 교육시간, 교육 프로그램, 강사 인력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공공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범 인권 교육 사례 발굴도 시도하였음.
- 부문별 비교·분석과 직군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음.
  - 직군별로 법무분야의 3개 직군(검사, 교정직, 출입국사무소직)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 비교와 군대분야의 3군(육·해·공군) 인권교육 실태 비교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5개 분야의 인권교육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음.

## 2) 국제기구·해외 인권교육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현황, 인권교육 추진 체계, 프로그램 개발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을 문헌자료, 국가인권위원회자료,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시아권, 유럽권, 미주권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음.
-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된 필리핀, 일본, 인도의 인권교육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인권교육 실천 사례로 필리핀 경찰·군대에서 시행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매뉴얼과 일본의 동화교육(動畵敎育) 사례,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5년에 시행한 공공분야 대상 인권교육 훈련프로그램 실천 사례를 연구하였음.
- 해외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법령·

제도·지침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였음.

### 3)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

- 국내 공공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태, 법령·제도 실태를 분석하여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국내 관계 법령·제도와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영역 및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관련 법령 연구를 통하여 공공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무교육과 인권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였음.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권교육법 제정 및 인권관련기구 설립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음.

## 제2절 연구방법 및 조사의 개요

### 1. 연구방법

#### 1) 국내 공공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 기관 탐방을 통한 면접과 질문지를 통해 각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문제와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설문지를 활용하여 '텔파이 조사'를 하였음.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Ⅲ장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담겨있음.
- 조사의 협조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행정지원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 담당자에 대한 사전 방문 면접 조사를 병행하였음.

#### 2)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

- 국내·외 인권교육에 대한 문헌 연구를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기존 문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넷 자료조사도 병행하였음.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행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였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공공분야 인권교육 담당기관을 방문하여 계획서, 보고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실태를 부분적으로 파악하였음.
- 해외 인권교육에 관한 문헌연구도 국내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실시하였으며, 필리핀에 대한 연구를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필리핀 인권운동가 마크(Mark)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수행하였음.

### 3) 인권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연구소내의 관련 전문가로 연구팀(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2인, 연구보조원 1인)을 구성하여 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와 자문체계를 구축하였음. 해외 인권교육 사례 파악을 위해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이대훈 교수의 자문을 얻었음.

## 2. 조사의 개요

### 1) 조사목적

-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었음.

### 2) 조사대상

-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아래 [표-1]과 같으며 국내 공공분야 중 5개 분야(법무, 군대, 경찰, 행정, 사회복지) 총 10개 직군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음. 총 23개 응답처에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19개의 응답처에서 회수를 하였음. 응답을 하지 않은 곳은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중 4곳임.
- 본 연구에서의 조사 대상은 해당 조직의 교육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각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담당자나 직무교육 담당자로 설정하

였음. 경찰분야는 인권교육 전담자가 응답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각 공공분야의 직무교육 담당자가 응답을 하였음.

[표-1]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대상

부문	총괄부서	교육대상	목표	응답처
법무분야	법무연수원	검사 출입국 교정직	1	1
경찰분야	인권보호센터	경찰공무원	1	1
군대	인권팀	육·해·공군	3	3
행정	중앙공무원연수원	정부부처 공무원	1	1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방행정직 5급이상	1	1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직 5급이하	16	12
사회복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지종사자	1	1
5개분야	-	10개직군	23	19

### 3) 조사 과정

- 실태조사 설문지 기획 및 자문: 9월 1일 - 20일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과 질문지를 공동 기획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 관련 부처와 인권 활동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설문지를 확정하였음.
- 본 조사: 9월 21일 - 10월 16일
  - 질문조사지의 배포 및 수거는 조사 대상이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의 행정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음.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응답지 예시문'을 병행 발송하였음. 수거된

질문지 중 응답내용이 많이 누락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하였음.

- 분석 및 결과정리: 10월 17일 - 26일
  - 분석 및 결과정리는 질문지에 개방형 질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고, 직접 내용분석을 하였음.

#### 4) 질문지의 내용 구성안

- 조사에 실제 사용한 질문지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질문지 구성안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 [표-2]와 같음.

[표-2]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질문지 구성안

영역	조사항목
일반현황	○ 설문응답자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현황	○ 교육과정 / 교육과목 ○ 교육대상 및 참여인원 ○ 교육시간 / 교육프로그램 유형 ○ 강사 / 교육방식 / 교재
인권교육 특별 프로그램	○ 특강 ○ 감수성증진프로그램 ○ 기타
인권교육추진 체계와 기반	○ 직무교육 총괄 부서 ○ 인권교육담당부서 ○ 상급기관 ○ 직무교육대상 ○ 인권교육관련 특별 협의기구 및 전담반 현황 ○ 인권교육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문제 및 욕구	○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 제도적 개선 방안

### 제3절 연구 의의와 한계

#### 1. 연구의 의의

- 세계적으로 인권교육은 1994년 유엔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을 선포한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 각 국가별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후 많은 국가들과 지역에서 이 취지가 받아들여져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적 차원의 인권교육의 1단계라고 할 수 있음. 2005년 유엔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을 평가하고 이후 국제적인 인권증진을 위한 조치로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2005-2007) 행동계획’을 선포하였다. 이제 세계 인권교육은 2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함. 1단계가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면 2단계는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차원의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노력과 맞물려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뿐만 아니라 해외의 인권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세계 인권교육의 2단계 시점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국가차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치가 본격화된 것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라고 볼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조사와 조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국민 인권의식 함양 사업 등 국가 차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방면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필요함을 인식하

고 학교와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확산 노력을 전개하여 왔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5년간 진행된 국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음.

## 2. 연구의 한계

- 첫째, 국내 공공분야 실태조사 과정에서 실태조사 질문지에 근거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음. 조사 대상인 경찰, 법무, 군대 조직에 대해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이유로 실제 조사 질문지의 배포와 수거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팀이 전담하여 추진하였으나 응답한 내용은 각 부문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의 응답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계획서와 보고서를 기초로 연구자료로 활용하였음.
- 둘째,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분석은 질문조사와 문헌연구, 자료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본 연구에서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 분석의 영역은 인권교육체계, 인권교육 추진기반, 인권교육과정 실태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음. 이 중에서 인권교육체계와 기반조성에 관련된 내용은 본 연구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으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실태분석은 양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양적 분석 내용도 앞서 언급한 수거된 질문지의 미흡한 응답으로 인하여 일부 누락된 분야가 있음.

## II. 인권교육의 개념과 국내·외 인권교육 활동

### 제1절 인권의 개념 및 의의

#### 1. 인권의 개념

- 인권의 개념은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각 학자에 따라, 각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인권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가치가 변화하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기 때문임,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음.
  
- 인권에 대한 관심과 개념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음.
  - 인권에 대한 초기 관심은 투표권, 표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시민권, 공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좁은 의미의 인권 개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
  -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지게 되었음.
  - 최근에 들어서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보다 더 확대되어 집합적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넓어지면서 환경권, 정치적 안정, 경제개발에 관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인권이란 흔히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간인 이상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천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인권의 의미를 매우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이 의미 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음.
  - 첫째, '모든 사람들'이 가진다고 여겨지는 만큼 인권은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기본적 권리임. 즉 인류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권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임.
  - 둘째, '인간인 이상', 즉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인 만큼 그 발생 근원을 '인간성'에 두고 있음.
  - 셋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인권의 대상이 됨.
  - 넷째, 인간의 '삶'이 여러 사회적 층위(가정, 직장, 사회, 국가, 세계 등)로 구성되는 만큼 그 관할체계 역시 여러 층위에 걸쳐 중복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중층구조를 가짐.
  - 다섯째, 인간의 '삶'이 특정 사회 및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인권은 그 발생과 실현을 위해서 특정사회와 사회관계가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인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신분, 출생지, 국적, 교육정도, 외모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
- 현대의 인권은 정치체제나 이념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음.
- 18~19세기에 근대적 시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시민권'이라는 권리와 제도가 출현하였으며, 시민권은 인권사상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것으로 인간의 권리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인류역사의 뜻 깊은 발전을 의미함.
  - 그러나 시민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주권이 미치는 영토 안의 주민, 즉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 시민권의 개념과 달리 인권은 국가주권을 넘어, 온 인류사회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좀더 보편적인 규범임<sup>2)</sup>.
-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상징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 또는 자율성에 대한 뿌리 깊은 신념이 인류사회에 있기 때문일 것임.
-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의 가치를 세계 인류의 규범으로 선언한 유엔이나 인권보호에 관심을 갖는 국가 권력 또는 헌법, 그 자체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권이라는 가치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보편성에 있음.
  - 인간의 양심과 이성, 인간다운 마음의 뿌리에 작용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이 인권의 1차적 보편성이라 할 수 있음.
-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점은 인류의 역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고전적인 가치를 다 같이 존중하고 실천하는 인권규범과 제도가 형성되었다는 데 있음.
- 만일 자유라는 이름을 내걸고 대중의 빈곤과 불평등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인권이 주창된다면, 이것은 보편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문해 본들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치는 분명함.
  - 반대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외치는 어느 독재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한다면, 이것 역시 인권의 보편성과는 거리가 먼 것임.
  - 인권의 보편성은 적어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 다시 말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양대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권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뜻함.

---

2) 21세기의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 권리, 즉 인권은 어떠한 형태의 국가주권보다도 우선한 것으로 해석됨. 즉 인권과 국가주권이 충돌한다면, 유엔이나 국제인권기구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 2. 인권의 의의

-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조건을 누구나 제약 없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제약 없이 제공할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임.
  - 동시에 인권은 한 사회가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 및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통하여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인식적·문화적 공유의 원리이기도 함.
  
-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인권규약 및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 등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합의되었듯이, 인권은 다른 모든 법적 권리에 앞서서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규정함.
  - 따라서 국제법에서 규정된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관련성”(비엔나 선언 3절)을 가지며, 모든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
  
- 이처럼 인권은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총체적 의미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갖는 기본적 권리규정임.
  - 따라서 국가의 의무 조항이나 보편적 적용 등의 특성을 외면 또는 경시하는 접근은 온전한 인권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없음.
  - 보편적 적용은 최소의 필수적인 기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면에서 최대의 기대치를 담은 일반적인 사회윤리 역시 인권적인 접근과 차이가 날 수 있음.
  - 또한 인권은 보편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권리의식이 되어서는 안 됨.

- 이러한 특성들은 인권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온전한 인권교육으로 인정되기 힘들 것임.
- 또한 인권은 법적 효력이나 엄밀성에 대한 합의 정도가 낮은 민중의 자결권,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과 같은 범주의 권리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민중의 자결권'은 민중이 정치적 지위와 발전방향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둘째, '평화권'은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누릴 권리를 말함.
  - 셋째 '발전권'은 사회적·경제적 개발의 내용과 방향을 민중이 참여해서 결정할 권리를 말함.
  - 넷째, '환경권'은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 누릴 권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리를 말함.

### 3. 인권의 유형

-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인권은 규범이나 이상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약으로서의 인권임. 이런 의미에서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두 가지 인권의 유형,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이하 자유권)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이하 사회권)의 내용을 세계인권선언<sup>3)</sup>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
- 서유럽의 문화전통에 깊게 각인되어 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

3) UN헌장의 원칙에 기초하여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UN에서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인권의 표준과 규범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임. 이 선언은 세계의 평등,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불가양성을 승인함.

로 인해 서유럽사회가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임. 자유권은 국가 권력이 보장만 하면 특별한 경제적 부담 없이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비해 빈곤·건강·주택·교육·문화 등 여러 불평등의 해소와 연관된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 투입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인권의 본원적 가치라는 면에서 사회권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님.
  -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과 생존에 관련된 더욱 본원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반면 건강과 주택, 교육 등은 사회권에 속하지만 그 자체가 자유권의 보장에 매우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유권이 개인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더 근본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권리 주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권에 못지않게, 또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회권도 근원적인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자유를 중심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 또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을 이룸.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 고문 또는 잔학하고 비인도적이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나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 노예가 되거나 노역에 강제되지 않을 권리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 사생활·가정이 보호받을 권리
- 자유로운 통신에 대한 권리
-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하는 공무 참가권을 포함함.

○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자유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1) 신체보존권: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권,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예제도 및 매매 금지, 법적 인격체로서의 인정, 고문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국적 보호 및 국적 변경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조~6조 및 제15조)
- 2) 법집행에 관한 권리: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법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법 앞의 평등권, 인신보호권, 자의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죄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법의 소급 적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세계인권선언 제8조~11조)
- 3) 시민적 자유권: 사람의 특정 부문(사적·공적)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8조~20조)
- 4) 정치적 권리: 정치사회 구성원들은 국가업무에 대한 참여와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적 자유권에 속하는 언론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19조~20조)와 여러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1조)

○ 이상과 같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권의 내용은 1966년에 결의되고 1976년에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ICCPR, 국제자유권규약, B규약)'<sup>4)</sup>으로 발전하여 국제적 인

권규약으로 기능하고 있음.

## 2)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보호를 강조하는 자유권과는 달리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볼 수 있음.
  - 인간 생존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권리(의식주와 관련된 생존권, 질병과 재난에 대한 보호)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노동을 하고 정당한 보수와 수입을 받을 권리
  -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교육 및 문화의 혜택을 받을 권리
  
-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사회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주제별로 정리해 볼 수 있음.

- 1) 최소 필요충족권: 생존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 의식주에 대한 권리와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세계인권선언 제25조)
- 2) 경제적 권리: 본원적 생명활동의 하나인 노동행위에 대한 자유와 공정한 노동조건 및 보수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에 대한 권리,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등(세계인권선언 제22조~24조)
- 3) 사회적 권리: 사회적 삶 속에 노출되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정 및 사생

- 4) ICCPR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광범위한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규정함. 이 시민적 정치적 분야에 있어서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주요한 성문화는 140개 체약당사국에 의해 비준되었음.

활에 대한 보호, 가정을 형성할 자유에 대한 보호, 부당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자아발전의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 사생활보호권, 가족형성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12조, 제16조, 제26조)

4) 문화적 권리: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아실현과 문화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문화공동체에 참여할 권리와 문화활동과 그 결과를 보호받을 권리 등(세계인권선언 제27조)

- 이상과 같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권의 내용은 1966년에 결의되고 1976년에 발효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ICESCR, 국제사회권규약, A규약)'<sup>5)</sup>으로 발전하여 국제적 인권규약으로 기능하고 있음.
- 주제별로 살펴본 사회권의 내용은 개략적이고 고전적인 것이며,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인권 담론과 법률 및 제도들은 각 항목들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음.
-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 위한 환경권,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정보권과 의사소통권 등이 포함되고, 여성·아동·학생·환자·장애인·토착민·난민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권익신장을 위한 다양한 담론과 제도로 확산되고 있음.

---

5) ICESCR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함. 이것은 개발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 권리에 기초한 시각을 도입하였다. 이 규약의 체약당사국은 142개국임.

## 제2절 인권교육의 개념

### 1. 인권교육의 정의와 목표

- 인권교육은 보편적, 불가분적, 불가침적 특성을 가진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가 예방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실천지향적인 교육임.
  - 인권교육은 인권을 보호, 신장하는데 요청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함께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곧 실현되어야 할 인권의 하나임.
  
- 인권교육은 단지 인권의 보장만을 위한 것은 아니며, 인권의 보장과 증진이 갖는 복합적인 효과는 민주주의 및 개발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등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강조되고 있음.
  - 이러한 연관성의 의의는 기존의 발전권 선언이나 비엔나 선언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음.
  - 또한 인권교육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를 쉽게 알 수 있음.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회적 의제 속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황은 인권교육이 갖는 복합적인 사회적·정치적·문화적 효과에 대해서 주목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러한 요구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은 인권이 인간의 최소한의 보편적 표준으로 작용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합리화하고 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 침해

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실천 지향적 교육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우리가 정의한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이 향유해야 할 권리이며, 국가는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국가의 의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인권교육은 무엇보다 인권적 접근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이어야 함. 일반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다르게, 인권교육은 인권적 접근이 갖고 있는 국가의 의무성, 보편성, 상호 불가분성, 불가침성 등의 특성을 가장 밑바탕에 두는 실천 지향적 교육이어야 하며, 피교육자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어야 함.
- 동시에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시민, 국가기관 및 사회기관의 인권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통하여 무언인가 변화를 야기하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음. 즉 인권교육은 인권의 불가침성, 보편성, 국가와 사회의 인권보장 의무 및 국제인권법의 규범과 기준의 국내화를 실현하도록 하는 국가적·사회적 활동과 별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따라서 인권교육은 일정한 사회적·제도적·문화적 변화를 추구하고 촉진하는 교육의 성격을 갖는 것임.
- 1994년 제 49회 유엔총회에서는 “…… 인권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발달단계의 사람들,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또 그 존중을 모든 사회에 확립시키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해 배우기 위한 평생에 걸친 종합적 과정”이라고 명확히 제시하였음.

-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권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함. 그러나 인권 침해를 경험하기 쉬운 여성, 아동, 노인, 소수집단, 난민, 원주민, 극빈자, 에이즈 환자, 이주(외국인)노동자, 탈북자 등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들이 인권교육의 1차적 우선 대상 집단임.
- 또한 인권교육의 우선 대상에는 인권 침해를 당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집단인 경찰, 교도관, 군인, 판사, 검사, 변호사, 출·입국관리원, 공무원, 생활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함.
- 인권교육의 우선대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자신 및 타인들의 인권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행하게 되는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상에서 논의한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첫째, 지식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 학습자의 참여와 행동을 통한 교육
  - 둘째, 타인에 대한 관용과 수용, 연대감, 참여적 시민의식, 상호존중

- 과 이해의 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행동을 습득하는 교육
- 셋째, 학습자 자신의 객관적인 현실에 기반을 둔 인권 문제 인식과 자신의 권리 자각, 그리고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자율적 교육
  - 넷째, 인권 침해 문제의 당사자-관련자의 비판적 성찰을 형성하는 교육
  - 다섯째, '자연스러운' 인권 침해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를 형성하는 교육
  - 여섯째, 관용과 존중, 연대 감수성 체득을 위한 교육
  - 일곱째, 자신의 권리와 동시에 타인의 동등한 권리를 깨달아 관용과 존중, 연대의 문화를 증진하는 교육

## 2. 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은 타인과 자신의 인권 침해를 줄이고, 동시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첫째, 민주적 절차에 따른 개인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한국의 경우 개인의 권리가 주장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니라 유교문화, 혈연과 공동체 중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오랜 군부독재 정권 지배 등의 원인에 의해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침해되어 왔음.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 둘째, “누구도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권리는 없다.”(세계인권선언 제

30조)는 것을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인권은 자신을 위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타인과의 다양한 갈등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자신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됨.

- 셋째, 획일적 가치보다는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안적인 보편적 가치교육이 필요함.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적인 인권교육의 방향 또한 개인의 다양성과 개인의 보편적 인권의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공동체적 건강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고도의 경제성장 위주 정책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이해와 존중보다는 경쟁과 배제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인권교육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함. 인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라고는 하지만, 모든 인간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님. 따라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침해받고 있는 인권의 내용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할 때,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오는 억압과 통제의 부당함을 포함한 각종 인권유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인권을 예민하게 느낀다는 것은 곧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

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 개념을 아는 것을 넘어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스스로 존중하고 인권에 대해 민감해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임.

- 다섯째,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환경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함. 현대 사회는 매우 빠르게 세계화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외국과의 수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일 민족성을 강조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자세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음. 앞으로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과 자본, 노동, 정보, 문화 등을 교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의식을 불식시켜야 하며,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교육 대상의 다양성에서도 도출됨. 인권이 종합적인 총체성을 갖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대상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음. 업무의 성격상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교도관, 군인 등 법 집행공직자는 물론, 교사, 언론인, 보건-의료인, 군대에서의 상급자 등 '대민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권 침해의 핵심적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 의식은 일반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대민 서비스 제공자들'뿐만 아니라 사병, 학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인권교육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함.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사회 다방면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음(국가인권위원회, 2003).

### 제3절 유엔의 인권교육활동

#### 1. 인권교육 관련 주요 국제 인권 기준<sup>6)</sup>

- 지난 20세기는 두 번에 걸친 세계 대전과 사회주의 혁명,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이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 민족과 종교 갈등으로 인한 내전, 군사독재에 항거하는 각국의 민주화운동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갈등과 전쟁, 폭력과 학살로 얼룩진 한 세기였음.
- 전세계적 불안은 인류사회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감을 심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들, 즉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전쟁과 갈등, 차별과 배제의 상황에서 유린당하고 침해받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옹호하려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전개되어 왔음.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에 대한 욕구와 고민 또한 전세계적 변화와 함께 증대되어 왔고, 한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권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음.
-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1항을 살펴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국제규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래에서는 인권교육

---

6) UNHCHR. 2003.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Treaties』에서 발췌하여 소개함.

과 관련된 규정이 국제법상(국제 인권 기준)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제26조 제2항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sup>7)</sup>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 제13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9)<sup>8)</sup>

7)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1. 3 / 당사국 수 143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8) 채택일 1966. 3. 7 / 발효일 1969. 1. 4 / 당사국 수 156 /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 4 /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적용.

-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sup>9)</sup>

- 제10조 제1항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sup>10)</sup>

- 제10조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

9) 채택일 1984. 12. 10 / 발효일 1987. 6. 26 / 당사국 수 123 / 대한민국 적용일 1995. 2. 8.

10) 채택일 1979. 12. 18 / 발효일 1981. 9. 3 / 당사국 수 166 / 대한민국 적용일 1985. 1. 26.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9조와 제16조 제1항 중 (c), (d), (f), (g)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16조 제1항 중 (c), (d), (f)를 1991년 3월15일 유보철회하였고, 동 협약 제9조를 1999년 8월 24일 유보철회하였음.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한다.’

○ 아동권리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1989)<sup>11)</sup>

-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a)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b)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11) 채택일 1989. 11. 20 / 발효일 1990. 9. 02 / 당사국 수 192 /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주거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d) 아동이 인종적·문화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계획<sup>12)</sup>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1993)

- 제33절

'세계인권대회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기타 국제인권제도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과 과목을 채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이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교육은 모든 나라, 인종, 종교 집단 간에 이해와 관용, 평화와 우호관계를 증진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는 유엔의 활동이 발전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권 교육과 이론과 실기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배포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의 구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의 증진과 존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교육과 정보의 배포는 국내와 국제적인 교육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34절

'모든 개인이 보편적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형성

---

12)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되었음.

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나라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가중되어야 한다. 훈련과 교육, 대중적 참여와 시민사회를 통해서 법치, 민주주의, 선거 지원, 인권 의식의 증진과 관련된 법제화, 국가기구 및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상당히 증가된 재원을 제공할 것을 각국 정부와 유엔, 그리고 기타 다자간 기구들에게 촉구한다.'

- 제78절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 훈련과 공공정보가 공동체들 사이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의 신장과 성취, 상호이해와 관용 및 평화의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제79절

'각 국가는 문맹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의 방향을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에 맞추어야 한다.'

- 제80절

'국제인권법규와 지역인권법규들에 규정된 것처럼,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 공통된 이해와 자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 민주주의, 개발과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 제81절

'유네스코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세계대회에서 1993년 3월 채택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과 기타 인권제도에 주목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에서 여성의 인권에 강조점을 두면서 가장 폭넓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공공정보를 배포하는 것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 제82절

‘각국 정부가 정부간 기구, 국가 인권기구, 비정부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인권 의식과 상호관용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

○ 그 외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제적인 합의

- 국제이해, 국제협력 그리고 평화에 관한 교육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교육권고안(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1974)
-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학습을 위한 제안(Sugges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Human Rights in School, 1985)
- 1990년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세계인권선언 실행을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Implementing the World Declaration on the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1990s, 1990)
-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World Plan of Action on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1993)
- 평등,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선언(Declara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1994)
-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통합적 행동 요강(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 and Democracy, 1995)

## 2. 유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

### 1) 시행 배경

- 유엔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래 냉전체제 붕괴와 더불어 갖가지 인권에 관한 선언과 조약을 구체화하여 1993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동년 평화, 민주주의, 사회정의 등을 포함하는 인권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비엔나 선언'을 채택하였음.
- 유엔은 1994년 유엔 제49회 총회에서 냉전과 대립의 20세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21세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전 지구 차원에서 평화에 기초한 인권 문화 확립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을 선포하였음. 이후 많은 국가들과 지역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취지가 받아들여져 각 나라와 지역에서 인권교육을 전개해 왔음.

### 2) 유엔 '10년'에서의 인권교육의 정의

- 유엔 '10년'은 인권교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인권 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간의 인성과 그 고유의 존엄성의 완전한 개발, 모든 국가, 민족, 원주민, 그리고 인종, 국가, 민족, 종교, 언어 집단간의 이해, 관용, 성별 평등 그리고 우호의 증진, 자유로운 사회에 모든 인간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들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촉진과 같은 방향의 태도를 만들고, 지식과 기술을 알리는 것을 통해 보편적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훈련, 보급·확산하는 노력임.

- 이것은 인권교육이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한 사회 성원의 가치와 태도,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에 기반한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차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3) 유엔 '10년'의 원칙과 목적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와 직업적이고 전문적 훈련기관 등의 공식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제도, 가족, 그리고 매스미디어 등 비공식 학습 등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인권교육은 학습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상황이라는 현실성을 다루는 수단과 방법에 관한 모색을 통하여 학습자를 참가시키도록 만드는 구체적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구체적 목표는 인권교육의 필요에 대한 판단과 공식·비공식 등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략 수립, 국제적·지역적·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립과 강화, 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인권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스미디어의 역할과 기능 강화,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의 전지구적 보급 등임.

#### 4) 실행 주체와 대상

##### (1) 국제적 차원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최고 담당자가 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정책방향과 활동우선순위를 정하면 유엔인권센터는 유네스코와 협의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각국 정부에 인권교육을 위한 훈련, 정보, 협력 및 자문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HR),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자원봉사단(UNV), 유엔대학(UNN), 유엔인간거주센터(HABITAT) 등의 기구 또한 유엔인권교육 10년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인권분야에 활동하는 NGO 등의 국제단체 또한 인권교육 활동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함.

##### (2) 국가적 차원

-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주체는 각국 정부임. 정부는 유엔인권교육 10년 프로그램 실시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임.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행동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국내 공적 교육과정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커리큘럼을 도입·강화하며 인권에 관해 국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인권자료·정보·연수센터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인권위원회, 인권연구 및 훈련기관과 같은 국가훈련기관 등의 국가인권관련기구는 국가적 수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조정, 시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인권문제와 관련된 NGO나 전문가 그룹 등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유엔인권교육 10년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협조하도록 권장됨.

### (3) 인권교육의 대상

- 인권교육은 남녀와 연령, 공식·비공식적 교육 모두를 포괄하여야 함.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제인권 문서에 나타난 대로 인권옹호를 위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그것을 자각하고 실천해야 함. 모든 국민이 인권교육의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과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 인권교육은 우선, 인권 침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 아동, 노인, 소수집단, 난민, 원주민, 극빈자, 에이즈 환자 등이 대상이 되어야 함. 한국의 경우 추가적으로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사회적 약자들이 대상 집단이 되어야 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인권에 관해 인식하도록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활동이 포함됨.
- 인권교육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교육이 아니라 인권침해를 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집단인 경찰, 교도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입국관리원 등이 중요하게 포함되어야 함.
-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집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사법행정관리: 경찰을 포함한 법률 집행인, 교도관, 판사와 검사
  - 정부와 입법관리: 법률 제정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법률을 기

안하는 것에 관여하는 공무원, 군인이나 기타 보안군, 이민담당관이  
나 입국관리관

- 핵심전문집단: 교사와 커리큘럼 개발인, 사회복지사, 의료전문가, 언  
론과 저널리스트, 법 전문가
- 조직과 집단: 여성조직, 원주민, 소수집단, 직장조합, 개발기관, 비즈  
니스 커뮤니티, 노동자와 피고용인의 조직, 공동체 지도자, 사회정의  
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집단, 종교지도자
- 학교 부문: 아이들, 젊은이, 전문 피훈련인
- 기타: 난민과 유민, 농촌과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 이민노동자, 극빈  
자, HIV/AIDS 감염자나 장애인, 죄수와 구금자, 노인 등 기타 인권  
침해를 당하기 쉬운 집단

#### (4) 조직 및 실행구조

- 국가 차원 및 지방적 차원에서의 인권교육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  
므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전담기구가 각 나라  
의 여건에 따라 지정되어야 함.
  - 전담기구는 관련 정부기구, NGO, 민간부문과 교육자 대표를 포함하  
는 특별위원회로 이루어지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옴부즈맨 사무소, 국  
가적 인권훈련 및 연구기관 등과 같이 현재 존재하는 적절한 구조나  
기관들이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될 수도 있음.
- 국가 전담기구는 자기 나라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에 대해 확인하고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며, 그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함. 또한 유엔  
'10년' 실행에 참여하는 국제적, 지역적 기구와 협력하고 10년 목표 실  
현을 위한 요구, 제안 등에 대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보고할 의무  
를 지님.

- 또한 국제적, 지역적 정보와 지원을 국내적, 지방적 수준과 연결시키고 다시 상황을 수렴하여 보고하고 확산시키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
- 각 국가는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 훈련자 교육, 인권교육 자료 준비와 수집, 번역, 보급, 회의, 워크숍 등을 행하며 교육과정을 조직할 능력을 가진 훈련센터를 설립하도록 권고 받음.
-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 정부기구, 정부간기구, NGO들의 프로그램이나 행동들은 '10년' 목적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지방적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하도록 권고되고 있음.

※ 2005년 7월 14일 유엔총회 113차 전원회의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의 성과를 점검하고 인권교육을 증진시킬 후속활동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제도에 초점을 맞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1차시기(2005~2007)에 대한 행동계획 초안을 채택하였음. 또한 모든 국가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내에서 창의력을 개발하여 특히, 자신의 역량 안에서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장려하며,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적으로 행동계획 이행을 촉진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음. 그러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1차시기(2005~2007)의 내용은 본 연구의 초점과는 달리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으며, 관련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4절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동향

### -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1. 인권교육 조직체계 및 업무현황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전담 부서는 인권교육본부(위원장:나영희)이며,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공공교육팀(팀장:임송)임.
- 공공교육팀 조직 현황: 8명 (팀장, 팀원 5, 인턴 2)
- 공공교육팀의 주요 업무
  - 공공분야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개선 사항 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의견 표명에 대한 활동과 관련 분야 국내·외 협력
  - 공공분야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 공공분야 인권교육업무 관련 기관 협의
  - 공공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 공공분야 인권 전문인력 양성훈련
  - 공공분야 관련 국내·외 인권관련 교육제도 및 교육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2. 2006년도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주요 사업 계획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의 2006년 인권교육 관련 주요 사업 계획

은 크게 인권교육기반구축, 인권교육제도화, 교육과정운영, 대외협력 및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3]에 정리된 바와 같음.

[표-3] 국가인권위원회 공공분야 2006년 인권교육 주요 사업계획

분야	사업내용	추진현황
인권 교육 기반 구축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용역과제
	공공분야 인권교육 연구회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인권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 인권교육 관계자 협의회 구성·운영 - 공공시민인권교육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인권 교육 제도화	군대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군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 ‘군인복무기본법’(안) 중 교육에 관한 사항 검토 및 의견표명 - 군 정신교육 교재에 인권내용 포함
	복지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대학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인권과목 개설 - 사회복지사 자격시험과목에 인권과목 포함
교육 과정 운영	인권교육 핵심인력 육성 (군대분야, 다수인보호시설 분야)	- 연수과정(2박3일) 및 4개 권역별 순회교육 - 연수과정 운영(아동, 장애복지분야)
대외 협력 및 지원	인권교육 동향 모니터링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휴먼레터에 통합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군대분야, 다수인보호시설 분야
	인권강사 파견	인권강사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검토
	기관방문 이벤트 실시	음악회, 인권영화 상영 등

## 1) 인권교육 기반구축

-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기초 현황 파악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본부 용역사업(인권상황실태조사) 일환으로 추진
  - 수행기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공공분야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 검찰·경찰, 교정 분야: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목표,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담은 인권교육 지침서 2종(검·경, 교정)을 개발 중에 있음.
  - 군대 분야: 공공교육팀과 국방부 인권팀이 공동으로 군 인권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인권교육 지침서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sup>13)</sup>.
  
- 인권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 인권교육연구회,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
  - 국제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 Curtin대학 인권교육센터와 인권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2007년도에는 권역별(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권교육 대표기관과 정보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

---

13) 국가인권위원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중에 국방부 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임.

## 2)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한국사회복지교육협회가 작성하는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를 통해 각 과목에 인권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와 인권'을 단독과목으로 개설하고, 모든 과목에 인권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해외 저명인사 초빙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6. 23. 09:30~17:30, 서울여성프라자
  - 초청인사: Jim Ife 호주 Curtin Univ. 명예교수(『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저자, 호주 엠네스티 대표, 아태 인권위원, 호주 사회복지교육 협의회 회장 등 역임)
  - 참석대상: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관련협회,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관계자 약 200여명
  - 부산, 광주 지역세미나도 개최
  
- 군 분야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국방부와 TFT를 구성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지침서 개발 추진
  - 국방부가 각 군에 시달(2005.12)한 '장병 기본권 과목'의 통제과목화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 현황 파악 및 내실화 방안 검토
  - 별도로, 국군TV 등 군내 매체를 인권교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콘텐츠 개발 등)

- 국방부에서 입안중인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의견표명.

### 3) 인권교육 과정 운영

- 2005년에는 검·경·교정 등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고, 2006년부터는 군대·다수인보호시설분야를 중점 교육대상으로 추진 중임.
- 군대 인권교육 핵심인력 육성
  - 군 인권교육 교관을 대상으로 연수과정 운영(집합교육)
  - 군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반기(11월~12월)에 4대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 다수인보호시설 분야 인권교육 핵심인력 육성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공무원,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협회 임직원, 3개 분야(아동, 장애, 복지) 시설관계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연수과정을 운영 중임(2006년 11월).

### 4) 대외 협력 및 지원

- 인권교육 동향 모니터링 및 메일링 서비스 제공
  -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외 동향, 해외 우수 인권교육 프로그램 소개 등을 메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분야 교육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자극을 주고자 하는 사업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군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일상 병영생활에서 제기되는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군인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핸드북 형태의 교육교재와 장교·부사관 등 일선지휘관의 교안용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시설의 종사자, 생활인, 보호자를 위한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검찰, 경찰, 교정, 출입국 등 법집행분야 및 군대·사회복지 분야 등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외국의 우수 인권교육 사례연구

○ 인권강사 지원 파견

- 경찰, 군대 등 외부기관이 자체 인권강의를 위해 위원회에 강사파견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업무 수행.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강의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를 위해, 인권강사 파견에 따른 절차 공식화 및 인센티브 제공, 강의 평가결과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강사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기관방문 인권이벤트 실시

-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기관방문음악회, 인권영화상영 등 추진

### 3.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활동 실적

- 공공분야의 하위 영역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지원활동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2002년부터 최근(2006년 10월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분야 전체에 대해 실시한 인권교육 관련 지원활동 수행

실적을 정리하면 [표-4], [표-5], [표-6], [표-7]과 같음.

[표-4] 인권특강교육 지원 현황

(2002년-2006년.10월)

구 분	계		경 찰		검찰, 교정, 출입국 등		군 대		교원(교육 행정포함)		기 타	
	횃수	인원	횃수	인원	횃수	인원	횃수	인원	횃수	인원	횃수	인원
2002	28	3,820	28	3,820	-	-	-	-	-	-	-	-
2003	99	9,520	80	8,223	9	664	2	153	6	400	2	80
2004	60	5,757	26	3,080	18	807	-	-	5	750	11	1,120
2005	122	15,278	48	5,546	28	1,199	18	6,104	13	1,106	15	1,323
2006	118	9,121	48	4,489	7	299	6	720	23	1,344	34	2,269
총 계	427	43,496	230	25,158	62	2,969	26	6,977	47	3,600	62	4,79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표-5]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02년-2006년.10월)

구 분	계		경 찰		교 원/학 생		기 타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회 수	인 원
2002년	-	-	-	-	-	-	-	-
2003년	13	885	8	700	4	175	1	10
2004년	23	1,224	8	800	12	399	3	25
2005년	21	1,072	12	655	7	367	2	50
2006년	31	825	7	209	17	497	7	119
총 계	88	4,006	35	2,364	40	1,438	13	20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표-6] 공공분야 연수과정 운영 현황

(2002년-2006년.10월)

구 분	과 정 명	회 수	대 상	인 원	교육기간
2003	경찰대상 인권연수	1	경찰	34	10.31~11. 1
2004	경찰 공무원 인권연수	1	경찰공무원	35	9.15~9.17
	검찰 공무원 인권연수	1	검찰공무원	23	9.20~9.22
	교정 공무원 인권연수	1	교정공무원	35	10.25~10.27
2005	경찰대상 인권강사 양성 연수	1	경찰	17	6.27~7. 1
	교정공무원 인권교육 강사양성	1	교정	35	10.11~10.14
	검찰공무원 인권교육 강사양성	1	검찰	28	10.18~10.21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연수	1	군인	36	12.13~12.16
2006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 도입 · 확산워크숍	3	사회복지 공무원, 종사자, 학생	500	6.23/26/27
	군 인권교육 연수과정 및 순회교육	5	군 인권교육 교관, 지휘관	150	11.13~11.15, 11.29/12.1/12.20/12.21
	사회복지분야 연수과정 운영(아동 및 장애인복지분야)	2	복지분야 관계자	60	11.6~11.8/11.20~11.23/
총 계	-	11	-	743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표-7] 인권교재 및 자료 개발 현황

(2002년-2006년.10월)

구분	자료명	연도	비고
공공분야	인권길라잡이-경찰편	2002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인권길라잡이-교정편	2002	교정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교도관의 인권길찾기(VTR)	2002	
	인권길라잡이-검찰편	2002	검찰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행정과 인권	2003	행정공무원 인권교육 자료
	공무원 인권교육 표준교안	2002	강사용 인권교육 자료
	경찰인권교육방법	2003	경찰교육가를 위한 인권교육 자료
기타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	2003	연구용역 보고서
	인권교육현장사례집	2003	각 인권단체 등에서 실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음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2006년 11월. 『2006년도 업무추진 현황』.

#### 4.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활동

-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은 공공교육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음.
  - 법무분야는 ([표-8] 참고) 법무연수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요 직군(교육대상)은 검찰, 출입국사무소, 교정직이며, 교육은 법무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군대분야는 국방부 인권팀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요 직군(교육대

상)은 육군, 해군, 공군의 군 장교, 부사관, 군무원, 장병들이며, 교육은 각 군의 교육사령부와 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표-8]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관리 체계

부문		총괄부서	교육대상	유관기관	비고
법 무 부	검찰	법무부 법무연수원	검사		법무연수원에 서 지방포함 총괄 교육
			사무직		
			소년보호직		
			보호관찰직		
	출입국		지방 사무소		
교정	교정직	지방 교정청			
군대	국방부 인권팀	군간부	육·해·공군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경찰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경찰 전체	경찰종합학교		
행정	중앙공무원연수원	정부부처 공무원	정부 부처 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방행정직 5급이상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직 5급이하			
사회 복지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복지행정직, 사회복지전담공무 원, 시설종사자	각종 사회복지기관 협의회		

- 경찰분야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고, 주요 교육 대상은 경찰공무원, 전·의경이며, 교육은 경찰청 소속의 교육기관인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지방경찰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행정분야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교육대상은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공무원임.
- 사회복지분야는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직군(교육대상)은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임.

### 1) 법무분야: 검찰, 교정분야, 출입국관리소

-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교정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권교육의 기반 구축에 기여함.
  - 2005년에 검찰·교정 인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및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4회, 각 회 3~4일간, 총 146명)
  - 법무분야 인권 교재 개발과 보급: '인권길라잡이'(검찰, 교정 2종), '교도관의 인권길찾기' VTR 제작 및 보급
  - 법무연수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확대(135개 과정)에 기여
- 법무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를 정리하면 [표-9]와 같음.

[표-9] 법무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과 제	사 업 추 진 방 안
인권교육에 대한 정서적 반감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식 교육편성보다는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지도 및 프로그램 지원</li> <li>- 인권애니메이션·인권영화 상영, 역할극 등</li> <li>-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ul>
인권교육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독려</li> <li>-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li> </ul>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 사례, 국내외 관련 프로그램 등 수집, 정보 제공</li> <li>- 침해구제총괄팀 및 침해구제 1팀 협력체계 구축</li> </ul>

## 2) 군대분야

- 2005년도는 군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원년에 해당함.
  - 무궁화회(군내 장성급 모임)에 위원장 특강, 수사담당자 대상 인권교육 등 총 15회 5,48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 군대 자체 인권교육을 담당할 핵심인력 육성차원에서 '군 인권담당자 연수과정'(3박4일, 35명)을 실시한 바 있음.
  - 2006년도에는 공군 지휘관 대상으로 위원장 특강(3.9)을 하였으며, 국군방송과 홍보방안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군 인권교육과정 운영
  - 11~12월 중 국방부 인권팀과 공동으로 군 지휘관 및 교육기관 인권교육담당 교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추진하고 있음.
  - \* 3군 인권교육 교관(11.13~15, 2박3일 합숙교육, 대전 계룡스파텔)
  - \* 일선 지휘관(11.30~12.1, 12.20~21. 4개 지역 권역별 순회교육)

- 군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를 정리하면 [표-10]과 같음.

[표-10] 군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과제	사업 추진 방안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인권팀과 협력 강화 및 인권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례적인 업무협의 채널 마련</li> <li>- 국방부 인권교육 계획, 용역사업 등에 위원회 의견 적극 반영</li> </ul> </li> <li>○ '군 인권교육 연구회' 구성·운영</li> <li>○ '평화군사법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연구 교류 강화</li> </ul>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인권교육과정 운영 및 지속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군 수사기관 종사자, 인권상담관, 군 교육담당자 등</li> <li>- 시기: 11월~12월 (4~5회, 약 200명, 권역별)</li> <li>- 중점 사항: 권역별 인권교육 실천모임 결성 및 지원</li> </ul> </li> <li>○ 군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용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인권교육연구회' 등 협의체 활용</li> </ul> </li> </ul>
군 인권교육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된 국방부 통제과목 시행실태 파악 및 확대 방안 검토</li> <li>○ 국방부 입안 중인 '장병기본권법(안)'에 인권교육 의무조항 삽입</li> <li>○ 국방부, 각 군 본부와 인권교육 제도화를 위한 협약 체결 추진</li> </ul>
장병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군방송 TV 등 군내 매스컴 적극 활용 및 콘텐츠 개발</li> <li>○ 위원회 '사이버 인권 배움터' 팸플릿 배포 등 이용안내 홍보 등</li> </ul>

### 3) 경찰 분야

- 2005년 경찰공무원, 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사 워크숍 3회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 2회(3~5일, 총 60명) 실시하였  
음.

- ‘인권길라잡이-경찰’, ‘경찰인권교육방법’ 등 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 2005년 경찰연수과정에 인권과목 개설 협의 및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
  - 경찰청 연수기관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확대(54개 과정, 247회)
  - 경찰공무원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실시(26회, 2,035명)
- 경찰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를 정리하면 [표-11]과 같음.

[표-11] 경찰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과 제	사 업 추 진 방 안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상시 협력체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현안·계획 등 수시 협의, 전문가 풀 등 정보 공유</li> </ul> </li> <li>○ ‘경찰 인권교육 연구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서, 교육 프로그램, 평가 틀 등 개발</li> </ul> </li> </ul>
인권교육의 내실화 및 피드백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 중인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틀 개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인권교육 연구회’ 활용</li> </ul> </li> <li>○ 인권교육을 보다 심화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 강의 결과분석 및 반영</li> <li>- 외국 사례(프로그램 등) 등 교육관련 정보 제공</li> </ul> </li> </ul>

과 제	사 업 추 진 방 안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의경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위문화 개선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인권위 방문 프로그램 활용</li> <li>- 기동대 자체 프로그램 실시 지원</li> </ul> </li> </ul>
강사지원 및 인권위 방문 요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강사 지원 등 체계화</li> <li>○ 방문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별 특화된 방문 프로그램 개발</li> <li>-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자 의견 반영: 프로그램 보완</li> </ul> </li> </ul>

#### 4) 행정분야

- 중앙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담당자 포함)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부재로 매년 교육훈련 수요조사 시 교육기관으로부터 인권교육 요청이 없는 상황임.
- 2003년도에 행정공무원 대상 교육교재인 '행정과 인권'을 개발·보급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행정분야 인권교육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 '국제인권법연구' 과목을 재개설하였음.
  - 입법공무원(신규 사무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음.
- 2006년도(3월)에는 중앙공무원 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공무원교육기관 방문 및 인권교육과목 개설 등을 협의한 바 있으나 실제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

- 행정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과제([표-12] 참조)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내용에는 공직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공직 종사자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및 인권과정 등을 개설할 것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표-12] 행정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과 제	사 업 추 진 방 안
공무원교육 과정 중 인권교육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및 지방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인권과목 개설 협조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교육과정 중 인권관련 교과정 파악 및 검토</li> <li>- 인권과목 개설 협조 요청: 관련 프로그램 제공 등</li> </ul> </li> </ul>
낮은 인권교육 인식 및 관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 업무 연찬회(년 1~2회) 활용</li> <li>- 인권을이메이션·인권영화 상영 등 문화적 접근</li> </ul> </li> <li>○ 지방공무원 대상 지역권별 인권교육 실시 검토</li> </ul>

## 5) 사회복지분야

-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지원되지 못했던 분야임.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 모든 분야의 인권교육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었고, 주로 검찰, 경찰, 교정 등 법집행 공무원분야에 우선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2005년까지 사회복지분야에 추진한 주요 인권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4년에 지역 및 권역별 사회복지시설 담당 시·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5회)을 실시하였음.
  - 2005년에는 다수인보호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음.
- 2006년에는 사회복지 인권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있음.
- 사회복지 인권지도자 과정은 사회복지관련 각종 협회 중간관리자(간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향후 당해 협회 회원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시 자체 강사로 활용하기 위함임.
  - 한국아동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11월말~12월초 중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개최할 예정임.
    - \* 아동복지시설 시설장(11.6~11.9, 3박4일, 양평 남한강연수원)
    - \* 장애인시설 시설장(11.20~23, 양평)
    - \* 아동 및 장애인 복지시설 중간관리자(10.30~11.1, 11.14~11.1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를 정리하면 [표-13]과 같음.

[표-13]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과 제	사 업 추 진 방 안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연구회 및 교육관계자 협의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기초연구, 지침서 및 프로그램 개발 등</li> <li>- 인권교육 NAP권고안 이행 감독 및 실무협의 창구로 활용</li> </ul> </li> <li>○ 다수인보호시설관련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 강화</li> </ul>
타분야에 비해 인권 의식 및 관심도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인보호시설(노인·아동·장애·정신보건) 관리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및 시기: 사회복지관계자, 6월 하순</li> <li>- 시설관리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시혜성 → 권리성)</li> </ul> </li> <li>○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관계자 인권감수성 제고</li> <li>○ 사회복지사협회 등 유관단체와의 홍보/협력 강화</li> </ul>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수인보호시설 인권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및 시기: 복지행정공무원, 복지단체 간사/11월~12월</li> <li>· 공무원 대상: 한국보건복지개발원(3박 4일, 1회)</li> <li>· 복지사협회 등 유관단체 대상: 권역별(3박 4일, 3회)</li> </ul> </li> <li>- 지방공무원교육원, 협회 등 자체 교육시 강사로 활용</li> <li>○ 다수인보호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용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아동, 장애인, 노인, 정신장애인), 대상별(복지행정공무원, 시설관계자, 생활인)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li> </ul> </li> </ul>
인권교육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인권과목 포함 추진</li> <li>○ 대학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인권과목 포함 추진</li> <li>○ 복지행정공무원 및 시설관계자 교육과정에 인권과목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시·도 공무원교육기관 등과 협의</li> </ul> </li> </ul>

### III.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은 '5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 인권교육 규정 및 제도화 추진 실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5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는 1) 법무분야(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정) 2) 군대분야(육·해·공군) 3) 경찰분야 4) 행정분야(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5) 사회복지분야(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로 구성되어 있음.

#### 실태조사 결과 보고의 구성

1.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1) 법무분야 - 검찰,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정
  - 2) 군대분야 - 육·해·공군
  - 3) 경찰분야
  - 4) 행정분야 -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 5) 사회복지분야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 국내 인권교육 규정 및 제도화 추진 실태
3. 실태분석 종합

- 실태조사결과는 본 연구과정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방문 인터뷰, 각 기관에서의 보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음.
- 각 공공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들은 '인권교육 추진 체계', '인권교육 추진기반조성', '인권교육과정의 실태', '응답자가 제

시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공공분야별 인권교육 실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였음.

○ 본 조사에서 사용한 분석틀은 아래 [그림-1]과 같음.

[그림-1] 국내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분석틀

인권교육 추진체계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	인권교육과정의 실태	응답자 인식
1) 직무교육 기관과 대상 2) 인권교육 관련 규정 3) 인권교육 운영 체계 4) 인권교육 전담 부서	1) 자체 인권교육 계획 및 실적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3) 자체 인권교육 네트워크 4)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인권교육과정 운영실태 (교육과정, 강사활용도, 교육참여도 등) 2) 인권교육 강사 육성 사업 실태 3) 인권 관련특별프로그램 (감수성증진 등)실태 4) 인권교육 교재활용 및 개발 실태	1) 애로점 2) 문제점 3) 개선방안



각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분석 종합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권교육의 범주

- [그림-1]의 분석틀에서 제시된 분석 항목 중 '인권교육 과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개 교육 범주를 설정하였음.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교육범주는 1) 직무교육과 연관된 인권교육, 2) 자유권과 관련된 인권교육, 3) 인권일반교육 4) 사회적 소수자와 그들의 차별과 관련된 인권교육, 5) 여성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권교육, 6)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은 아래 '인권교육범주'에 근거하여 분석되었음.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권교육 범주**

1. 직무 분야와 관련한 인권 교육 - 장병과 인권, 수사와 인권, 행정과 인권, 시설과 인권 등
  2. 인권일반교육 - 인권의 정의, 역사, 국제인권기구, 국내인권기구 등
  3. 자유권 교육 - 신체, 거주, 이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등과 관련한 교육
  4.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과 관련한 교육 -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성소수자의 인권과 그들의 차별에 대한 교육
  5.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 성희롱, 양성평등, 여성인권 등
  6.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인권 교육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등과 같은 교육
- ※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론 및 정책교육, 자원봉사는 해당되지 않음.

## 제1절 법무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

- 검찰, 교정, 출입국관리사무소

###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 직무교육 기관과 교육 대상

- 법무분야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총괄 기관은 법무연수원이고 주무 부서는 법무부임. 법무연수원 직무교육의 주요 직군은 검사, 출입국관리직,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검찰사무직, 교정직공무원이며 교육 대상은 간부(과장급 이상)와 일반 직원임.
- 법무분야 교육 대상의 규모는 아래 [표-14]과 같이 약 25,445명임.

[표-14] 법무분야 공무원의 규모

구분	검찰청공무원	법무부공무원
25,445명	8,682 <sup>1)</sup>	16,763 <sup>2)</sup>

자료: 행정자치부. 2005년. 『행정자치통계연보』,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통계자료 2005년. www.css.go.kr.

- \* 주: 1) 검찰청 공무원 중 검사의 수는 2005년 기준 1,663명임.
- 2) 법무부 공무원 중 교정직의 수는 2005년 기준 11,621명이며, 출입국사무소직은 1,357명임.

#### 2) 인권교육 관련 규정

- 법무분야의 직무교육은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sup>14)</sup>'에 의하며,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행정적 규정(훈령, 지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14)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은 1985년 11월에 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은 2005년 1월에 이루어졌음.

### 3) 인권교육 운영 체계

- 인권교육 운영체계는 직무교육에 인권교육과목을 일부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즉 직무교육체계 안에 독자적인 인권교육 과정을 두고 있지 않음.

### 4) 인권교육 전담 부서 현황

- 법무연수원 안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나 인력은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

### 1) 인권교육 자체 계획 및 실적

#### (1) 법무연수원의 「변화 전략 계획」

-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은 자체 계획으로 2006년 1월에 「법무연수원 변화전략계획」을 수립하였음. 여기서 밝힌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은 다음과 같음.
  - 법무공무원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교육계획에 검사장과 검찰청 사무국장급에 인권교육과정을 신설 반영
  - 검사 경제반 교육에 '수사와 인권'을 주제로 서경석 목사를 초빙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2006년 7월까지 2,624명의 법무공무원에게 인권교육과 현장체험을 병행 실시
  - 이와 별도로,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교정

직원을 상대로 매 과정마다 2시간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 (2) 법무연수원의 2006년 인권교육 계획

- 법무연수원은 「2006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통하여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다음 2가지 중점 사항을 설정하였음.

### <인권교육 확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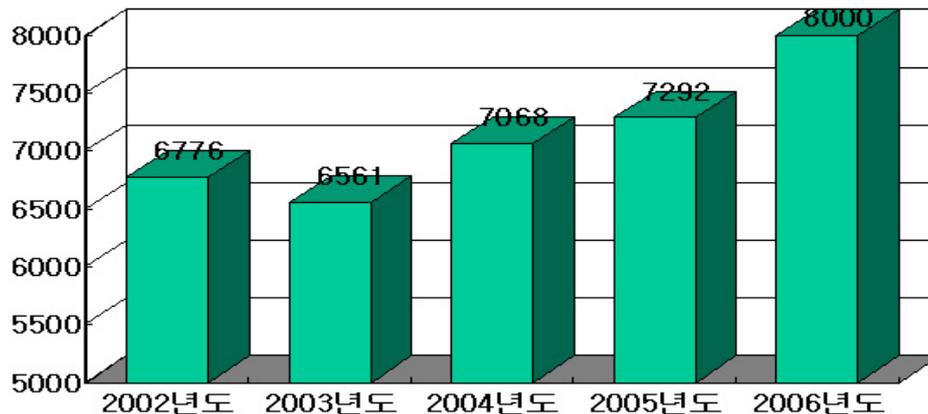
- 원칙적으로 1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편성
- 저명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 인권 관련 단체 현장체험 교육
- 신설되는 고위정책과정 교육시 인권교육 대폭 강화

### <인권감수성교육 신설>

- 일일 수용체험, 역할극, 봉사활동, 국토순례 등

## (3) 법무연수원에서 자체 추산한 인권교육 실적 및 계획 인원

[그림-2] 법무연수원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적



자료: 법무연수원, 2006년, 『2006년도 교육훈련계획』.

- [그림-2]는 법무연수원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인권교육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자료임. 자료는 최근 5년간 인권교육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법무연수원도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법무연수원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좀더 엄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식적인 협력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협조를 하는 상황임.

## 3) 인권교육 네트워크 자체 조직 현황

- 법무연수원에서 법무분야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네트워크(내부 자문회의, 연구모임 등)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4) 인권교육 자체 프로그램 개발 현황

- 법무연수원은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5) 기타: 법무부 인권국 설립

- 법무부는 법무분야의 인권 강화를 위해 2006년 4월 직제 개정을 위해 「인권국」을 설립하였으며, 초대 인권국장으로 국제인권전문가인 김종훈씨를 임명함.
- 주요 업무는 아래 [표-15]와 같으며, 인권교육 관련 업무는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인권교육 관련 업무는 법무부 인권국이 아니라 법무연수원에서 총괄 관리하는 방침인 것으로 추정됨.

[표-15] 법무부 인권국 부서의 업무 현황

부서	업무 현황
인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li> <li>-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li> <li>-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li> <li>-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 작성</li> <li>-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li> <li>- 인권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준법정신의 계도</li> <li>-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li> </ul>
인권옹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구조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li> <li>-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 등</li> <li>-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li> <li>-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li> <li>-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li> </ul>

### 3. 인권교육과정

#### 1) 인권교육과정 실태

##### (1) 법무분야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 법무연수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의 현황은 다음 [표-16], [표-17]과 같음.
-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 현황을 양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실태조사로 파악된 법무연수원에서의 인권교육은 총 3개 교육범주, 15개 인권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교육회수는 175회, 총 교육참여자는 연인원 10,952명임.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는 총 18명이며, 법무분야 내부 강사는 7명, 외부강사는 11명임.
  - 인권교육을 이수한 법무분야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법무분야 종사자 인원 총 25,445명(2004년 기준) 대비 연인원 10,952명이 인권교육 참여 경험을 갖고 있음. 이를 법무분야 종사자 대비 교육참가 연인원 비율<sup>15)</sup>로 나타내면 43.03%임.
- 실태조사에서는 인권교육 범주를 6개로 설정하였음. 인권교육 6개 범주 중 법무분야에서는 직무 관련 분야, 여성 및 양성평등 분야, 사회적 소수자 관련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음.
  -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 과정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정과 인권' 과목임. [표-17]에서 나타나 있듯이 총 175회의 교

15) 이는 엄밀한 의미의 백분율로 보기는 힘들. 본 연구에서는 법부분야의 교육 참가자의 대략적인 수량적 현황을 살펴보기위해 백분율을 활용하였음.

육회수에서 62회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자유권 분야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음. 이 결과로 자유권 분야의 인권교육이 없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무교육과정에 법적인 자유권과 관련된 교육이 있지만 내부에서 이를 인권교육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실태조사과정에서 집계(응답)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추정됨.
- 법무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방법은 총 15개 교육과정의 강의식 교육으로 파악되었으며, 참여형이나 현장체험형 인권교육 방법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16]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1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검사	2	(188)명 (3)회	이국재 이옥	변협 인권이사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범죄피해자의 보호	검사	2	(140)명 (3)회	김경석 김덕재	법무부 인권과장 진주시청장
	수사와 인권	검사	1	(102)명 (2)회	서경석	조선족교회 목사
	약식사건 양형요령 및 약식사건 수사와 인권	검찰직	2	(34)명 (1)회	최진규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강력수사와 인권	검사	1	(95)명 (2)회	서경석	조선족교회 목사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환경과 인권	검사	2	(112)명 (2)회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수사와 인권	검찰직	2	(1,090) 명 (12)회	진선룡 장경옥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보호관찰과 인권	보호 관찰직	2	(230)명 (7)회	진수명	국가인권위
	소년보호와 인권	소년 보호직	2	(70)명 (3)회	천정범	일반교수
	법무행정과 인권	전직렬	2	(110)명 (4)회	최정석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교정과 인권	교정직 6급이하	1	(4,099)명 (62)회	이영희	교정연수부 교수
사회적소 수자 및 그들의 차별에 관한 교육	외국인의 인권보호	출입국	2	(380)명 (8)회	김형완	국가인권위
여성 및 양성평등 에 관한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6급이하 전직렬	1	(4,099)명 (62)회	이영희	교정연수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 피해자 조사	검사	2	(123)명 (2)회	전길양 이상화	양성평등평생교육 진흥원 교수
	여성과 인권	6급이하 여직원	1	(80)명 (2)회	강남식	양성평등평생교육 진흥원

- 위의 [표-16]에서 파악된 법무연수원 인권교육 현황을 실적(양적)으로 재구성하면 아래 [표-17]과 같음.

[표-17] 법무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2

교육범주	총 교과정 수	교육대상	총 교육참가 인원	총 교육 회수	강 사		
					총 강사수	내부	외부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11개	검사, 검찰직,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교정직(6급이하)	6,270명	101 회	14명	6명	8명
자유권 교육	0개	-	0명	0회	0명	0명	0명
사회적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에 관한 교육	1개	출입국	380명	8회	1명	0명	1명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3개	6급이하 전직렬 검사 6급이하 여직원	4,302명	66회	4명	1명	3명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0개	-	0명	0회	0명	0명	0명
총 교과과정 현황 정리	15개	검사, 검찰직,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교정직(6급이하)	10,952명	175 회	18명	7명	11명

\* 주: 교육참가 인원은 각 교육과목별로 교육에 참여한 수를 모두 포함한 연인원임. 실 교육 인원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직군별로는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인 검사, 출입국관리직, 교정직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직위별로는 6급이하 하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은 운영되고 있으나 간부직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이 특

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향후 법무분야 인권교육 과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군별, 직위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sup>16)</sup>

-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은 직무분야와 관련된 인권교육과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등 2개 범주, 7개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검사직에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은 법무분야 총 11개 직무 관련 인권교육과정 중 6개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법무분야에서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교육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교육회수는 14회이며, 교육 참여 인원은 전체 검사수 1,663명(2005년 기준)<sup>17)</sup> 대비 연인원 760명임.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45.70%임.
- 교육강사는 총 7개의 교육과정에서 법무부 소속의 교육 강사가 4명, 외부 교육강사 자원이 5명으로 파악되었음. 외부 강사의 경우는 시민운동 활동가 출신이 2명, 변호사 협회에서 1명, 양성평등평생교육진흥원 교수 2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16) 추가되는 각주내용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에 관한 내용은 [표-18]을 참조하기 바람.

17)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에서 참조함.

[표-18]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직무분야 와 관련한 인권교육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검사	2	(188)명 ( 3)회	이국재 이옥	변협 인권이사 법무부 인권옹호과장
	범죄피해자의 보호	검사	2	(140)명 ( 3)회	김경석 김덕재	법무부 인권과장 진주시청장
	수사와 인권	검사	1	(102)명 ( 2)회	서경석	조선족교회 목사
	강력수사와 인권	검사	1	(95)명 ( 2)회	서경석	조선족교회 목사
	환경과 인권	검사	2	(112)명 ( 2)회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법무행정과 인권	전직렬	2	(?)	최정석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여성 및 양성평등 에 관한 인권교육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 피해자 조사	검사	2	(123)명 ( 2)회	전길양 이상화	양성평등평생교육 진흥원 교수
현황 집계	교육범주	교육과정수	교육 회수	교육 참여자수 (연인원)	교육강사수	
	2개	7개	14회	760명	9명 (내부4명+외부5명)	

\* 주: '법무행정과 인권과목'에 교육 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로 처리하였음. 왜냐하면 조사 내용에 전직렬을 대상으로 인원수가 산출되어 순수 검사직의 교육참여 인원 파악이 안되기 때문임.

### (3) 교정직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sup>18)</sup>

- 교정직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검사와 마찬가지로 직무분야와 관련된 인권교육과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2개 범주, 3개 교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교정직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 인권교육은 법무분야 총 11개 직무관련 교육과정 중 2개로 구성되어 있음. 교과목명은 '법무행정과 인권', '교정과 인권'임. '법무행정과 인권' 과목이 전직렬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교정분야에서 직무관련 인권교육 과목은 실질적으로 '교정과 인권' 1개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교정과 인권' 과목은 총 66회의 교육회수 중 62회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교정과 인권' 과목은 법무분야 직무관련 인권교육의 필수 과정임을 알 수 있음.
  - 교정직의 직무 관련 인권교육은 검사직에 비해 교육과정 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음. 따라서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직군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교정직의 인권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교육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총 교육회수는 66회가 이루어졌으며 '교정과 인권' 과목 이수자수는 전체 교정직 공무원 11,621명 대비 연인원 4,099명으로 추정할 수 있겠음. 이를 비율로 산출하면 35.27%임.
  
- 교육강사는 총 3개 교육과정 모두 내부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검사직에 대한 인권교육에서 시민운동 활동가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8) 추가되는 각주내용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에 관한 내용은 [표-19]을 참조하기 바람.

[표-19] 교정직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법무행정과 인권	전직렬	2	(?)	최정석	법무부 혁신인사 기획관실
	교정과 인권	교정직 6급 이하	1	(4,099)명 (62)회	이영희	교정연수부 교수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련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6급 이하 전직렬	1	(?)	이영희	교정연수부 교수
현황 집계	교육범주	교육과정수		교육 회수	교육 참여자수 (연인원)	교육강사수
	2개	3개		62회	4,099명	3명 (내부 3명)

\* 주: '법무행정과 인권'과 '성희롱 예방교육' 과목에 교육 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로 처리하였음. 왜냐하면 조사 내용에 전직렬을 대상으로 인원수가 산출되어 순수 교정직의 교육참여 인원 파악이 안되기 때문임.

**(4) 출입국관리직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sup>19)</sup>**

- 인권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분야와 관련된 인권교육, 사회 소수자에 관련된 인권교육,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3개 범주, 3개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보면 '법무행정과 인권' 교과목과 '성희롱 예방교육'이 전직렬을

19) 추가되는 각주내용 검사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현황에 관한 내용은 [표-20]을 참조하기 바람.

대상 공통 과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개 교과과정만이 출입국관리직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직무교육 관련 인권교육은 법무분야 총 11개 직무 관련 교육과정 중 1개로 구성되어 있음. 교과목명은 '법무행정과 인권'으로 이 과목은 전직렬 대상 공통과목임. 따라서 실질적으로 출입국관리직 대상 직무 관련 교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화된 인권교육은 사회 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과목은 '외국인의 인권보호' 과목임.

- 교육 참가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인권보호' 과목 이수자 전체 출입국관리소직 1,357명 대비 연인원 380명으로 추정<sup>20)</sup>할 수 있겠음.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28.00%임. 이러한 결과는 법무분야가 타 직군에 비해 교육 참여자수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외국인의 인권보호' 과목 교육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참여하고 있어 교육강사 활용 측면에서 일부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 '법무행정과 인권'과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 참여자를 연인원으로 산출하지 않았음. 왜냐하면 여기서는 순수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임.

[표-20] 출입국관리직에 대한 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법무행정과 인권	전직렬	2	(?)	최정석	법무부 혁신인사기획관 실
사회적소수 자 및 그들의 차별에 관한 교육	외국인의 인권보호	출입국	2	(380)명 (8)회	김창완	국가인권위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6급 이하 전직렬	1	(?)	이영희	교정연수부 교수
현황 집계	교육범주	교육과정수		교육 회수	교육 참여자수 (연인원)	교육강사수
	3개	3개		8회	380명	3명 (내부 2명+외부1명)

\* 주: 법무행정과 인권과 성희롱 예방교육 과목에 교육 인원을 산출하지 않고 (?)로 처리하였음. 왜냐하면 조사 내용에 전직렬을 대상으로 인원수가 산출되어 순수 출입국관리직의 교육참여 인원 파악이 안 되기 때문임.

## 2) 인권교육 강사 육성 사업 실태

- 법무연수원에서 인권교육 강사나 지도자에 대한 양성 교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3) 인권 관련 특별(감수성 증진 등) 프로그램 실태

- 법무연수원에서 인권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등과 같은 인권 관련 특별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자체교육 계획으로 '사회봉사활동', '국토순례 활동', '1일 수용 체험' 등의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응답 내용이 없었음.

## 4) 인권교육 교재의 운영 및 개발 실태

- 법무연수원에서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교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인권교육 교재 개발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재 활용에 대해서는 '교정과 인권' 과목에 『인권 길라잡이 교정편』을 활용하고 있었음.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 길라잡이 검찰편』 교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조사응답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교재에 대하여 '강의시 보조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뿐 포괄적으로 사용할 만한 교재가 아니다'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 또한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이미 인권교육이 많이 시행되어 '원론적인 수준과 각론적인 수준, 실무적인 수준 등 교육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가능한 교재가 아니라

는 점을 지적하였음.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교재의 개선점으로 '인권교육에 필요한 공통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기서 밝히는 내용은 실태조사 질문지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임.

##### 1) 인권교육 시행의 애로점

###### (1) 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

- 조사결과 응답자는 인권교육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①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부족, ② 조직내 인식 부족, ③ 인권교육 관련 시행 지침의 미비, ④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조사결과 응답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데 어려움으로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의 부족, ② 조직내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의 문제점

- 조사결과 응답자는 교정분야의 인권교육에서 직원뿐만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수용자는 무조건적으로 인권을 요구하고 누릴 수 있다는 시각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3) 개선방안

- 응답자는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음.
  - 첫째, 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기구나 부서의 신설 필요
  - 둘째, 인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언제든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셋째, 인권교육에 필요한 교구, 교재, 교육기법 등에 대한 개발과 각 분야의 특성과 실무를 감안한 교육방법론 개발
  - 넷째, 인권교육에 대한 통일된 지침 제시

##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1) 검사, 교정직, 출입국사무직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 비교

- 법무분야의 주요 인권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교정직, 출입국사무직에 대한 인권교육의 상황을 비교하면 아래 [표-21]과 같음.
  - 법무분야 3개 직군에서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직군은 검사직군임. 이는 아래 [표-21]에 나타나있듯이 총 교육과정수, 직무관련 인권교육과정수가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에 대한 직무 관련 교육은 1~2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교정직의 직무 관련 인권 교육은 '교정과 인권' 과목 1개이며, 출입국관리직의 경우는 '법무행정과 인권' 과목이 전직렬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있음.

- 법무분야 3개 직군의 교육참여자 현황을 비율로 살펴보면, 검사직이 45.70%, 교정직이 35.27%, 출입국관리직이 28.00%로 나타났음. 앞서 살펴보았듯이 검사직이 직무 교육과정 수 측면에서, 교육참여자의 비율면에서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음.

[표-21] 법무분야 검사·교정직·출입국사무직 인권교육 실태 비교

구분	검사	교정직	출입국사무직
교육범주	2개 (직무,여성 및 양성평등)	2개 (직무,여성 및 양성평등)	3개 (직무,여성 및 양성평등, 사회소수자분야)
총교육과정수	7개	3개	3개
직무 관련 인권교육과정수	6개	2개	1개
대표적 인권교과목명	수사와 인권	교정과 인권	외국인의 인권보호
교육대상의 규모	1,663명	11,621명	1,357명
교육참여 인원	760명	4,099명	380명
직군별 교육참여 인원 비율	45.70%	35.27%	28.00%
인권위 교재활용 교과목	없음	교정과인권	없음
외부강사활용	5/9	0/3	1/3

- 교정직의 경우 잠재적인 교육 대상의 규모가 11,621명으로 많으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들이 주요 관리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지침 개발과 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2) 인권교육 실태 분석 요약

- 법무연수원은 2006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1주 이상 전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편성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실태조사로 파악된 인권교육은 총 3개 교육범주, 총 15개 인권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교육회수는 175회, 총 교육참여자는 연인원 10,952명임.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는 총 18명이며, 법무분야 내부 강사는 7명, 외부강사는 11명임.
  - 인권 교육을 이수한 법무분야 종사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인원 총 25,445명(2004년 기준) 대비 연인원 10,952명이 인권교육 참여 경험을 갖고 있음.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43.04%임.
- 법무분야의 인권교육 과정 현황을 요약하면, 직무교육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군별 인권교육의 양상은 검사직의 직무관련 인권교육이 교정직이나 출입국관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 활용도 직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과정 운영 양상과 유사하게 검사직이 타 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와 같은 외부 강사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인권감수성훈련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계획에는 나타나 있으나 실제

운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법무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인권교육에 적극적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노력이 미흡함.
  - 자체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미개설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보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특화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법무분야에 인권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 차원의 방안이 필요함.
  - 조사응답자가 인권교육의 애로점으로 '조직 내 인식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무분야의 자체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가정책결정단위에서 법무분야 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확대·강화할 수 있는 방침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군대분야 인권교육 운영 실태

### - 육군, 해군, 공군을 중심으로

- 국방부에서의 인권교육은 장병기본권교육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임. 군대에서는 '인권'이라는 용어 대신 '장병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은 군대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제도 도입 초기 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 됨.
- 본 연구에서는 장병기본권교육을 인권교육의 취지가 반영<sup>21)</sup>된 것으로 파악하여 인권실태를 정리하였음.

##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 직무교육 기관과 교육대상

- 직무교육의 총괄은 국방부에서 이루어지며 실제 교육 시행은 육군, 해군, 공군의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은 장교, 부사관, 장병, 군무원임.
  - 인권교육의 대상을 장병까지 포함하면 약 64만 1천명으로 추정됨. 2004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군의 병력은 육군 55만명, 해군 6만 7천명, 공군 6만 4천명으로 보고되었음.

### 2) 인권교육 관련 규정

- 군대분야에서 직무교육과 관련한 규정은 '국방부 교육훈련 규정', '사

---

21) 군대의 장병기본권 교육을 인권교육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의 지점이 있을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은 연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았음.

관학교 설치법', '각 군 교육훈련 규정',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교육은 장병기본권 교육의 일환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인권교육 관련 규정은 장병기본권 교육 관련 규정으로 육군의 경우 '장병기본권보장교육 지침(2005년 4월 제정)', '장병기본권 상담실 운영 방침(2006년 3월 제정)<sup>22)</sup>' 등과 관련된 규정이 있음.

### 3) 인권교육 운영 체계

- 인권교육 추진은 앞서 언급했듯이 국방부 통제과목에 장병기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국방부 방침으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국방부의 장병기본권 교육은 군대의 직무교육 시스템에 독자적인 장병기본권교육과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간부 육성 교육, 직무교육, 부대 교육·훈련 전 과정에 장병기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경찰의 인권교육과정과 유사하며 독자적인 인권과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무분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방부의 장병기본권 교육과정은 아래 [표-2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양성과정, 보수과정, 부대 교육·훈련과정 3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양성과정은 장교와 부사관을 육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사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 보수과정은 장교와 간부들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임. 부대 훈련은 국방부 각 예하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임.

---

22) 육군지침 06-15호.

[표-22] 국방부의 장병기본권 교육과정

○ 양성과정
- 장교(사관학교, 3사교, 학군교): 반기 1회, 3H 이상(학사장교는 2H 이상)
- 병, 준·부사관: 2H 이상
○ 보수과정
- 고급군사반: 2H 이상
- 각 군 대학: 4H 이상
- 국방대(안보과정, 합참대): 6H 이상
- 부사관 2중급 이상 과정: 2H 이상
- 대형 장군진급반, 무궁화회의 등: 1-2H
○ 부대 교육훈련시: 반기별 1-2H 이상, 수시 기회 교육 시행

#### 4) 인권교육 전담 부서

- 인권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은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실 소속의 '인권팀'이 주무부서임.
- 국방부 인권팀에는 총 6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인권팀의 주요 업무는 아래 [표-23]과 같음. 국방부의 인권팀 설립은 2006년 1월 1일부로 국방부 직제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현재 팀장은 이성주 변호사임.

[표-23] 국방부 인권팀의 업무 현황

인권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내 인권정책 및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li> <li>- 인권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li> <li>- 군내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구제</li> <li>- 인권 담당 법무관 제도 운영</li> <li>-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인권 관련 진정 및 민원사항 처리</li> <li>- 인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및 국내 시행에 관한 사항</li> </ul>
-----	---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국방부 인권팀 방문 결과 보고』.

- 국방부 산하 각 군에 인권교육 전담부서는 특화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군 본부의 교육·훈련 담당부서에서 병행하여 장병기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 인권교육 추진 기반 조성

### 1) 인권교육 자체 계획

- 국방부의 인권교육은 2006년 이전에는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2006년부터 장병기본권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방부는 1990년에 들어서면서 장병의 인권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음. 군은 1995년 '군기강 확립 방침', 1999년 '신병영문화 창달 방침', 2001년 '성범죄 방지대책', 2003년 '사고예방 종합대책', 2003년 '병영생활 행동강령', 2005년 『군대와 기본권상담용 교재』 발간, 2005년 '21세기 강군 육성을 위한 선진병영문화 비전 제시', 2006년 국방연구원(KIDA)에서 연구한 『장병 기본권 지침서』 전군 배포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김열수, 2006).
- 국방부는 2005년 전방 총기난사 사고 직후, 대통령 지시로 군대 내 '병영문화 개선 TFT'가 구성되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수립하였음. 이에 따라 '군 기본권 전문 상담관 제도 도입', '장병 기본권 과목을 통제과목으로 신설' 등의 방침을 3군에 하달하였음. 또한 2005년 11월-12월 사이에 통제과목(안보·작전·정신교육 등 19개 과목)에 대한 장병기본권 관련 교육지침을 수립하여 각 군 본부에 하달하였으며, 각 군 교육기관(각 군 본부 및 교육사령부)은 자체적으로 장병기본권 관련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군 기본권 전문 상담관 제도는 군내 인권침해 예방 및 장병 정신건강 상담, 스트레스 관리, 고충 상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육군 7명(군 출신 4명, 민간 3명), 해병대 2명 등 9명의 상담관을 선발하여 2006년 6월까지 시범운영 하였음.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확대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육군의 경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24]에 나타나있듯이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지침’, ‘부하 사병화 금지 지침’, ‘장병기본권 상담실 운영 방침’, ‘비전캠프 운영 지침’ 등임.

[표-24] 군대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육군 사례

계획서, 지침서, 보고서의 명칭	작성 시기	비고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지침	05. 4. 11	육군본부 지침 및 방침으로 작성되어 전 부대에 적용 중
부하사병화 금지지침	06. 2. 27	
장병기본권 상담실 운용방침	06. 3. 31	
비전캠프 운용 지침	06. 4. 03	

##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체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인권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군 직무교육 담당 부처와는 비정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외부와 단절적인 국방부의 조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조직법 상으로도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인권교육과 관련한 외부와의 협력체계는 국방부 인권팀으로 일원화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식적인 사업으로 '군대분야 인권교육지침서 개발', '군 인권교육 과정', '군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3)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네트워크 구축 실태

- 국방부 인권팀의 군대분야 인권교육 네트워크는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육군의 경우 인권교육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의 '육군본부 인권개선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장병 인권보장, 인권교육체계 구축, 인권침해, 차별행위 예방 활동, 타 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을 하고 있음.

### 4) 인권교육 자체 프로그램 개발

- 군대분야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장병기본권교육지침서' 개발이 이미 이루어져 3군에서 활용되고 있음.
  - 국방부는 연구용역(과제명: 군대내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발주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며, 용역은 국방대학원 국가안전보장대학원 김열수 교수(정치학 박사)가 수행 중임.

##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1) 인권교육과정 실태

-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군대의 인권교육 과정은 장병기본권 교

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음. 기본 교육 과정은 육·해·공 3군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태조사에 구체적인 응답을 해온 공군의 사례를 '인권교육과정'으로 제시하였음. [표-25]참조.

- 장병기본권교육은 직무교육과 관련된 인권교육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군대에서의 인권교육범주는 크게 직무관련 분야와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분야 2개로 운영되고 있고, 총 6개의 교육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장병기본권교육', '안전관리교육', '인성교육', '부하상담교육' 4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 분야는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예방교육'과 '성윤리교육' 2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육군의 경우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에 1,589명, 6회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시간은 2-3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교육강사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김열수, 2006).
  - 교육참여자 현황은 실태조사로 파악할 수 없었음. 군의 장병기본권 교육이 현재 진행상황이라 조사 응답자가 각 군의 교육 현황 집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직위별 교육참여자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였음.
- 군의 장병기본권 교육에서 간부 대상 교육은 보수과정임. 보수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양성과정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60만명 이상의 방대한 대상자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단계별 교육과정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방대한 군의 장병기본권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교육 자원을 수급하는 것도 군의 입장에서 힘들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군의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고위 간부, 장교를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교육방법은 강의, 토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담당자는 교수, 교관이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양성교육 및 보수과정 전 과정에 초빙교육(초빙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요원, 대학교수)을 2시간 반영하고 있음. 교재는 군법교재, 시청각 자료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김열수, 2006).
- 교육강사는 각 군에 있는 자체 교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방부 지침에서는 양성교육 및 보수과정 전 과정에 외부강사 초빙교육(초빙강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요원, 대학교수)을 2시간 반영제시가 되었음. 아래 [표-25]의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교육’ 과목에 자체 강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각 군에서의 외부 교육 강사 활용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육군, 해군에서도 국방부 지침에 따라 외부 교육강사를 활용하는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음.

[표-25] 군대분야에서 강사 운영 실태-공군 사례

구 분		담 당 교 관
군 법 (장병기본권)	공 사	◦ 학교 자체 교관(법학과, 군사훈련처)
	교육사	◦ 양성과정(군법): 법무실 군법교육담당 ◦ 보수과정(장병기본권): 각 학교 교관실장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공 사	◦ 학교 자체 교관(생도대 여훈육관)
	교육사	◦ 양성과정: 훈련단 일반학 교관 ◦ 보수과정: 각 학교 국내실무 연수 수료자

\* 주: ‘공사’는 공군사관학교이며, ‘교육사’는 교육사령부임.

## (1) 인권교육과정 실태

- 양성과정의 인권교육은 5개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장병기본권 교육', '안전관리교육', '인성교육',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예방교육', '성윤리교육'임. 이 중 성윤리교육과 인성교육은 보수과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음.
- 보수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은 3개 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장병기본권 교육', '부하상담기법',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예방교육'임.
- 교육시간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표-26]의 장병기본권 지침에 의함.

## (2) 부대 교육·훈련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 부대에서의 인권교육은 지휘관 정신교육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육군의 부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해 김열수(2006)는 대상자별 지휘관 책임아래 2005년 3월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육군에서 대대장은 주1회 병사를 대상으로 구타·가혹행위 금지, 폭언·욕설금지, 부당한 명령 거부권, 의견 건의·고충처리권, 안전권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연대장은 월1회 위·준·부사관을 대상으로 육군인권선언 낭독 및 제창, 병사기본권 보장, 간부기본권 보장, 지휘통솔 및 임무수행 기법 건의 및 고충수렴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여단장은 분기1회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육군 인권선언 낭독 및 제창, 장병기본권 보장, 부대 운용 여건 보장 건의 및 고충수렴을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음.
  - 그러나 군부대에서 시행되는 장병기본권교육의 교육·훈련은 대규모 집합교육으로써 지침 전달 방식의 교육일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군의

부대에서의 인권교육은 내용과 체계를 갖춘 인권교육이기 보다는 방침을 전달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큼. 또한 부대에서 교육·훈련의 시행은 최상급 간부의 교육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현재 군 인권교육 지도자 교육에 최상급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부대에서 시행되는 장병기본권교육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표-26] 군대분야 장병기본권 교육 현황-공군 사례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기관	
직무분야와 관련된 인권교육	양성과정	장병기본권 교육	○ 장병 기본권 개념 정립 및 보장을 위한 사례중심 교육(토의 포함) - 기본권 개념 및 중요성 - 장병기본권 관련 법규 및 침해사례 - 기본권 침해 발생시 조치요령 - 기본권 침해 예방대책	장교 부사관 장병	2	공사 교육사
		안전관리	○ 각종 군기관 관련 사고예방교육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교육 - 3대 악성사고사례/방지 대책 (구타/가혹행위, 음주운전, 과립치행위) - 자살 및 탈영 예방교육(VTR 시청)	장교 부사관 장병	4 4 2	공사 교육사
		인성교육	○ 올바른 인간관계 및 인성확립을 위한 리더십 교육 - 조직과 인간관계 - 충, 효, 예 교육 - 자아성찰 등	장교	16	교육사
	보수과정	장병기본권 교육	상동	장교 (고급/초급) 부사관	4/2 2	교육사
		부하 상담기법	○ 장병 인권 보장 및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상담자로서 기본 능력 및 자질 함양 - 상담과정, 기술, 이론 지식 습득 - 상담사례 분석 및 실습	장교 (고급/초급) 장교 (중령) 군무원	14/ 16 2 4	교육사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예방 교육	○ 여성/여군 인권보호 차원의 교육 운영 -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방지법 - 육아휴직/보건휴가 등 모성보호 교육 - 군 여성 활용 현황과 양성평등 비전 - 양성평등 패러다임 변화와 성주류화 - 일상생활에서 이뤄가는 양성평등	장교 (생도) 장교 부사관 장병	14 2 2 2	공사 교육사
	성윤리 (양성과정)	○ 여성 및 여군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과목 운영 - 성희롱의 법적 한계 및 구분 - 올바른 성윤리관 형성 유도 - 성희롱 예방대책	장교 (사후)	2	교육사

\* 주: '공사'는 공군사관학교이며, '교육사'는 교육사령부임.

## 2) 인권교육 강사 육성 사업 실태

- 국방부 인권팀에서 인권교육 강사나 지도자에 대한 양성 교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육군의 경우 '상담 관련 소집 교육'<sup>23)</sup>을 인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되었음. 주요 교육 내용은 의사소통 기법, 상담 기법에 관한 교육임.
- 해군의 경우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한 '군 인권 감수성 향상 과정'을 이수한 교관이 인권교육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

23) 이를 인권교육 강사 육성 과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조사응답자의 인권을 존중하여 반영하였음.

### 3) 인권 관련 특별(감수성 증진 등) 프로그램 실태

- 군에서 인권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으로 육군에서 ‘비전캠프’ 과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자살 우려자, 복무 부적응자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방부에서는 장병기본권 교육이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교육의 정착에 무게를 두고 있음. 따라서 장병기본권교육 시행 1년차인 2006년도에는 육·해·공 3군에 일률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년 이후 군 인권교육과정 개발과 군 적용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 4) 인권교육 교재 활용 및 개발 실태

- 실태조사 결과, 국방부에서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교재는 2006년 국방연구원에서 제작한 『장병기본권 지침서』가 전군에 기본 교재로 활용되고 있음. 각 군에서는 이 지침서를 바탕으로 각 군의 실정에 맞는 장병기본권 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음.

#### (1) 인권교육 자체 교재 활용 현황

- 육군의 경우 자체 교재로 『장병기본권 지침서』<sup>24)</sup>, 『군대와 기본권』, 『병영생활지도 지침서』 등을 장병기본권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며 자료의 형태는 공식 출판물임.

---

24)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장병기본권 지침서』는 기본권 교육시 교관용으로 활용되고 있음.

- 공군의 경우 장병기본권 과목에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자료』, 『법학개론』, 『군대윤리』 교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교육에 『군인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안내서』, 『성희롱 예방』(CD 자료), 『양성평등, 실천하니 좋아요』 교재를 활용하고 있음. [표-27]참조
- 해군의 인권교육 교재는 『장병기본권 보장』이 있음. 이 교재는 국방부 지침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2005년 9월에 예하부대에 배포가 되었음. 교재의 내용은 기본권 일반이론,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요소 및 자세, 장병기본권보장 환경 조성으로 이루어졌음.

[표-27] 군대분야 인권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재-공군 사례

구 분		담 당 교 관
군 법 (장병기본권)	공 사	○ 법학개론 ○ 군대윤리(공사) ○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자료(공군본부)
	교육사	○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자료(공군본부)
성인지력 향상 및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공 사 교육사	○ 군인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국방부, 교재) ○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 안내서(국방부, 교재) ○ “양성평등, 실천하니 좋아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재) ○ 성희롱 예방(국방부, CD 자료) ○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국방부, PPT자료)

\* 주: ‘공사’는 공군사관학교이며, ‘교육사’는 교육사령부임.

## (2) 국가인권위 발간 교재 활용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재 활용에 대해서는 각 군 교육본부마다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육군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 해군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별별이야기』, 『여섯개의 시선』을 전 인권교육 과목에 2006년 8월 이후 교재로 사용하고 있음.
  - 공군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성평등 교육에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발간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에서 발행한 인권교육 교재에 대한 평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재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고 개념위주'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군부대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적용 제한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 또한 각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음.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교재의 활용은 개념위주의 인권교육에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음.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기서 밝히는 내용은 실태조사 질문지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임.

## 1) 인권교육 시행의 애로점

### (1) 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

- 군대에서 인권교육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① 예산의 부족, ② 인력의 부족, ③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부족, ④ 인권교육 관련 시행 지침의 미비, ⑤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 ⑥ 적절한 강사진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조사결과 응답자는 군대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 어려움으로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의 부족, ② 인권교육 관련 교재의 부족, ③ 국가인권위원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의 문제점

- 응답자는 군대분야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음.
  - 첫째, 군 임무의 특성 상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한 인권교육 내용의 개발
  - 둘째, 군은 인권교육의 사각지대라는 사회 내에 퍼져 있는 선입관의 해소 문제
  - 셋째,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

### 3) 개선방안

-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음.
  - 첫째, 군의 특성과 연건을 감안하여 군이 수용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교육 지침의 제시와 군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인권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둘째, 인권 관련 전문가 양성, 전문 상담과 운용 등을 위한 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
  - 셋째, 군 자체 개발 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정 및 필요한 예산의 지원

##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1) 육·해·공 3군의 인권교육 실태 비교

- 아래 [표-28]는 육군, 해군, 공군 3군의 인권교육 실태를 비교한 자료임. 3군의 인권교육 실태를 비교해 본 결과, 육군이 타군에 비해 자체 계획 수립 측면, 네트워크 구축 측면, 인권교육강사 육성사업 측면, 인권 관련 특별 프로그램 시행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음.

[표-28] 군대분야 육군·해군·공군의 인권교육 실태 비교

구분	육군	해군	공군
인권교육 기본 과정	2개 (장병기본권, 여성 및 양성평등)	2개 (장병기본권, 여성 및 양성평등)	2개 (장병기본권, 여성 및 양성평등)
교육 참여자 규모 추계치 <sup>1)</sup>	55만명	6만 7천명	6만 4천명
자체 계획 수립 현황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지침 부하사병화 금지 지침 장병기본권상담실 운영방침 비전캠프 운영 지침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 지침	장병기본권 보장 교육 지침
자체 인권교육 네트워크	육군본부 인권개선위원회	없음	없음
인권강사 육성 사업	상담관련 소집 교육	없음	없음
인권 관련 특별 프로그램	비전 캠프	없음	없음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활용	장병기본권 분야 3종	장병기본권보장 분야 1종	장병기본권보장 분야 3종 여성 및 양성평등 분야 4종

\* 주: 군대 교육 참여자 규모의 추계치는 각 군이 병력 수로 산출하였음. 『국방백서』(2004) 참조.

○ 3군의 인권교육과정은 장병기본권 지침에 의거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 범주는 장병기본권 교육(직무교육 분야)과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인권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참여자의 규모는 정확한 집계 불가능함. 현재 국방부 지침에

의거하면 모든 군의 간부와 장병이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되어있음. 이에 근거하면 군대의 모든 병력이 해당할 수 있음. 대략 교육 참여자의 규모를 추정해보면 육군이 55만명, 해군이 6만 7천명, 공군이 6만 4천명 총 64만 1천명임.

- 인권교육 관련 자체 계획과 지침은 육군이 4종, 해군과 공군은 각 1종으로 3군 중 육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네트워크 구축 활동은 육군에서만 확인이 되었음. 네트워크의 내용은 '육군 인권개선위원회'임.
- 인권강사 육성사업도 육군에서만 확인이 되었음. 사업내용은 '상당 소집 교육'임.
- 인권 관련 특별 프로그램도 육군에서만 확인이 되었음. 사업내용은 '비전캠프'임.
- 인권교육 교재는 육군에서 3종, 해군에서 1종, 공군에서 7종이 활용되고 있음. 공군에서는 자체 개발한 '장병인권교육 보장 교육 자료'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교육원에서 발간된 관련 교육 자료의 활용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 인권교육 실태 분석 요약

- 국방부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조직 강화,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 추진, 인권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등 일련의 조치들을 볼 때, 군대 내에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히 군대내 사고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의 인권증진’이라는 보다 크고 깊은 흐름의 일환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룸.
- 군의 인권교육은 장병기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임. 장병기본권 교육은 각 군의 교육사령부, 사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 중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부대에서도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 군대에서의 인권교육을 분석해보면, 교육과정은 주로 장병기본권교육, 성군기예방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관리교육, 상담교육을 장병기본권보장 차원의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군대의 인권교육은 초기단계이며, 2006년 실행된 장병기본권교육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직무와 복무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군대 현실에 맞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장병기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장병의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 볼 수 있으며, 취약한 군대의 인권 상황에 비치어 볼 때 취지를 공감할 수는 있겠음. 향후 장병기본권 교육 안에 다루어지는 인권교육 범주가 보다 더 다양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군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자체 인프라 구축도 보다 더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인권교육 인력,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행체계 등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 군대 내에 인권교육 확산을 도모하기에 좋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국가위원회가 인권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프로그램개발, 국방부와 상호협력 체계구축 등의 노력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임.

### 제3절 경찰분야 인권교육 운영 실태

####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 직무교육 기관과 대상

-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총괄 기관은 경찰청 교육과이고 주무기관은 경찰청임. 경찰 직무교육은 경찰청 소속의 각 교육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 대상은 경찰공무원(전·의경 포함) 전체임.
- 경찰청 교육기관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보안연구소, 지방경찰학교 등임.
- 경찰공무원의 규모는 101,219명(2005년 기준)<sup>25)</sup>임.

##### 2) 인권교육 관련 규정

- 직무교육은 '경찰공무원교육훈련 규칙'에 의하며 인권교육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6년 1월)이라는 내부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 따라서 경찰분야는 인권교육을 위한 자체 행정적 규정(훈령,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3) 인권교육운영 체계

- 인권교육 운영은 직무교육에 독자적인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의 인권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직무교육 안에 독자적인 인권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 부문에 비해 진일보 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군대의 장병기본권 교육 운영 체계와

25)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 참조.

유사하며 법무분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권교육과정 구성은 아래 [표-29]와 같이 최대 4개의 세부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육기관별로 2개 과정인 경우도 있고, 1개 과정인 경우도 있음.
  - 아래의 예는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교육 과정임. 총 2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범죄 피해자의 이해, 시민단체의 이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 경찰과 인권 등 기본 4개 구성되어 있음.

[표-29]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과정-경찰대학 사례

교과목	시간	교수방법
범죄 피해자의 이해	3	강의
시민단체의 이해	3	강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10	강의(3) 및 체험(7) * 체험은 사회봉사활동
경찰과 인권	7	- 인권의 이해(2) - 인권감수성 키우기(5)

자료: 경찰청. 2005. 『경찰 인권보호강화계획』.

- 인권교육 전담부서
  - 인권 활동과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이며, 담당인력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권교육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인권 교육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찰청은 2005년 2월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인권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여 종전 기능별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던 인권업무를 총괄, 조정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2005년 6월 15일 '경찰 인권교육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인권교육을 경찰청 소속 각 교육기관별로 시행하고 있음.
- 또한 2005년 상반기 이후 '인권수호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 인권상담전화(02-313-7035)를 운영하고 있음.

## 2.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

### 1) 인권교육 자체 계획 및 실적

#### (1) 인권교육 자체 계획

- 인권교육 계획은 '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 '인권교육 추진체계 확립', '경찰관 인권강사 양성'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경찰관이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005년 6월에 수립한 '경찰 인권교육 강화 기본계획'이 기본 내용임. 여기에서는 계획의 기본 목차를 소개하도록 하겠음.

####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본 방침
  - 교사-학생모형의 일방적인 주입식을 지양하고 동료간 촉진 모형으로 개발
  - 교육목표 및 교육대상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법 개발
  - 신규 프로그램 개발은 추진하되 우선 기존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

## 단체 프로그램 활용

- 개발 방식: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개발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가 지원 및 예산 집행
  - 경찰청: 경찰 실무에 적합한 자료 제공 등 자문 담당
  
- ② 인권강사양성 계획
  
- 기본 방침
  - 외부강사 pool구축: 인권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
  - 경찰관 강사 양성: 선발강사 양성하고 피라미드식 확산
  
- 경찰관 인권 강사 확대 전략
  - 1단계(20명): 각급학교 교수요원 및 인권센터 요원 전문 인권강사로 양성, 국가인권위원회와는 프로그램 기획과 강사 지원에 협조를 요청
  - 2단계(30명): 지방학교 교수요원 대상 전문 인권강사 양성, 종합학교 교수요원 및 1단계시 개발된 프로그램 활용
  - 3단계(1004명): 종합학교 인권과정 활용 경찰서 인권 강사 양성, 종합학교 인권과정 프로그램을 강사양성과정으로 개선
  
- ③ 교육훈련체계 구축
  
- 기본방침
  - 각급 경찰청 소속 학교 인권강좌 개설
  - 관서별 인권교육 강화
  
- 목표
  - 신입교육과 재직자 대상 인권전문과정 개설

- 일반교육과정 및 전·의경과정 대상 인권강좌 시간 확대

**(2) 인권교육 활동 실적**

- 인권교육은 크게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지방경찰학교 등)과 경찰서 2개로 이루어짐. 2005년 경찰분야에서 진행된 인권교육 활동 실적은 아래 [표-30]과 같음.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의 자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총 교육회수는 2,236회, 교육 참가 연인원은 293,992명으로 나타나 있음.
  - 경찰 공무원의 규모가 2005년 기준 101,219명임을 감안했을 때, 교육 참가 연인원이 293,992명<sup>26)</sup>이라는 점은 적어도 모든 경찰공무원이 1회 이상 인권교육에 참가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음. 이를 전체 경찰 공무원 101,219명 대비 연인원 교육참여자 비율로 살펴보면 290.45%임.

[표-30] 경찰분야 2005년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005.1.1-12.31)

합 계		경 찰 관 서		교 육 기 관 교 육	
횟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과정	연인원
2,236회	293,992명	2,063회	259,183명	173개	34,809명

자료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보고 자료. 『2005년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6) 여기서의 교육참여자 연인원은 지방 경찰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참여자의 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실제보다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과 관련된 공식적인 협력체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는 '인권교육 연구회(검·경 분야)'이며 주요 사업 목적은 인권교육 지침서를 개발하는 것임. 회의주기는 월2회 운영되고 있음.

## 3) 인권교육 자체 네트워크 구축 실태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4) 인권교육 자체 프로그램 개발 실태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자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담당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외부기관에서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줄 것'을 요구하였음.

##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1) 인권교육과정 운영 실태

#### (1) 운영교육과정 운영 현황

- 경찰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다음 [표-31]과 같음. 여기서의 인권교육 현황은 경찰청 인권교육 기본계획에 의거

해 작성되었음.

- 경찰분야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범주는 직무 관련 분야, 인권일반 분야, 사회적 약자 분야, 여성 및 양성평등 분야 4개로 구성되어 있음.
- 직무 관련 분야의 인권교육 과목은 '경찰과 인권', '범죄피해자의 이해' 2개로 구성되어 있음. 직무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인권교육 과목은 '경찰과 인권' 과목임.
- 인권 일반 분야의 인권교육 과목은 '인권의 이해', '시민단체의 이해' 2개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적 약자 분야의 인권교육 과목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sup>27)</sup>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10시간으로 이론교육 3시간, 체험 교육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표-29]참조). 이론교육의 내용은 수화배우기이며, 체험 교육은 사회봉사활동임.

- 경찰 분야의 인권 교육은 각 직위별 단계별 인권 교육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앞서 [표-29]에서 확인 되듯이 경찰분야의 인권교육은 기본 4개 교과목을 최대과정으로해서 이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인권교육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간부, 일반 경찰급과의 교육수준과 내용에 대한 차별성이 사라질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경찰분야 인권교육 담당자는 '기능별, 단계별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경찰분야의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27) 이를 인권교육으로 볼 것인지는 판단의 여지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교육범주 설정 시 사회봉사 활동을 인권교육으로 설정하지 않았음.

[표-31] 경찰분야 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강사
직무 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경찰과 인권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7	외부
			경감·경정기본과정	5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7	외부
			간부후보생과정	7	
		중앙경찰학교	전·의경과정	7	외부
			신입교육과정	2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7	외부	
		전문과정	2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7	외부	
	범죄피해자의 이해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3	외부
			경감·경정기본과정	2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3	외부
			간부후보생과정	3	
		중앙경찰학교	신입교육과정	3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3	
전문과정	2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3	외부		
인권 일반 교육	인권의 이해	경찰대학	전문과정	2	내부
		지방경찰학교	실무과정	2	내부
		경찰서	직장교육훈련	1	내부
	시민단체 의 이해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3	외부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과정	3	외부
		중앙경찰학교	신입교육과정	3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4	외부
여성 및 양성 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전체 교육 기관	전 교육 과정	2	외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교육	장애인에 대한 이해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10	외부
			경감·경정 기본과정	7	
		경찰종합학교	간부후보생과정	24	외부
		중앙경찰학교	신입교육과정	7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7	외부		

- 경찰분야의 2006년도 인권교육 실적 목표는 아래 [표-32]에 나타나 있듯이 총 139개 과정, 교육참가 연인원은 37,141명<sup>28)</sup>(전체 경찰공무원의 규모는 101,219명임)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를 비율로 나타내면 36.6%임.

[표-32] 경찰분야 2006년도 인권교육 실적 목표

(단위: 과정수, 명)

합 계		경찰대학		경찰 종합학교		중앙 경찰학교		수사보안 연구소		지방 경찰학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과정 수	인원
139	37,141	14	2,385	43	14,130	45	14,664	24	3,970	13	1,992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자료(2006.2). 『경찰청 방문 결과 보고』.

## (2) 인권교육 방법 및 교육 강사의 활용 실태

- 경찰분야에서 인권교육 방법은 아래 [표-33]과 같이 이론 교육과 인권 감수성 증진 교육, 체험 교육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음.
  - ‘경찰과 인권’ 과목은 강의식 교육 2시간, 인권감수성 키우기 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권감수성 키우기 프로그램은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이나 서대문 형무소 체험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이해’ 과목은 강의식 교육 3시간, 사회봉사활동 체험 7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28) 경찰 공무원의 인권교육 참여자 연인원이 2005년 실적 293,992명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6년 계획 인원내 지방 경찰관서에서 시행되는 교육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임.

[표-33]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방법-경찰 대학 사례

교과목	교수방법	비고
범죄피해자의 이해	강 의	외부강사
시민단체의 이해	강 의	외부강사
장애인에 대한 이해	강의(3) 및 체험(7) *체험은 사회봉사활동	외부강사
경찰과 인권	1. 인권의 이해(2) 2. 인권감수성 키우기(5)	프로그램

자료: 경찰청. 2005. 『경찰 인권보호강화계획』.

### (3) 인권교육 강사의 활용 실태

- 인권교육 강사는 [표-32]와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부자원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 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표-31]에서는 '인권 이해'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외부 교육 강사 자원은 아래 [표-34]에 나와 있듯이 대학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인권시민단체, 타 공공기관 책임자 등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34] 경찰청의 인권교육 강사 운영 실태-서울 경찰청 사례

일자	시간	과 목	교 수
1일차	1	과정소개	인사교육
	2	인권의 이해	장복희 교수(가톨릭대 법정학부)
	2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김영란 소장(청소년보호위원회)
	2	인권침해 진정사례	양동훈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2일차	3	인권과 경찰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1	설문조사	-
	3	견학 - 국가인권위원회 - 서대문형무소	-

자료: 경찰청. 2005. 『경찰 인권보호강화계획』.

## 2) 인권교육 강사 양성 육성 사업 실태

- 타부문과 비교하여 경찰분야에서 인권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찰관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임.
  - 경찰청은 2005년도에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경찰 종합학교에 개설하고 1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70명의 강사를 육성하였음. 2006년에는 2주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 300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임.
  - 일명 '인권수호천사' 프로젝트로 1004명의 자체 인권강사를 연차적으로 육성할 계획임.
- 경찰분야의 인권강사 양성 과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 강사 양성 과정 개요
  - 경찰 인권 강사 양성과정 수행 기관: 경찰종합학교
  - 교육대상: 교육기관 및 경찰관서 인권강사 희망자
  - 프로그램 운영 시간: 38시간
  - 교육 수료자는 인권강사 pool 등재, 강사요원으로 관리
- 개설 과목 및 교수방법

[표-35] 경찰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개설과목 및 교수방법

교과목	시간	교수방법	비고
범죄피해자의 이해	2	강의	내부강사
인권의 이해	3	강의	
도입 프로그램의 이해	8	강의 및 실습	외부강사
인권 이해 프로그램	9	참여	
효과적인 강의기법	2	강의 및 실습	프로그램
효과적인 인권프로그램 토의	2	토론	
교안이해	4	강의 및 토론	
인권이해프로그램 실습	4		
교안 만들기		과제	
교안 발표 및 토론	4		

자료: 경찰청. 2005. 『경찰 인권보호강화계획』.

- 위에서 살펴본 경찰청 인권강사 양성 과정의 실태를 통해 경찰에서의 인권교육 인력 육성 사업은 '경찰과 인권' 교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관(강사) 육성에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3) 인권 관련 특별(감수성 증진 등) 프로그램 실태

-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은 '경찰과 인권' 교과목에 포함되어 이론강의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 여기서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의 시간은 총 7시간 중 5시간이 배정되어 있음.
  - 경찰분야의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실태는 아래 [표-36]과 같음.

[표-36] 경찰분야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교과목명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강사
경찰과 인권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경감·경정기본과정	5	외부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간부후보생과정	5	외부
	중앙경찰학교	전·의경과정 신입교육과정	5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전문과정	5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5	외부
	경찰서	직장교육훈련	3	내부

### 4) 자체 인권교육 자체 교재 활용 및 개발 실태

-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교육강사의 교수안을 취합하여 자료집 형태로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교재의 활용은 2005년도에 『인권길라잡이-경찰편』을 활용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기서 밝히는 내용은 실태조사 질문지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임.

##### **1) 인권교육 시행의 애로점**

###### **(1) 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

- 인권교육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① 조직내 인식 부족, ②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 ③ 적절한 강사진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데 어려움으로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의 부족, ② 인권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의 부재, ③ 조직 내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찰분야의 인권교육에 대하여 경찰 직종에 적합한 기능별, 단계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경찰청은 2005년 상반기 이후 인권교육 '인권수호위원회' 및 '시민인권보호단' 구성·운영, 경찰청에 인권상담전화 운영 등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증진을 위한 열의와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경찰청의 인권교육은 인권보호센터가 주축이 되어, 모든 경찰관으로 하여금 연간 10시간 이상 인권교육(2006년도 139개 인권과목, 연인원 37,141명) 이수하도록 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에 와 있다고 보여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직무 관련 교육, 인권일반 교육,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교육,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교육 등 4개 교육 범주로 운영되고 있음. 교과정은 인권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음. '경찰과 인권', '범죄피해자의 이해', '장애인의 이해', '시민단체의 이해' 4개로 기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음.
  - 경찰 분야의 인권교과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자체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판단됨. 필리핀의 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같이 체포, 구금 상황에서의 시민에 대한 인권, 평화 시기 뿐만 아니라 분쟁시기의 시민인권에 대한 보호, 법적·행정적 측면에서 시민에게 부여된 인권 등 다양한 직무 사례와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2005년 2월 경찰청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 인권교육 업무가 인권보호 센터로 통합되어 향후 일관성 있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경찰종합학교에 '인권강사양성과정'을 개설하여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00명의 인권강사를 배출하는 등 인권교육의 역량도 점진적으로 향상·축적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경찰분야의 인권교육이 보다 심화·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는 응답자가 경찰분야의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능별, 단계별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대상의 특성과 교육수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찰청 자체의 노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기관 등의 외부기관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음.
- 경찰분야의 인권교육은 도입기를 넘어 확대·발전과정에 들어서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의 질적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와있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 인권교육은 '프로그램의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경찰의 인권교육 상황에 대해 담당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외부기관에서 경찰 분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음.
- 따라서 경찰분야의 인권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인권교육을 지원하기위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관계전문가, 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 제4절 행정분야 인권교육 운영 실태

-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 행정분야는 경찰, 법무, 군대 등 타 공공 부문에서 인권교육 상황과 비교하면 가장 취약한 실정임. 행정분야 인권교육은 산하 교육기관인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1. 행정분야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 직무교육 기관과 대상

- 행정분야의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행정자치부이며 중앙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은 중앙공무원연수원, 5급이상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며, 5하급이하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기관은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임.
  - 행정분야의 교육대상의 규모 추정치는 총 910,452명<sup>29)</sup>임.
  - 참고로 행정분야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37]과 같음.

---

29) 행정부 공무원의 총수는 920,452명이며 국가 공무원은 571,982명이고 지방공무원은 338,470명임.

[표-37] 행정분야의 교육훈련 체계

구분	중앙공무원연수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교육대상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외국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5급이상), 지방의회의원, 외국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5급이하), 주민자치센터 위원, 산하단체 직원
교육추진 체계	수요조사(매년 12월경) →차기년도 교육계획 (안)수립→시행	수요조사(매년11,12월 경)→차기년도 교육계획 (안)수립→행정자치부협 의→시행	수요조사(매년7,8월경)→ 차기년도교육계획(안)수 립의→시행
2006년 교육훈련 계획	67개과정, 170회 (8,156명)	98개과정, 162회 (12,895명)	82과정, 154회 (10,670명)
프로그램 운영 방식	자체적으로 교과편성 강사는 외부에 의존	좌동	좌동
강사 pool	외부강사 DB관리	좌동	좌동
교육근거 법령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행정분야 교육기관 방문 결과 보고』.

## 2) 인권교육 관련 규정

-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규정이나 방침은 없음.

## 3) 인권교육 운영 체계

- 인권교육 운영 체계는 직무교육에 인권 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형태임. 이는 법무분야와 유사한 운영 체계이며, 경찰과 군대분야와는 차

이를 보이고 있음.

#### 4) 인권교육 전담부서

- 인권교육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음.

## 2. 인권교육 추진 기반조성 실태

### 1) 인권교육 자체 계획 및 실적

- 인권교육 자체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2007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분야에서 직무교육에 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방침으로 할 예정임.

###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 협력체계는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는 수준임. 이는 중앙이나 지방 모두 마찬가지 상황임.

### 3) 인권교육 자체 네트워크 구축 실태

- 자체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활동은 없음.
- 중앙공무원연수원은 직무교육을 위한 연계를 위해 양성평등교육원, 정보통신교육원 등과 같은 정부기관 산하 교육기관들과 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 정부 교육·훈련기관 네트워크는 향후 행정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기반이 될 수

도 있음.

###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행정분야 인권교육과정 운영 실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 행정분야는 직무특성상 인권교육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조직내 인식으로 인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임.

#### 1)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 (1) 중앙공무원연수원의 인권교육과정 운영실태

-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38]과 같음. 조사결과,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인권교육은 거의 없는 상황임. 응답 결과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 교육은 인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보다는 직무교육 중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1개의 교육범주, 1개의 교육과정, 교육참여자수 130명으로 파악되었음. 이를 전체 중앙부처공무원 571,982명 대비 비율로 살펴보면 거의 0.00%로 볼 수 있겠음.

[표-38] 중앙공무원연수원의 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여성 및 양성 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	전원	2	130명 (1회)	강남식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 교수
현황 집계	교육범주	교육과정수		교육 회수	교육 참여자수 (연인원)	교육강사수
	1개	1개		1회	130명	1명(외부)

(2)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 운영실태

-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39]와 같음. 조사결과 인권교육은 중앙공무원연수원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39]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의 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여성 및 양성 평등에 관한 인권 교육	여성문제	지방 3,4급	2	(28)명 (1)회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
	한국의 왜곡된 성실태와 선진성문화정착	지방 3,4급	2	(28)명 (1)회	김상원	한국성교육학회장
	양성페러다임의 변화와 성 새롭게 보기	지방 5,6,7급	2	(29)명 (1)회	김상원	강남대학교 교수
	양성평등과 여성정책	지방 5,6,7급	2	(27)명 (1)회	윤현덕	여성가족부 팀장
	전통생활문화와 양성평등	지방6급	3	(250)명 (5)회	진민자	청년여성문화원 이사장
	성별고정관념 성찰하기	지방 5,6,7급	2	(27)명 (1)회	김영한	별자리사회 심리극연구소장
현황 집계	교육범주	교육과정수	교육 회수	교육 참여자수 (연인원)	교육강사수	
	1개	6개	10회	389명	6명(외부)	

**(3)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 운영실태**

- 조사 응답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총 16개 중 12개 기관<sup>30)</sup>이었음. 응답하지 않은 기관은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음.

30)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음. 인천 지방공무원교육원,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충북 자치연수원, 대전 지방공무원교육원, 광주지방공무원교육원, 전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전북 지방공무원교육원,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 경북 지방공무원교육원,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제주 인력개발원 총 12개임.

- 12개 응답 지역 중 경기도와 대전을 제외하고 총10개 지역이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인권교육 현황은 다음 [표-40]과 같음.

[표-40]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인권교육 현황

구 분	교 육 범 주	교육대상	교육건수
인천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충남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6건
충북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6급이하	3건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5건
광주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8건
전남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전북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9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9건
경남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7건
경북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5건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4건
강원도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6급이하	2건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6급이하	1건
제주도	직무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6급이하	2건
현황 집계	교육범주		교육회수
	3개 (직무, 여성 및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 분야)		64회

## 2) 인권교육 강사 육성 사업 실태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모두 인권교육 강사 육성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3) 인권 관련 특별(감수성 증진 등) 프로그램 실태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모두 인권 관련 특별 프로그램은 없음.

## 4) 인권교육 자체 교재활용 및 개발 실태

-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6개 지방공무원교육원 모두 인권교육 교재 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기서 밝히는 내용은 실태조사 질문지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임.

### 1) 인권교육 시행의 애로점

#### (1) 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

- 응답자는 인권교육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① 예산·인력의 부족, ② 조직내 인식 부족, ③ 인권교육 시행 지침의 미비, ④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 ⑤ 적절한 강사진의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데 어려움으로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의 부족, ② 인권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의 부재, ③ 국가인권위원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재, ④ 조직내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인권교육의 문제점

- 행정분야 응답자들은 인권교육 시행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음.
  - 첫째, 행정분야 인권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의 부족
  - 둘째, 공무원 조직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적은 점
  - 셋째, 개념과 지식 제공을 하는 소양교육을 넘어 행정분야 직무에 적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함.

## 3) 인권교육 개선방안

- 조사결과 인권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음.
  - 첫째, 인권에 대해 관심이 미흡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중앙부처나 지방단위에서 실시하는 행사내용에 인권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국가차원에서 공무원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국가인권교육훈련센터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함.
  - 다섯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부 소속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는 유엔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의 주요 권고사항임. 따라서 공공분야 전 영역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공직자의 인권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요 대상집단(Target Group)으로 경찰, 군대, 법집행공무원을 우선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여 행정분야는 타 공공분야에 비해 지원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임. 그러나 공직자는 전체 국민과 관련된 법령·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 원칙으로 인권의 가치가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함. 또한 지방공무원들의 경우도 다수 인보호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바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행정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금번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타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분야의 실정에 맞는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제5절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실태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중심으로

- 사회복지분야의 직무나 인권 관련 교육은 타 공공분야와 다르게 사회복지 공공분야(보건복지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기관 협의회나 단체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예를 들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노인시설연합회, 장애인시설연합회 등과 같은 단체에서 자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 사회복지 관련 협회, 기관, 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시도하였으나 활동 실적을 거의 확인할 수 없었음.

## 1. 인권교육 추진 체계

### 1) 직무교육기관과 교육대상

- 직무교육을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교육기관은 (재)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며 주요 교육 대상 직군은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사회복지담당자,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임. 여기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규모는 총 44,332명<sup>31)</sup>임.
  - 교육 추진 절차: 교육 수요조사(4-5월경) → 차기년도 교육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협의 및 인가 → 시행

31)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총 44,332명으로 생활시설 종사자가 24,871명, 이용시설종사자가 19,461명임.

-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는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위탁교육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책임하에 실시되고 있음.

## 2) 인권교육 관련 규정

- 직무교육과 관련한 법적, 행정적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등이 있음. 그러나 인권 교육 관련 규정은 현재 없음.

## 3) 인권교육 운영 체계

- 인권교육은 법무·행정분야와 유사하게 직무교육과정에 인권교육 관련 과목을 두어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는 직무교육과정 안에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임.

## 4) 인권교육 전담부서

-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직무교육 체계 내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는 않음.

## 2. 인권교육 추진 기반조성 실태

### 1) 인권교육 자체 계획 및 실적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06년부터 직무교육 내에 인권교육을 반영을 하고 있으며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인권지도자 양성과정을 2박 3일 일정으로 2회 신설하였으며,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 직무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개설하였음. 2006년에는 민간을 대상으로 인권과목을 개설하였으나 향후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각 과정별 1-2시간 정도의 인권과목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 2006년에는 프로그램 개발, 인력 pool 구축 등 인권교육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보다 활성화할 계획임.
- 2006년부터 민간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인권교육 관련 흐름이 조성되고 있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세이브드칠런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200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단체,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할 계획임.

##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 협력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협조하는 수준임. 이는 행정분야와 유사한 상황임.

## 3) 인권교육 자체 네트워크 구축 실태

- 한국사회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한 공식적인 계획은 없으며, 자체 자문회의나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4) 인권교육 자체 프로그램 개발 실태

- 2006년까지는 없는 상황이며 2007년도 개발 예정임.

### 3. 인권교육과정 실태

- 인권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으며 공공분야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인권교육은 민간 사회복지 관련 협의회나 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1)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 교육 방법은 전체가 강의식 교육 과정으로 파악되었으며, 참여형이나 현장체험형 인권교육 방법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과정 현황은 다음 [표-41]과, [표-42]와 같으며, 파악된 인권교육 현황을 실적(양적)으로 재구성한 내용임.
  - 실태조사로 파악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인권교육은 총 4개 교육범주, 총 32개 인권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교육회수는 34회, 총 교육 참여자는 893명임. 교육과정에 참여한 강사는 총 17명이며 주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간부, 복지행정부서의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범주는 주로 사회권 분야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공공분야와 다르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과정이 전체 32개 교육 과정 중 대부분인 30개가 배정되어 있었음. 직무와 연관된 교육 범주에는 응답이 없었는데 이는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직무는 사회권 분야와 밀접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임. 인권일반에 관한 교육으로 '여성과 인권' 교과정 1개 과

정이 전체 6급이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개설되어 있는 인권교육과정을 분석하면 아동과 관련된 인권교육 과정이 16회로 가장 많으며, 인권교육의 관심 대상인 시설 인권 관련 교육과목은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1개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초보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표-41]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현황-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

교육 범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 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사회적 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 관한 교육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실태와 동기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2h	(16)명 (1)회	김민정	이주여성의 집 위험 국장
	결혼이민자대책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복지행정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2h	(14)명 (1)회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
	결혼이민자대책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보건복지행정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2h	(2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범정부적 결혼이민자	시도, 시군구 복지평가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2h	(72)명 (4)회	이성미	여성가족부 가족문화팀장

교육 범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사회적 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 관련 교육	결혼이주여성	자활후견기관의 1년 이상 경력자	2h	(2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결혼이주자가족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기획 업무담당 6-9급 공무원	2h	(37)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결혼이주자가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아동· 청소년담당자, 가족복지담당자, 중간관리자	2h	(4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여성 및 양성 평등에 관련 인권 교육	여성과 인권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2h	(16)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여성과 인권	보건복지행정 및 여성복지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2h	(2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사회적 약자에 관련 인권 교육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아동복지 담당 6-9급 공무원, 경찰청 여성실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3h	(36)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현황과 문제분석		2h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 권리정책		2h		박종하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사무관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아동복지 담당 6-9급 공무원, 경찰청 여성실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3h	(40)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현황과 문제분석		2h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 권리정책		2h		박종하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사무관

교육 법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 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 교육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3h	(38)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의 이해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2h	(16)명 (1)회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 약의 이해		2h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권리정 책		2h		곽수영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팀장
	아동권리모니터 링 기법과 실제		3h		황옥경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아동권리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2h		이은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권리증진 사례		2h		신혜령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아동권리의 이해와 프로그램 적용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2h	(43)명 (2)회
	아동권리의 이해와 프로그램 적용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2h	(40)명 (1)회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상담원	2h	(70)명 (2)회	김인숙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아동안전 권리정책		2h		박종하	복지부 아동안전권리팀 사무관

교육 법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 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 교육	아동의 안전과 권리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실무자	2h	(645)명 (7)회	정윤경	한국생활안전 연합 팀장
	노인인권의 이해	노인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시도 및 시군구의 6-9급 공무원	2h	(64)명 (2)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예방센 터 상담원	2h	(30)명 (1)회	이숙진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교수
	장애의 이해	시도, 시군구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2h	(59)명 (2)회	임성만	장봉혜림원 원장
	정신장애인과 인권	사회복귀시설 담당자	2h	(30)명 (1)회	김문근	서울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시설과 인권	시도, 시군구의 사회복지시설 지도 담당 6-9급 공무원	2h	(25)명 (1)회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표-42]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현황-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례

교육범주	총 교과정 수	교육대상	총 교육 참가 인원	총 교육 회수	강사 수
사회적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에 관한 교육	7개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복지행정직(중앙·지방)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자활후견기관의 1년 이상 경력자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아동·청소년담당자, 가족복지담당자	219명	10회	5명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인권교육	2개	복지행정직(중앙·지방) 관련 업무담당 5-9급 공무원	36명	2회	1명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	23개 (아동 분야 18개/ 노인 분야 2개/ 장애 분야 2개/ 시설 분야 1개)	-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담당자 -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 - 복지행정직(중앙·지방) 관련 업무 담당 5-9급 공무원 - 경찰청 여성실 가족폭력 및 아동학대 업무 담당 6-9급 공무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 -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 및 실무자 - 노인학대예방센터 상담원 - 사회복지시설 담당자 - 노인복지업무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 아동복지업무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담당 지방 6-9급 공무원	648명	34회	11명
총 교과정 현황 정리	32개	-	903명	46회	17명

## 2) 인권교육 강사 육성 사업 실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06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현황은 다음 [표-43]과 같음.
- ‘사회복지 인권 지도자 양성 과정’의 주요 교육 내용은 인권의 이해, 소수자의 인권 이해하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기간은 3일, 연간 2회, 교육 참여 인원은 기당 30명임.

[표-43] 사회복지분야의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과정명	교과목명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인원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사회복지 인권 지도자 과정	인권의 이해	사회복지시설의 중간관리자	2h	(60)명 (2)회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소수자의 인권이해		2h		조여울	일다 편집장
	나 만나기		2h		박현희	교사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 및 인권쟁점사례		2h		이명목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마음다지기		3h		케서린한	이대평생교육원 강사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2h		임성만	장봉혜림원장
	토의 및 발표		3h		이숙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3) 인권 관련 특별(감수성증진 등) 프로그램 실태

- 인권 감수성 증진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인권교육 특별 프로그램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4) 인권교육 교재 활용 및 개발 현황

- 인권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교재는 없는 상황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인권교재도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국가인권위원회 발행 인권교육 교재는 '자료를 받지 못해서'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여기서 밝히는 내용은 실태조사 질문지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임.

### 1) 인권교육 시행의 애로점

#### (1) 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

- 인권교육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으로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 경찰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데 어려움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의 부재'의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음.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분야 응답자들은 인권교육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였음.
  - 첫째,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둘째, 인권교육 강사 육성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 5. 인권교육 실태 분석 종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2006년부터 인권교육을 개설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작단계이며, 교육 참여자는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들, 보건복지분야 공무원, 민간 시설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시설장의 교육참여가 저조한 편임.
  - 보건복지분야 공무원의 경우도 행정분야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교육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느끼기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의 참여가 미진한 것으로 보임.
  - 민간 사회복지시설장들의 경우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시설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마스크에 의해 복지 시설 내 인권문제가 폭로 위주로 밝혀져 온 관계로 시설관계자들이 인권 문제에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이 같은 연유로 시설 관계자 상당수는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보다는 거부감이 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은 다수인 보호시설 분야 관계자(지자체 복지행정 공무원, 시설장 및 시설관리자 등)들이며,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음.

- 2006년부터 사회복지와 인권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 인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2007년부터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타 공공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관련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 점에서는 동일하나,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첫째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임. 최근 복지 개념은 전통적인 시혜적 복지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관계자들도 시설 이용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복지를 넘어 참여와 권리로서 복지로 인식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폐쇄성 극복과 이용자 인권 침해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로, 행정분야의 경우 여타 공공분야에 비해 인권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관심이 저조한 편임. 사회복지분야 행정공무원도 비슷한 상황임. 특히 지방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 인권교육의 개념, 필요성 등에 대한 마인드가 미흡함. 지방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특성상으로도 인권교육이 필요함. 따라서 다수인보호시설 수(이)용자들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담당공무원, 시설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임.

## 제6절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총괄 분석

[표-44]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총괄 분석표

구 분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 분야	
추진 체계	인권 교육 전담 부서	없음	인권팀 (국방부 법무관리관) - 전담인력 6명	인권보호센터	없음	없음
	교육 수행 기관	법무연수원	교육사령부 사관학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수사보안연구소 지방경찰학교	중앙교육연수원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교육원(16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대상	검사 출입국관리직 보호관찰직 소년보호직 교정직공무원	장교 부사관 군무원 장병	경찰 공무원 전경 의경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공무원 (5급이상) 지방공무원 (5급이하)	복지행정직 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사회복지시설장
	교육 대상 규모	25,445명 (검찰, 교정직, 출입국관리소직 포함)	601,000명 (육군, 해군, 공군)	101,219명	910,452명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포함)	44,332명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교육 규정	없음	장병기본권 보장교육지침 (2005. 4) 장병기본권 상담실 운영방침 (2006.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2006.1)	없음	없음
	인권 교육 운영 체계	-직무교육 체계 내에 운영하며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 없음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편성	직무교육 (통제과목) 내에 장병기본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직무교육 내에 독자적인 인권교육 과정 편성	직무교육내에 인권교육과정 일부 편성 -거의 없음	-직무교육 체계내에 운영하며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 없음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편성

구 분	범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추진 기반 조성	인권 교육 관련 계획	2006년 「범무연수원 변화전략계획」	장병기본권보장 교육지침 장병기본권 상담실 운영방침 비전캠프운영지침	「경찰 인권교육 강화 기본계획」 (2005.6)	없음	없음
	국가 인권 위원회 와의 관계	비정기적 협조체계 (업무 연락·협의)	- 인권팀과 공식적 협력체계 - 각 군 비정기적 협조체계	인권보호센터와 공식적 협력관계	비정기적 협조체계 (업무 연락·협의)	비정기적 협조체계 (업무 연락·협의)
	자체 네트 워크	없음	육군본부 인권개선위원회 (23명)	경찰 인권교육연구회	없음	없음
	프로 그램 개발 계획	없음	없음	계획은 있으나 외부에 의존	없음	없음
	연구 용역	없음	군대 내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없음	없음	없음
	국가 인권 위원회 주요 지원 계획	인권교육지침서 개발 (검찰, 교정분야)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군인권교육과정 군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지침서 개발	없음	사회복지인권교육 과정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 분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 복지 분야	
인권 교육 실태	기본 교육 과정	1주이상 교육 과정에 인권과목 개설	장병기본권 교육과정 - 양성과정 - 보수과정 - 부대훈련	경찰 인권교육과정 (최대 21시간 배정) - 경찰과 인권 - 범죄피해자의 이해 - 시민단체의 이해 - 장애인에 대한 이해	없음	없음
	교육 범주	4개	2개	3개 범주	1개범주	3개범주
		직무 관련 인권일반 여성 및 양성평등 사회적 소수자	직무 (장병기본권 교육) 여성 및 양성평등	직무 인권일반 여성 및 양성평등	여성 및 양성평등 ( 일부 지방교육원에서 사회적 약자 분야 교육 시행)	사회적 소수자 여성 및 양성평등 사회적 약자
	교육 과정수	15개 과정	7개 과정	4개 과정 (기본)	1개 과정 (여성 및 양성평등)	32개 과정
	총교육 참여자	6,374명	집계 불가능	293,992명 (2005년 실적)	거의 없음	893명
	교육 참여자 비율	43.04%	집계 불가능	290.45%	0%	2.01% <sup>32)</sup>
	강사 조달	내부+외부	주로 내부	내부+외부	외부	내부+외부
	교육 방법	강의식	강의식	강의식 현장 체험	강의식	강의식

32) 엄밀하지는 않지만 교육 참여자의 비율을 살펴보기위해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4,332명을 대비하여 통계치를 산출하였음.

구 분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 분야	
인권 교육 실태	인권강사육성사업	없음	유사사업으로 '상담관련 소집교육' (육군)	인권수호천사 프로젝트 -1004명 육성	없음	사회복지 인권 강사 육성 사업
	인권 감수성 프로그램	없음	유사사업으로 '비전캠프' (육군)	경찰과 인권 교과목에 통합 운영 (7시간 배정)	없음	없음
	자체 개발 인권 교재	없음	『장병기본권 지침서』 『군대와 기본권』 『병영생활 지침서』	없음	없음	없음
국가인 권위 교재 활용 실태	국가 인권위 교재	『인권 길라잡이 교정편』 『인권 길라잡이 검찰편』 교도관의 인권길찾기 (VIR)	없음	『인권 길라잡이 경찰편』 경찰인권교육방법	『행정과 인권』	없음
	활용 하고 있는 인권위 교재	『인권 길라잡이 교정』 -교정과 인권과목에서만 활용	해군에서 『별별 이야기』 『여섯개의 시선』	없음	없음	없음

- 지금까지 국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실태를 살펴보았음. 조사의 대상인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의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이후 지난 5년간 법무분야, 경찰분야 등 주로 법집행분야의 인권교육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왔으며, 2005년 이후 군대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법집행분야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각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기반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인권침해 가능성은 크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군대와 사회복지분야는 2006년에 인권교육이 도입되는 시점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총 5개의 분야 중 인권교육의 체계와 기반 구축, 인권교육 과정 운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분야는 경찰분야임.
  - 법무분야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는 못함. 군대분야는 2006년부터 장병기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교육역량 구축, 직위별 교육과정 개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향후 군대분야 인권교육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복지분야도 군대분야와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사회복지 직무교육 내에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사회적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행정분야의 경우는 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5개 분야 인권교육의 추진체계를 분석해보면, 경찰분야와 군대분야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경

찰청은 인권보호센터를 두고 있으며, 군대는 국방부법무관리관실 내에 인권팀을 구성하였음. 앞서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조직에서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가 해당부분의 인권교육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경찰, 군대와 같은 공공분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기반구축이나 교육 실행의 측면에서 보다 더 나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공공분야의 경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담부서가 있는 분야의 경우는 독자적인 인권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적 측면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인권교육 자체 프로그램 개발, 자체 네트워크 조직 등의 지표로 살펴보면, 앞서 분석한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경찰과 군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도 경찰과 군대분야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권교육 운영체계도 직무교육 체계 내에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자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경찰과 군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 행정 조직에서 자체 내에 법적 규정과 전담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해당 정책 추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군대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특히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찰에서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는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조직 내의 적극적 의지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인권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

해서는 각 공공분야 자체 내에서의 자구적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당 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 인권교육개선위원회'를 두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과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찰과 군대는 직무교육 내에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다만 군대는 장병기본권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타 부문의 경우는 직무교육 과정내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행정분야는 일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인권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각 공공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교육의 범주를 6개로 설정하여 실태를 조사하였음. 이러한 교육 범주로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회복지분야의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여성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권교육은 전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대다수 공공분야에서 강의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인권감수성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찰과 군의 육군임. 인권교육 기반 구축 측면에서 인권 강사(지도자) 육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찰분야와 사회복지분야임.

- 이상의 인권교육과정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음.
  - 첫째, 공공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2005년 이후 경찰과 검찰분야는 본격적으로 인권교육 시행 2년차를 맞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담당자는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함을 제시하였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 및 경찰분야 인권교육 지침서와 매뉴얼 개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됨. 이러한 외부 인권교육기관의 지원 노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음.
  - 둘째,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조사결과 인권의 대상자와 접하고 있는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교육과정, 교육참여도 면에서 타 직군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법무분야의 경우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에 시행되는 인권교육이 검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권교육이 직무와 연관된 교육 범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교육의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임.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별도의 국가 교육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직무와 연관된 인권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음.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에 배정된 시간이 대체로 1~2시간 사이로 매우 짧아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인권의 역사, 세계 인권선언, 인권의 법적 의미 등 인권일반에 대한 교육이 거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과정의 수준은 초보적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인권교육이 지식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에 대한 가치관, 태도, 기술을 확립하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으로 서 인권교육'을 넘어 '실천으로서 인권교육'으로 발전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대다수가 강의식의 주입식 교육임. 직무와 연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현장과 연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프로그램의 빈곤'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큼. 또한 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인권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한 상황은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함.
- 다섯째,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공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곳은 경찰 분야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 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수준임. 경찰의 인권교육 인력도 자체 교육 과정 중 '경찰과 인권' 교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국가 인권교육 인력의 '표준화된 인력 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의 주요 내용과 역할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IV. 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

- 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 초기 유럽권, 미주권, 아시아권 사례를 검토하였음.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자료 수집 과정에서 유럽권과 미주권은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유럽권의 인권교육은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미주권은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권과 미주권 국가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자체 직무 시스템에 인권적 기반이 갖춰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사하게 군부 정권에서 민간정권의 이양을 경험한 필리핀, 유럽 상임이사국 진출로 인권증진에 관심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일본, 국가 차원의 계급제도가 온존하는 인도 3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를 살펴보았음. 각 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내용은 공공분야 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령, 제도와 인권교육 정책, 모범적인 실천 프로그램 등임. 이를 통하여 한국의 인권교육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함의점을 도출하였음.

## 제1절 필리핀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

### 1. 필리핀의 인권 교육 정책

#### 1) 필리핀 정부의 인권 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 변화 과정

- 1986년 행정명령 20호 - 체포 및 수사 인력의 인권교육 의무화 법령
  - 군인, 경찰, 기타 체포 및 구금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교육에 인권을 필수로 포함시키도록 했음.
  
- 행정명령 27호 - 인권 존중 극대화를 위한 교육 규정
  - 교육부는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인권 학습을 포함시킬 것
  - 정부 공무원 선발시험에 인권 지식에 관한 항목들을 포함시킬 것
  - 인권교육 교재는 인권 원칙과 관련법을 강조할 것
  - 필리핀 정부가 비준했거나 당사국인 국제 인권 문서를 교육에 포함시킬 것
  
- 1987년 새 헌법 - 14조 3항에 인권 교육을 명시
  -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헌법에 대한 학습을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기관은 ... 인권존중을 가르쳐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교육부 시행령 61조에서는 '전 수준의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존중과 그에 따른 책임 수반에 관한 연구가 포함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92년 - 인권교육과정개발 사업수행(인권위 / 교육문화체육부 공동)
  - 인권침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집단으로 경찰과 군대에 집

중하는 즉각적인 인권교육 확대

- 장기적인 투자로서 공교육 내에 인권교육의 정착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 1994년 국가인권정책조정실(National Inter-Agency Chamber of Human Rights) 창설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교정국, 군대들이 협력하여 인권연수체계를 공식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무부, 법무부 간의 약정각서(MOA) 체결

○ 1995년 라모스 대통령 시기 대통령령 259호 - '법집행인, 경찰, 군대, 교도관의 인권교육 훈련'

-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훈련 및 재훈련에 인권교육 포함
- 신규임용, 승진, 전보에 있어 인권과정 연수를 요건으로 삼임

○ 1997년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 수립

- Phillippines Human Rights Education Decade(1998-2007)
- UN의 권고사항 이행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사업'
-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각 부문 대표들이 참가하여 '인권교육전국협의회'를 결성하고 여기에서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수립

## 2.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소개

- Phillippines Human Rights Education Decade(1998-2007)

### 1) 비전

- '우리는 사회정의, 민주주의, 참여, 성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여성, 평화, 인간존엄성 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게하는 인권지식, 인권가치, 인권기법을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지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전망한다. 우리는 또 우리사회의 여러 부문들, 특히 소외집단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억압과 지배가 사라진 그런 사회를 전망한다'

### 2) 사명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전 부문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함으로써 인권문화를 창달한다'

### 3) 목표

- 일반적 목표
  -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전 부문에서 조직적이고 기능적이며 효과적이고 적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구체적 목표
  - 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필요한 부문에 인권교육을 제도화
  - 인권교육 10년 사업에 대한 정보 보급 계획 수립
  - 각 지방에 지방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부문에 훈련, 교육과

- 정, 연구, 교육자료, 교육방법,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제공
-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각 지방의 발전계획에 통합화
  - 정부, NGO, 지역 및 국제적 출처에서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자원 확보
  - 정보와 자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 교육 실천가와 인권교육 관련 기구의 네트워크 구축
  -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 4) 인권교육 10년 이행을 위한 제언

- 인권교육 10년 실행계획 집행을 위한 부처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시행령 제정
- 1997-2006년 필리핀 인권교육 10년으로 선포
- 인권교육 10년 실행계획 집행에 있어 인권위원회가 선도적 역할 담당
- 각 지방별로 부처간 특별추진단 구성
- 관련 기관과 약정서 체결
- 전국인권교육자협회 결성

#### 5) 인권교육이 필요한 우선 집단

- 여성, 노인, 청소년, 어린이
- 대학, 기초교육
- 농민, 노동자, 외국인 계약 노동자, 도시빈민
- 언론, 전문직
- 원주민, 회교도
- 경찰, 군인, 법, 집행인

- 수형인, 수감자, 난민
- 장애인

### 3.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관련 활동

-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 관련하여 1) 인권 신장을 위해 정부기관과 NGO들이 이룩한 성과를 기록 정리 2) 정보, 교육, 훈련 사업 수행 3) 인권 참고자료를 각 훈련 사업에 제공 4) 정부 부처에 인권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교육연구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MOA(합의각서)를 채택하여 '초등, 중등단계의 인권교육 강의 표본 개발을 위한 집필 워크숍' 등 공동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경찰, 군대 및 기타 법률집행공무원들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국방부, 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 정보통신국에서는 홈페이지, 사이버교육(E-learning), 사이버도서관(E-Library), 포탈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아태인권연구소에서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인권강사를 위한 훈련, 연구지원, Fellowship 프로그램, 인권강의 운영, 조사관을 위한 인권조사 교육(변호사, 조사관, 의료조사관), 발전 관련 훈련, 아동·여성·원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관련 특수 훈련,

아태지역인권위원회의 간부 및 직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교육 강사와 트레이너(Trainer) 훈련 시행 현황은 아래와 같음.<sup>33)</sup>
  - 2004년 2월. 제V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Legaspi city.
  - 2004년 3월. 제VII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Cebu city.
  - 2004년 3월. 제II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Pampanga city.
  - 2004년 4월. 제XI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Davao city.
  - 2004년 5월. 제X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Cotabato city.
  - 2004년 6월. 제IX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Zamboanga city.
  - 2004년 7월. 제VI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Bacolod city.
  - 2004년 7월. 제I 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Palawan city.
  - 2004년 8월. NCR. Olongapo city.
  - 2004년 8월. 제III지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시행. Olongapo city.

#### 4. 경찰, 군대에서의 인권교육

##### 1) 추진 개요

-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는 1989년 이후 국방부, 지방정부, 법무부 협조하에 경찰과 군대의 모든 교육·훈련 기구 안에 인권교육프로그램을 통합 시켰음.
- 인권교육에 대한 통일표준안을 안전히 갖추기 위해서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음. 이러한 커리큘럼은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교육·훈련 기구에 통합됐음.

---

33)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hr.gov.ph>)에서 참조함.

## 2) 경찰, 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HRETP)

### (1) 프로그램 구성 - 2개 단계, 11개 코스로 구성

- 제1단계: 가치에 관한 교육 - 4개의 코스
- 제2단계: 이론에 관한 교육 - 7개의 코스

### (2) 프로그램 개요

- 필리핀의 대표적 인권교육 실천사례 - 경찰, 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HRETP)<sup>34)</sup> 부분을 참조할 것.

### (3) 프로그램의 특성

- 각 단계는 수 개의 코스로 구성
- 각 코스는 수 개의 하위 주제로 구성
- 각 주제의 요소는 수개의 교육 활동들로 구성
- 제1단계는 모든 가치, 태도에 관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하며,
- 제2단계는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 3) 주요 특징

- 공무원들의 연수 교육에 인권 교육 통합화

---

34)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 등
  - 정부 부처는 교육을 위한 교통과 업무시간 내 교육시간 확대 배정 조치
  
- 필리핀 사범대학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독일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아 교재 개발과 교육 활동 전개

## 5. 필리핀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시사점

- 인권교육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제도적 토대 마련
  - 헌법상의 인권교육 조항 명시, 행정명령과 대통령령을 통한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처간 협력 체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공동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가인권정책조정실(National Inter-Agency Chamber of Human Rights)을 창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교정국, 군대들이 협력하여 인권연수체계를 공식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무부, 법무부 간의 약정 각서 체결
  
- 정부, 시민사회 각 부문, NGO가 참여하여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 수립
  - 민주화운동세력, 인권운동단체, 인권전문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
  - 아키노재단, 필리핀 사범대학,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지부
  
-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의 강조점

- 인권교육의 지속성을 위한 정부 부처간의 협력과 그 협력의 의무화
  - 법집행 기관의 근본적 변화
  - 정부와 훈련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의 지역별 설립 강조
-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아태인권연구소'라는 인권교육 훈련센터를 구축하여 교육인력 양성 활동
    - 지역, 권역별 인권교육 강사와 트레이너(Trainer) 훈련 시행
  - 경찰, 군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 과정 2단계 11개 코스로 구성
    - 교육시간: 66시간 10분

## 6. 필리핀의 대표적 인권교육 실천사례

-경찰, 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HRETP)<sup>35)</sup>

### 1) 프로그램 개요

#### (1) 목적

- 경찰과 군대 내의 인권을 발전시키고 증진시키기 위함.

#### (2) 목표

- 첫째, 인권에 대한 존엄성 발전

---

35)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 둘째, 인권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획득
  - 평화와 분쟁 시기 모두 경찰과 군인으로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
  -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인 인권에 대한 이행 절차에 대해 이해하며,
  - 일반 국민과 사회의 특별한 섹터들과 집단들에 대해 필리핀 국가 제도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권리의 이해
  
- 셋째, 인권 옹호를 위한 행동계획 준비

## 2) 프로그램 구성

[표-45] 경찰, 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HRETP)

단계	코스	교육시간
가치교육	1) 자신에 대한 가치	7시간 30분
	2) 타인에 대한 가치	4시간 30분
	3) 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가치	3시간
	4) 국가에 대한 가치	2시간 30분
	교육시간 소계	17시간 30분
이론 교육	5)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	5시간 30분
	6) 헌법에서의 인권	3시간 30분
	7) 평화 시기에 너와 다른 사람의 인권	9시간 55분
	8) 분쟁 시기에 너와 다른 사람의 인권	8시간 30분
	9) 유치장,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	5시간 45분
	10) 필리핀 사법행정체계 하에서 인권증진과 보호	9시간
	11) 인권, 법집행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6시간 30분
	교육시간 소계	48시간 40분
총 교육시간	66시간 10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 3) 가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1)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인권 증진을 위한 서약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2) 목표

- 자신, 타인들,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의 핵심가치, 인간존엄성, 자유, 정의, 평화, 평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그들의 개인적인 행동계획을 준비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3) 가치교육 단계의 4가지 교육코스

- 제1코스: 자신의 가치들 (Sarili Part)
- 제2코스: 타인의 가치들 (Kapwa Part)
- 제3코스: 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가치들 (Samahan Part)
- 제4코스: 국가에 대한 가치들 (Kabuuan Part)

#### (4) 각 코스별 교육 프로그램 소개

##### ① 제1코스: 자신의 가치들 (Sarili Part)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인권 옹호자가 되기 위해 그들의 지속적인 열망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 행동계획'을 세워야 함.

○ 목표

-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법집행 또는 국가안전행정가로서의 역할과 인권 옹호자, 보호자의 역할을 비교하여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적 가치 체계 하에 인권 가치를 놓을 수 있어야 함.
- 인권 가치를 지지하기 위한 자신의 개인적 결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46] 필리핀 HRETP의 제1코스-자신의 가치들 (Sarili Part)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자신의 가치들 (Sarili Part)	1) 자기 인식하기	1시간
	2) 자아 만족의 가치	1시간
	3) 인권 옹호자의 측면 : 인권 증진자의 필요조건	1시간
	4) 인권 보호자, 옹호자로서 법집행자의 역할	1시간
	5) 인권 보호자, 옹호자로서 국가안전공무원으로서의 역할	1시간
	6) 필리핀 국가 가치 체계와 인권 가치	1시간 30분
	7) 가치형성	1시간
	교육시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pine Press.

② 제2코스: 타인의 가치들 (Kapwa Part)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인간 존엄성의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타인의 가치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타인들과의 차이와 공통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 타인들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를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47] 필리핀 HRETP의 제2코스-타인의 가치들 (Kapwa Part)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타인의 가치들 (Kapwa Part)	1) 타인에 대한 책임성	1시간
	2)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식	1시간
	3) '네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말씀	30분
	4) 나눔	1시간
	5) 타인에 대한 이해	1시간
	교육시간	4시간 30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③ 제3코스: 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가치들 (Samahan Part)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제도적인 가치 체계안에서 인권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경찰·군인의 가치들을 인권의 가치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의 가치를 경찰·군대 기구에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적인 인권의 가치와 조직내 제도적인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48] 필리핀 HRETP의 제3코스-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가치들 (Samahan Part)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지역사회와 조직에 대한 가치들 (Samahan Part)	1) 경찰·군대의 가치들과 인권 가치들	1시간 30분
	2) 경찰·군대의 서비스와 조화시키기	1시간 30분
	교육시간	3시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pine Press.

④ 제4코스: 국가에 대한 가치들 (Kabuuan Part)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가치들과 직위의 가치를 절충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직위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적 가치와 직위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49] 필리핀 HRETP의 제4코스-국가에 대한 가치들(Kabuuan Part)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국가에 대한 가치들 (Kabuuan Part)	1) 직위의 가치들: 1987년 헌법에서의 원칙적 선언과 직위와 관련된 정책	30분
	2) 필리핀의 시민들은 누구인가?	30분
	3) 필리핀 국민들의 의무와 권리	30분
	4) 연대의 가치들	1시간
	교육시간	2시간 30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pine Press.

## 7. 이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 1)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일반적 이해를 요약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함.

### 2) 목표

- 인권에 대한 정의, 핵심가치, 원칙, 기초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필리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설명하고, 인권에 대한 헌법적 이행 사항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일반 국민, 노동자, 빈곤계층, 사회의 특별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신의

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함.

- 전쟁, 무장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와 적과 반역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비교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유치장 또는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구들과의 특별 관계 조항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에 관한 지방정부의 법들을 강제하는 방법들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비준하였거나 협약한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규약들과 협정들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3) 이론교육 단계의 7가지 교육코스

- 제5코스 -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
- 제6코스 - 헌법에서의 인권
- 제7코스 - 평화 시기에 너와 다른 사람의 인권
- 제8코스 - 분쟁 시기에 너와 다른 사람의 인권
- 제9코스 - 유치장,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의 권리와 보호
- 제10코스 - 필리핀 사법행정체계 하에서 인권증진과 보호
- 제11코스 - 인권, 법집행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 4) 각 코스별 교육 프로그램 소개

#### (1) 제5코스: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인권의 정의, 핵심가치, 원칙, 기초,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인권의 의미, 핵심가치, 인권침해의 형태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에 대한 철학적, 종교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법적 토대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에 대한 제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인권과 성장(발전)·평화를 관련시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50] 필리핀 HRETP의 제5코스-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인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인권과 인권의 핵심 가치의 정의	30분
	2) 인권의 기본 토대 ○ 인권의 철학적 토대(30분) ○ 인권의 성경적, 종교적 토대(30분) ○ 인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토대(1시간) ○ 인권의 법적 토대(1시간)	3시간
	3) 인권의 원리와 원칙들	30분
	4) 인권, 발전, 평화, 평등 사이의 관계	30분
	5) 인권침해들의 형태와 유형: 가해자들과 결과	1시간
	교육시간	5시간 30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2) 제6코스: 헌법에서의 권리**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필리핀 법에 규정된 권리들과 인권에 대한 다른 헌

법적인 규정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일반국민, 사회의 특별한 집단들에 대해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헌법 안에 사회정의에 관한 규정과 인권을 실용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에 대한 헌법적 이행 규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51] 필리핀 HRETP의 제6코스-헌법에서의 권리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헌법에서의 권리	1) 필리핀 법 하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	30분
	2) 필리핀 법 하에서 사회정의	30분
	3) 필리핀 법 하에서 사회특별집단에 대한 권리	30분
	4) 3개의 필리핀 헌법 하에서 인권 비교 : 1935, 1973, 1986년 헌법 비교	1시간
	5)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인권 옹호	1시간
	교육시간	3시간 30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3) 제7코스: 평화시기에 당신과 타인의 권리**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평화시기에 경찰·군인으로서의 권리와 타인의 권

리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의무와 필리핀 보통 국민으로서 의무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일반국민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군인으로서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규정할 수 있어야 함.
- 일반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52] 필리핀 HRETP의 제7코스-평화시기에 당신과 타인의 권리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평화시기에 당신과 타인의 권리	1) 국민의 시민권과 정치권 ○ 재산이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공정한 보상에 대한 절차와 권리: 재산의 박탈에 대항할 재산권(5분) ○ 자유권(15분) ○ 권리구제 절차(10분) ○ 법에 대한 평등적 보호권(10분) ○ 비합리적인 조사와 압류에 대항하여 사람, 집, 문서,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할 권리(15분) ○ 유치장, 독방에 감금되는 것에 대항할 권리와 비밀로부터의 자유: 법령 124-134, 법령 235, 245, 268, 269(30분)	8시간 25분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평화시기에 당신과 타인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인의 권리 1(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죄추정의 원칙</li> <li>- 조사 중일 때 죄의 본질과 원인을 알릴 권리와 침묵할 권리</li> <li>- 재판에서 의사 표현할 권리를 포함한 들을 수 있는 권리, 조언받을 수 있는 권리, 대면할 권리와 증인의 참석을 보장할 권리</li> </ul> </li> <li>○ 피고인의 권리 2(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석받을 권리</li> <li>- 모든 사법적, 행정적 신병 인도 전에 그들의 원인에 대해 빠르게 처리할 권리</li> <li>- 이중재판회부를 포함한 법정에 접근할 권리</li> </ul> </li> <li>○ 피고인의 권리 3(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인으로서 증언할 권리</li> <li>- 스스로 죄를 씌우지 않을 권리</li> <li>- 헌법적 권리를 제공받을 권리</li> <li>- 항의할 권리</li> </ul> </li> <li>○ 과중한 벌금과 잔혹하고, 혼하지 않은 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항할 권리(10분)</li> <li>○ 비자발적 노역에 대항할 권리(10분)</li> <li>○ 개인 의사소통에 대한 권리: 서신왕래(10분)</li> <li>○ 대중적인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10분)</li> <li>○ 강제적 계약에 대한 보호(10분)</li> <li>○ 회합에 대한 권리, 법에 접촉하지 않을 범위하에 특정목적에 위해 조직, 회합, 모임을 만들 권리(10분)</li> <li>○ 언론, 표현, 출판의 자유(10분)</li> <li>○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권리(10분)</li> <li>○ 민원 사항에 대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10분)</li> <li>○ 투표할 권리-참정권(10분)</li> <li>○ 종교의 자유(10분)</li> <li>○ 거주, 이사, 여행에 대한 자유(10분)</li> </ul>	8시간 25분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평화시기에 당신과 타인의 권리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자기결정권(15분) ○ 존중받을 권리(15분) ○ 정체성의 권리(10분) ○ 최소생활기준으로 살수 있을 권리(10분) ○ 독립적으로 사회문화적, 경제적 발전을 받을 권 리(15분) ○ 사상의 자유, 종교, 양심의 자유(15분) ○ 기타 (10분)	1시간 30분
	교육시간	9시간 55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 (4) 제8코스: 분쟁 시기에 당신과 타인의 권리

#####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무장한 분쟁시기에 경찰·군인으로서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비교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함.

##### ○ 목표

- 국제적인 인권법의 원칙에 대해 토론해야 함.
- 국내와 국제적인 무장 분쟁 상황에서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해 차이를 알 수 있어야 함.
- 필리핀 공권력, 국가 경찰청, 필리핀 경찰 보안대 안에 국제적인 인권법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53] 필리핀 HRETP의 제8코스-분쟁 상황에서 당신과 타인의 권리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분쟁 상황에서 당신과 타인의 권리	1) 국제 인권법 소개	1시간
	2) 전쟁에 대한 법	1시간
	3) 무장 분쟁 시기에 기본적 권리와 자유	1시간
	4) 전쟁에 적용된 국제적인 인권법 원칙들	30분
	5) 분쟁의 희생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국제 인 권 원칙	30분
	6) 제네파(Geneva)법과 인권법에 적용된 국제 인권법의 원칙들	30분
	7) 국제인권법과 필리핀의 공권력: 규정과 절차	1시간
	8) 프로토콜 II와 필리핀의 공권력: 필리핀 경찰 보안대, 국가경찰청	2시간
		교육시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ip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pine Press.

**(5) 제9코스: 유치장, 감옥에 구금된 사람에 대한 권리와 보호**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기구 규정에 따라 구치소나 감옥에 구금된 사  
람들의 권리를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범죄자, 용의자의 권리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함.

- 죄인의 대우에 대한 최저표준규정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함.
- 법집행자에 대한 국제실행규정에 대한 각각의 사항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사람들의 고문, 잔혹한 처사, 비인간적인 대우와 처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54] 필리핀 HRETP의 제9코스-유치장, 감옥에 구금된 사람에 대한 권리와 보호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유치장, 감옥에 구금된 사람에 대한 권리와 보호	1) 죄인의 대우에 대한 최저표준규정들	1시간
	2) 고문, 잔혹행위, 비인간적 대우와 처벌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선언)	1시간
	3)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실행 규정	15분
	4) 의료적 윤리 원칙	1시간
	5) 고문, 잔혹행위, 비인간적 대우와 처벌에 대항할 수 있는 협약	1시간
	6) 범죄자의 권리	30분
	7) 전과자의 권리	30분
	8) 용의자의 권리	30분
		교육시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pine Press.

**(6) 제10코스: 필리핀 형사재판체계 하에서 인권증진과 보호**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형사재판체계와 절차에 대해 자기 스스로 리마인드 매뉴얼(Remind Manual)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필리핀 형사재판 체계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정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5개 부문(법집행자, 경찰, 법원, 지방정부, 교정) 각각에 인권법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함.
- 인권침해를 경찰·군대에서 피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55] 필리핀 HRETP의 제10코스-필리핀 형사 재판 체계 하에서 인권보호와 증진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필리핀 형사 재판 체계 하에서 인권보호와 증진	1) 인권보호, 증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규정	30분
	2)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30분
	3) 사법행정의 체계(30분) - 사법재판체계 하에서 경찰력의 집행(30분) - 체포, 수사, 압류에 대한 법들(1시간) - 구금, 자백을 보호하기 위한 죄인 처분에 관한 법 (1시간) - 면책에 대한 법(1시간) -수사에서의 효과적인 전략에 관한 것(1시간)	4시간
	4) 인권과 법칙 체계(30분) - 개정된 벌칙 규정(30분) - 공화국 법령(ART) 857(30분) - 개정된 행정적 규정(30분) - 죄인에 대한 대우 규정(1시간) - 교도소에서의 절차에 대한 일반적 규칙, 정책, 실행 -MOJ 매뉴얼(1시간)	4시간
	교육시간	9시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pines and beyond』 . University of the Phillippine Press.

**(7) 제11코스: 인권, 법집행기관과 국가안전보장기구**

○ 목적

- 교육 참가자들은 자신의 법집행기관과 국가안전보장행정기구의 기능과 비교하여 인권을 보호하는 일과 필리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목표

-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함.
- 법집행과 인권법을 비교하여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국가안보의 개념과 인권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함.
- 필리핀이 비준했거나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동의, 협약, 협정 그리고 선언의 이행 방법에 대해 일일이 열거할 수 있어야 함.
- 법집행자들과 국가안전보장행정 공무원들은 필리핀 국민과 그들과 문화적 공유를 하는 집단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세부 주제들

[표-56] 필리핀 HRETP의 제11코스-인권, 법집행기관, 국가안전보장기구

단계	세부 주제	교육시간
인권, 법집행기관, 국가안전보장 기구	1) 법 집행자란 무엇인가	1시간 30분
	2) 인권법과 법집행	1시간 30분
	3) 인권과 국가안전보장: 존재하는 규정과 절차들	1시간 30분
	4) 필리핀이 비준하고 협약한 국제인권기구의 준수사항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이행사항	2시간
	교육시간	6시간 30분

자료: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ippines and beyond』.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 제2절 일본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국인 일본은 국제적 인권 흐름에 부응하고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외부적 자극과 압력으로 인하여 1990년대 이후 인권과 관련된 정책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함.
- 일본의 인권과 인권교육 정책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범무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른 나라들은 인권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비하여 일본은 ‘인권교육·계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국가 인권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2000년 12월에 제정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음.

### 1. 일본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sup>36)</sup> 변화과정

- 1998년 ‘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 통과
  - 1990년대 무라야마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사회당 연립 내각이 들어섰을 때 오랜 일본의 민족 차별문제였던 아이누 민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의 인종차별 조약을 준수하는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처음 시도하였음.
  -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인권 NGO들의 힘이 성장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되게 됨.

36) 주요 내용은 국가인권위 소장 자료집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 일본편』, 성공회 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3.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 아우내재단 미래문화연구원. 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 연구과제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1995년 12월 15일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본부' 설치
  - 1994년 유엔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이 선포되자 일본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여 1995년 12월 내각 결정에 의해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본부'를 설치함.
  
- 1996년 12월 '인권옹호시책추진법'을 5년간 한시 입법<sup>37)</sup>으로 제정
  -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시책 등을 추진하는 데 국가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함. 또한 이들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1997년 3월 법무성에 인권옹호추진심의회를 설치함.
  
- 1997년 7월 4일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국가행동계획안' 공포
  - 이 계획에 1998년에 '정부 관계부처 연락회의'가 구성되어 각 부처와 긴밀한 연계, 협력하여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해마다 실행 상황을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보완 방안을 설정하였음.
  - 또한 전국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는 각각의 프로그램과 체제를 개발하여 35개 지방자치단체인 현(縣)에서 인권교육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있는데 2003년까지 26개 현(縣)에서 현(縣) 차원의 인권교육계획과 추진기구를 수립하였음. 이 중에서 1996년에 오사카부가 가장 앞서서 기구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00년 12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

37) 2002년 3월 인권옹호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야당, 언론, 일변련, 시민단체, 민간 NGO 등의 강한 반발로 국회 심의가 보류되었음. 2003년 10월 중위원 해산에 따라 인권옹호법(안)은 자동 폐안되었다가 2005년 여야 간의 합의로 인권옹호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임.

## 2. 일본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과 추진기구

### 1)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

- 2000년 12월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 일본 정부는 2000년 12월에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였음. 2002년 3월 15일에 '인권교육·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채택하였음.
- 법령은 인권교육의 정의에 관하여 제2조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존중의 정신을 육성하는 교육활동으로 인권의식 계발을 인권존중의 사상을 대중화하는 홍보활동'으로 규정하였음.
  - 이에 대해 인권교육을 낮은 수준의 가치 교육으로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도 함(국가인권위원회, 2003).

### 2)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본부의 활동

#### (1) 관계부처 연락회의

- 인권교육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본부의 각 부분부장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의 연락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인권교육 행동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조치 등을 마련하였음. 특히 인권문제와 관계가 깊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연수와 정부 각 부문의 관계 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를 충실히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하였음.

## (2)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대상

- 일본에 있어서 인권 교육은 '모든 장에서의 인권교육 추진'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 각 개인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학교교육, 지역사회교육, 기업과 일반사회교육,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교육 대상임.
- 인권에 영향을 주기 쉽고 인권문제와 관계 깊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권에 관한 올바른 시각과 태도를 갖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 방침임. 인권교육의 내용은 유엔 등 국제법에서 정한 인권의 개념과 인권의 필요성, 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한 것이며, 이를 위한 각종 연수 등이 실시되고 있음.

## (3) 일본 인권교육의 중요 과제로 선정된 집단

- 일본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행동계획에서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중요집단으로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에이즈감염자, 외국인, 만기출소자 등을 설정하였음. 또한 일본사회에서 오랜 차별문제로 고통을 당해왔던 부락민(部落民)과 아이누족 등을 포함하였음.
  - 이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각 영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시키고 인권침해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일본에서는 공공분야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부락민(部落民)과 재일 외국인에 관한 인권교육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실시하고 있음. 각 대상에 대한 주요 활동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부락민(部落民)

- 부락민은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차별당해 온 사람들임. 일본에서는 부락민 문제를 동화문제(同化問題)라고도 함. 부락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동화교육(同化教育)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 왔음.
- 추진본부는 동화교육의 성과 등을 기반으로 부락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발전적으로 재구축하였음. 이를 위해 각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부락민 인권존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부락민 거주 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시킨 지역사회 전체의 복지향상과 인권 계발이라는 주민 교류 관점에서 '인보관'이라는 부락민 복지관을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설정하였음.

② 아이누족<sup>38)</sup>

- 학교교육에서 아이누족의 인권에 관한 교육과 교원연수의 시행, 아이누 문화에 관한 교육·연구 격려, 아이누족 인권보호와 생활개선, 아이누족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상담체제 정비 등을 과제로 설정하였음.

---

38) 아이누족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쿠릴열도·사할린섬에 거주하는 민족임. 인종학상으로는 유럽 인종의 한 분파에 몽골로이드의 피가 섞여 있으며 언어는 형태학상으로 포합어(抱合語)에 속함. 피부는 누른빛이 적고 검은빛이 많은 편이며 눈은 쌍꺼풀에 우묵하고 광대뼈가 나왔으며 귀는 비교적 큼. 머리카락은 검고 파상(波狀) 또는 구상(鉤狀)이며 남녀 모두 털이 많아 최다모(最多毛) 인종에 속한다. 또 남녀가 귀고리를 달고 있으며 특히 여자는 문신(文身)을 하고, 의복은 난티나무 껍질의 섬유로 짠 옷감을 사용함. 오늘날에는 생활양식이 수렵에서 농업으로 바뀌었으며 일본인과의 혼혈로 고유의 습속과 인종적 특징이 사라져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추정인구는 혼혈을 포함하여 약 1만 5000~1만 9000명이었는데, 현재는 거의 혼혈이고 순종은 수백 명 정도임(네이버 백과사전).

###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활동 - 오사카를 중심으로

-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인권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여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극했다는 특성을 가짐. 즉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오사카부 등 지역차원에서 인권교육이 더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음(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2001).
-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많은 지방공공단체들이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에 관계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본부를 만들어 각 지역에 맞는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 8월까지 35개 도부현에 인권교육을 위한 행정조직이 설치되었으며, 더 작은 행정 단위인 시정촌(市町村)에도 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지역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여기서는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활동 실태를 정리하였음.

#### 1) 오사카부(府)의 인권교육 활동

##### (1) 오사카부 인권교육 활동의 배경

- 오사카부는 오사카시, 동(東)오사카시, 교오토오, 나라, 효고현(懸) 등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최근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는 지역임. 역사적으로는 한국인 차별문제를 비롯한 부락민, 장애인, 여성의 차별문제에 관한 철폐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던 지역임.

## (2) 오사카부의 인권교육 정책 제도화 과정

- 오사카부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 위에서 인권의식의 확산, 다문화 공생사회 실현에 대한 시민적 공감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에 나서서 일본의 어느 도시보다도 빠른 시기인 1996년 2월에 오사카부 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본부'를 설치하였음.
- 또한 1997년 3월 25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오사카부 10년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오사카부 소속의 모든 관청이 행동계획에 기반하여 인권교육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였음.
- 1998년에는 '오사카부 인권존중사회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음.

## (3)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오사카부 행동계획'의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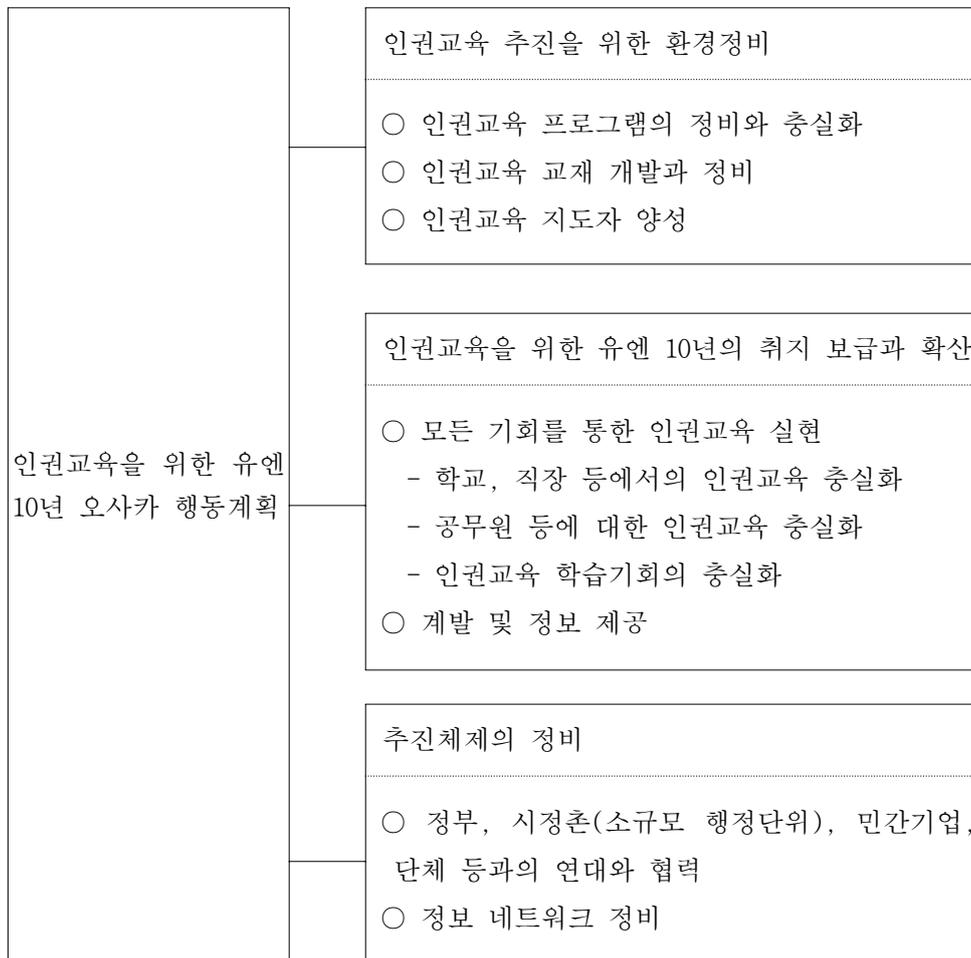
- 오사카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오사카 행동계획'은 크게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
  -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정비와 충실화
  - 인권교육 교재 개발과 정비
  -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취지 보급과 확산
  - 모든 기회를 통한 인권교육 실현: 학교, 직장 등에서의 인권교육 충실화,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충실화, 인권교육 학습기회의 충실화

- 계발 및 정보 제공

○ 추진체제의 정비

- 정부, 시정촌(소규모 행정단위), 민간기업, 단체 등과의 연대와 협력
- 정보 네트워크 정비

[그림-3]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오사카 행동계획



자료: 아우내재단 미래문화연구원. 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청와대 정책기획 수석실 연구과제보고서.

#### (4) 휴-라이츠오사카(재단법인 아세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sup>39)</sup>

##### ① 휴-라이츠오사카 탄생과 활동 상황

- 휴-라이츠오사카는 오사카의 지방자치단체가 NGO와 협력하여 설립한 인권정보 및 교육센터임. 휴-라이츠오사카는 국제인권정보의 교류거점을 목표로 오사카부, 오사카시 및 오사카부 내 지방자치단체들과 제 단체들이 협력하여 1994년 7월에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정식명칭은 '재단법인 아세아·태평양인권정보센터'임.
  - 2001년 4월에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명예표창을 받았고,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의 추진을 중심으로 국내외 인권단체와 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에 앞장서고 있음.
- 휴-라이츠오사카는 지방(오사카), 국가(일본), 지역(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국제사회)를 시야에 두면서 사업을 제공하고 있음. 센터는 유엔과의 협의 자격을 지니는 NGO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유엔 산하에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
- 휴-라이츠오사카는 국제인권정보의 교류거점으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인권교육 세계 프로그램 제1단계'(2005년-2007년)와 '지속적인 계발을 위한 교육 10년'(2005년-2014년), '제2차 선주민족을 위한 국제사회 10년'(2005년-2014년),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등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수집과 의견 제시 사업을 하고 있음.

39) 휴-라이츠오사카 홈페이지 [www.hurights.or.jp](http://www.hurights.or.jp)에서 참조.

② 휴-라이즈오사카의 인권교육관련 활동

○ 국제인권기준의 일본 국내 보급 및 홍보 활동

- 2005년도에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권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제 인권교재장려사업 'AWARD 2004'에 이어 'AWARD 2005'를 실시하고 수상작품 3점(일본 1점, 해외 2점)에 대해 시상식을 하였음. 또한 응모작품들을 모아서 소개하는 「아시아 태평양 인권교육 교재전」을 개최하였음.
- 출판분야에서는 「미안마: 군사정권하에서 사는 사람들 1993-2005」, 「법관과 경찰관, 변호사를 위한 유엔 인권매뉴얼」을 번역·간행했음.
- 2006년도에도 'AWARD 2006'을 실시하고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등, 정부 관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본 국내에서의 연수 및 개발,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지역 주민들에게 국제인권 지식을 알리기 위해 「국제인권을 생각하는 모임」을 오사카부 및 오사카시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국제인권한마당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사단법인 부락해방·인권연구소 등과 「국제 인권연구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교육관계 단체들과 협력하여 다문화교육 공동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국제인권 포스터의 무료대출 및 원월드페스티벌(One World Festival)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지역 주민들 및 지자체 관계자들, 학교 관계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본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역 인권보장 촉진을 위한 사업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년-2004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교육을 위해 지난 10년간 활동을 전개해 왔음.

- 2005년에 일본 국내의 인권기관 단체들이 모여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일본내 인권기관 포럼(AFP)'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6년에 오사카에서 국제회의 '아시아의 인권교육 - 『유엔 10년』 으로부터 세계 프로그램을 통한 각국의 대처'를 개최하고 아시아 여러 나라 및 유엔에서 게스트를 초청함과 동시에 이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참가를 호소하여 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 지역 인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

- 2005년도에는 주로 국제인권과 관련된 여러 동향들에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음.
  - 아시아 지역의 「인권교육 세계프로그램」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 필리핀, 캄보디아, 한일 인권교육, 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연구 필드워킹 사업
  - 국제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 센터의 연구잡지 『아시아 태평양 인권 리뷰 2006』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특집 테마인 「인신매매」를 과제로 한 연구회를 개최
- 2006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별 인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특히 다음 4개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권교육 세계 프로그램」의 제 1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에서의 유엔인권 고등변무관사무소와의 공동프로젝트에 참가

- 5개국 지역(필리핀,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강 주변지역, 한일 인권 교육, 남아시아, 태평양)을 대상으로 국가별 인권연구 필드웍사업을 실시
- 「인권교육 세계프로그램」,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 「유엔 파리원칙에 근거한 각국 국내인권기관의 동향」, 「제 2차 선주민족을 위한 국제사회 10년」,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지원사업,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및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등의 활동에 대하여 국제인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실시. 또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의 인권 상황 및 인신매매(트래피킹:trafficking) 철폐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를 둘러싼 개혁과 실시에 있어서, 인권 및 「인간의 안전보장」과의 관련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
- 풍부한 내용을 담은 연구잡지 『아시아 태평양 인권 리뷰 2007』 발행

#### 4. 일본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시사점

- 일본의 인권교육 관련 제도의 특징은 중앙정부 차원에 법제화와 추진조직이 구축되어졌다는 점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까지 체계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임.
- 일본은 1995년에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1997년에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0년에 '인권교육 및 인권 의식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또한 이러한 법적·제

도적 체계를 중앙정부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마련하도록 하였음.

- 이 과정은 행정부내 조정기구 구성 → 국가행동계획 수립 → 인권교육 법제화 → 공교육과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인권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여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인권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자극했다는 특성을 가짐. 즉 중앙정부 차원보다는 오사카부 등 지역차원에서 인권교육이 더 선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의 많은 지방공공단체들이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에 관계하는 부서를 설치하거나 추진본부를 만들어 각 지역에 맞는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0년 8월까지 35개 도부현에 인권교육을 위한 행정조직이 설치되었으며, 더 작은 행정 단위인 시정촌(市町村)에도 추진본부가 설치되어 지역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오사카부에서 인권과 인권교육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내의 인권과 인권교육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휴라이츠오사카라는 아세아·태평양 인권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인권 정책은 관 주도의 국민교육의 일환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강한 정부 주도적 성격으로 실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형식화된 측면이 강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최근 일본의 우경화 바람은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일본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대해 일본의 인권 시민단체들은 일본정부가 유엔의 인권교육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안 수립요구에 외형상 잘 따르고 있는 것이 일본 내의 우경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음.

- 최근 일본에서 인권옹호법 제정과정에서 일본 주류 정치권의 보수적 경향이 나타나는 것에서 추정할 수 있는 지점임. 이 법안에서의 핵심 쟁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성 산하에 둘 것인지 국가 기구와 독립적 위치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것임. 일본 여당은 이에 대해 법무성 산하에 두는 것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인권의 대상인 국가기구가 국가의 인권을 관장하는 모순에 빠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결국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협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권력의 의사에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일본 인권교육 추진본부에는 민간단체가 의사결정 단위에 참여하는 것이 일체 제외되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과정에 결합하고 있는 수준임. 그러나 인권교육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 법·행정 기구가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사회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렇듯 시민사회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또는 현재와 같이 일본 주류 정치권의 우경화 바람이 일 경우에는 정치권력의 의사에 좌우되는 양상을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임.

○ 인권교육 개념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의 가치 교육으로 설정한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2000년 제정된 '인권교육 및 인권 의식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인권교육에 대해 ‘인권 존중의 정신을 육성하는 교육활동’, ‘인권 존중의 사상을 대중화하는 홍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유엔 인권교육 행동 계획에서 밝힌 인권에 관한 지식, 기술, 태도, 실천을 의미하는 인권교육의 정의와 비교하면 극히 소극적이고 낮은 수준으로 인권교육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일본의 인권교육은 개념 정의에서부터 홍보활동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적 측면보다는 계도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5. 일본의 인권교육 실천 프로그램 사례

### - 일본의 동화교육(同化教育)<sup>40)</sup>

#### 1) 일본 동화교육에 대한 이해

- 동화교육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인권교육 실천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음. 동화교육은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부락민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발전을 거듭해 왔음.
- 현재 일본의 부락이라 불리는 지역에는 3백만에 이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음. 부락민은 중세시대의 노예나 천민의 후손으로 추정되며 부락출신 사람들에게 대한 차별은 오랜 세월 일본 사회에서 구조화되어온 대표적 유형의 차별임.

---

40) 인권운동사랑방. 2000년. 『1회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자료집 참조.

## 2) 일본 동화교육의 시행 배경

- 동화교육은 2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 사이에서 부락민에 대한 차별행위가 심해 효과적인 전쟁수행에 방해가 되어 주창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부락민을 일본 주류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동화교육이 일본 군부에 의해 제안되었음.
- 사회통합을 위해 주창되던 동화교육은 이후 저항과정을 통해 그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함. 부락해방운동은 '해방교육' 혹은 '이른바 동화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주류 동화교육에 저항하면서 동화교육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음. 이들은 부락민을 비롯한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민주화의 전략으로서 '동화교육'을 해석하기 시작함.
- 이에 따라 부락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판적 문해능력을 발달시키고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할 수 있는 '행방을 위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동화교육을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의 동화교육은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부락해방운동은 '부락해방운동은 교육과 더불어 시작하여 교육으로 끝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부락해방운동과 동화교육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음.

## 3) 동화교육의 목표

- 동화교육은 부락민과 부락 아이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

는 것, 그들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는 것,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정하는 것 등을 통해 부락민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성인 부락민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독과 비판적 문해교육을 수행했음. 대부분의 부락민들이 학교에서의 차별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빈곤 등으로 인해 교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문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였다고 볼 수 있음.
- 부락 아이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교에서의 차별방지,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증진 등을 위한 활동도 계획되어 많은 지역에서 부락출신 아이들의 자발적 조직들이 결성되어 지역사회에 부락문제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 부락민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아이들에게는 부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상호간의 존중심을 개발함으로써 부락민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음.

- 학교에서 부락문제를 교과과정 내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1953년 지역사회에서 동화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국 동화교육자협회'의 창립 이후 교사들은 부락해방센터나 부락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하여 활동을 전개하였음. 부락 아이들의 취학률 증가, 학교시설 개선, 무료 교과서 제공, 부락문제와 역사를 교과과정내에 통합시킨 교과과정의 개발, 교재개발, 동화교육의 영역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음.

#### 4) 동화교육의 주요 실천 방법

##### (1) 학교에서의 동화교육 과정

○ 학교에서의 동화교육의 주된 과정은 모둠활동(그룹활동)에 기반하고 있음.

- 첫째는 학교 밖 아이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키고, 둘째는 취약집단, 차별받는 아이들의 삶과 경험, 느낌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있음.

○ 교실내 모듬일기 쓰기, 현지답사 프로그램의 도입

-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고 표현하고 자신들이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 모듬일기는 대표적인 동화교육의 방법론이며, 교실에서 아이들이 모듬일기를 돌려쓰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모듬일기에는 아이들의 학교 내 생활,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락차별, 학교 밖 가정이나 사회에서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이 기술되고 아이들끼리 돌려 읽음으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양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음.

**(2) 학교 밖 교육**

- 학교 밖 비정규 교육과정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동화교육을 촉진시키고 있음. 부락민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패러디한 연극이나 공동 창작한 드라마 등을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상영하기도 했음.

### 제3절 인도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

#### 1.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인권보호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4개의 지방사무소를 가지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인권침해행위 전반에 관한 직권 및 진정에 의한 조사’,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 ‘법령, 제도, 정책의 인권침해 요인 검토와 시정권고’, ‘국내 인권 상황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치 건의’, ‘인권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 및 단체의 활동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주요 역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2. 공공분야 인권교육 정책

- 인도의 인권교육 정책은 국가인권위원회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1993년 설립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12조 기능<sup>41)</sup>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인식 확대 사업’을 명시하였음. 인도 인권교육의 목표는 공권

---

41) 1993년 제정된 인도 인권보호법 제12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의 진정에 의한 조사기능
- 법원에 진행 중인 인권침해 관련 소송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는 기능
- 수감자에 대한 처우 확인을 위하여 주 교도소에 사전에 통보하고 교도소를 방문하여 방문결과에 관하여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
-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인권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기능
- 인권 관련 조약 등 국제 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는 기능
-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 기능
- 인권보호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협력 기능
-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기능

력을 좀더 나아지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세미나, 연수, 출판, 강연 등의 활동 등을 통하여 인권문화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주요 활동은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인권교육 도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 관련 훈련 프로그램개발과 일반대중을 위한 인권 토론회와 세미나를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임.

○ 인도정부는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다른 부처 장관들을 포함하는 내무장관 직속의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를 구성하였음.

- 조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인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간활동보고서를 통해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매년 언급하고 있으며 이 활동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인도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은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의 이행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활동은 대학교육에 인권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35개 대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의 인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은 University Grants Commission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3. 인도의 공공분야 관련 주요 인권교육 활동

#### 1) 인권훈련 프로그램 운영

-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설립 당시부터 위원회의 명령으로 인권인식 확대와 교육증진을 활동을 강조하였음. 특히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인권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이 프로그램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 인권의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은 법집행공무원, 군대, 법률가, 사법관리, 교도소관리자, 행정공무원, NGO 활동가 등임.
-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2005년 동안 폭넓은 인권 쟁점과 주제를 담은 26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음.
  - 프로그램의 형태는 인권감수성훈련, 수련회, 토론회, 훈련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내용은 인권조사, 인권 관련 법률과 관계된 쟁점에 초점을 두어 개발되었음.
  -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참여한 단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협회, 연구회, 법과대학, 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UNISEF, NGO 단체들과 공동으로 구성하였음.
  - 프로그램의 주요 참여 대상은 공무원, 경찰, 사법관리, 교도소공무원, 법집행공무원, 언론인, 연구자, 교사, 사회활동가임.
  - 프로그램의 시행은 인도의 동, 서, 남, 북 4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지원, 교육강사지원, 교재와 교육 매뉴얼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인도 인권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는 다음 장 '인도 인권교육 실천 사례'에 자세히 소개하였음.

## 2)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In-House Training Programs)

- Training Programmes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공무원 대상으로 시행되는 3개 프로그램임. 인권과 아동과 난민보호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아래 [표-57]는 인도 In-House Training Programs의 실태에 대하여 정리한 것임.

[표-57]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태

구분	프로그램명칭	협력조직	교육대상	교육기간	장소
1	아동권과 아동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의 방향	UNICEF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2004. 7.29	뉴델리 UNICEF
2	인권과 난민 보호에 관한 프로그램의 방향	뉴델리 유엔고등난민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2004.11.23	뉴델리 YMCA
3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훈련과정	국가인권위원회 훈련국	국가인권위원회 신입직원	2004.11.30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인도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04-2005』 .

- 군대에서 정부군의 모든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1998년부터 군의 인권교육에 대하여 연간보고서로 발

간하고 있으며, 힌두어와 영어로 출판되고 있음.

#### 4. 인도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시사점

-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은 1993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 인권교육 활동을 명시하고 있음.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담당 부서는 '훈련국'임.
- 이는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에서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증진을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음.
- 인도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 확대를 위해 내무부 장관 직속의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여기에 타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음. 이 조정위원회가 공공분야 인권교육과 관련된 행동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범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을 관장하고 관리하는 정부부처 조직이 없는 상황임. 이는 한국에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주고 있음.
-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발한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26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좋은 사례로 판단됨. 다양한 공공분야의 직군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 인권감수성훈련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인권 관련 여러 협력 기관과 NGO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 아동권, 사회권, 법집행 과정에

서의 권리, 인권조사과정에서의 방법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을 갖고 있는 점은 본받을 필요가 있을 듯함.

- 타 국가와 특징적인 인도의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임. 기존 직원뿐만 아니라 신규직원에게 대해서 인권, 아동권, 난민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인도는 카스트제도라는 엄격한 계급사회가 존재하기에 자국 내에서의 계급·계층간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임.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도 근본적으로 카스트제도의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인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카스트제도와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
- 지금까지 인도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를 인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인도 인권교육 활동의 특징은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대학과 연계한 인권교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구체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5. 인도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천 사례

- 인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2005년 동안 공공분야 종사자, 사회운동단체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6개의 인권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

였음. 아래 [표-58]은 그 실태를 보고한 내용임.

[표-58] 인도의 인권훈련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칭	협력조직	교육대상	교육기간
1	인권조사과정에서 사실 확인 기술에 관한 워크샵	뉴델리 인도사회학회	NGO/CBO 변호사 사회운동가	3일간 2004년 4월
2	인권조사과정에서 인터뷰 기술에 관한 훈련프로그램	네팔, 캐나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직원과 NGO	5일간 2004년 5월
3	인권과 아동의 권리	MP 아카데미	행정공무원 시민	2일간 2004년 5월
4	인권 훈련 프로그램	아셈주 국가인원위원회	아셈주 경찰	5일간 2004년 6월
5	여성, 빈민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법률 교육	뉴델리 다중행동 연구그룹 (MARG)	NGOs	5일간 2004년 6월
6	인권 쟁점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서벵갈대학교 법과대학	법무공무원 (서벵갈)	3일간 2004년 6월
7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워크샵	TaTa 사회과학 연구소	경찰	1일간 2004년 6월
8	인권 훈련 프로그램	서벵갈 주인권위원회	경찰	3일간 2004년 6월
9	인권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뉴델리 공익인권위원회	경찰 공무원	4일간 2004년 7월

구분	프로그램명칭	협력조직	교육대상	교육기간
10	성인 인권 교육훈련 프로그램	YASHADA 아카데미	행정 공무원 NGO	4일간 2004년 7월
11	인권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뉴델리 공익인권위원회	경찰 공무원	4일간 2004년 7월
12	인권조사과정에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뉴델리 인도사회학회	NGO 변호사 사회운동가	3일간 2004년 7월
13	범죄 관리 체계의 역할과 책임성에 관한 인권교육과정	범죄학, 수사학 국가연구기구	판사, 경찰, 교도직	5일간 2004년 7월
14	인권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YASHADA 아카데미	행정공무원 NGO	3일간 2004년 8월
15	경찰과 인권에 관한 지역훈련 프로그램	북동부 경찰아카데미	북동부 경찰	5일간 2004년 10월
16	범죄 관리 체계의 역할과 책임성	범죄학, 수사학 국가연구기구	판사, 경찰, 교도직	5일간 2004년 11월
17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토론	뉴델리 사회과학학회	법무공무원 경찰,검찰 NGO	1일간 2004년 12월
18	Capacity Building 워크숍	인도공공 행정학회 뉴델리	행정공무원 NGO	2일간 2004년 12월
19	인권조사과정에 관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뉴델리 인도사회학회	NGO 변호사 사회운동가	3일간 2005년 1월
20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토론	Joint Women 프로그램 뉴델리	여성보호소 여성보호 관련 공무원	3일간 2005년 1월

구분	프로그램명칭	협력조직	교육대상	교육기간
21	잔악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뉴델리 인도사회학회	경찰	2일간 2005년 1월
22	Capacity Building 워크숍	인도공공 행정학회 뉴델리	행정공무원	2일간 2005년 2월
23	인권증진과 옹호를 위한 인권 활동가와 NGO의 역할	TaTa 사회과학 연구소	NGO 인권활동가 사회운동가 언론인 연구자	2일간 2005년 3월
24	직장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뉴델리 사회-법 정보센터	행정공무원 고충처리 위원회 멤버	1일간 2005년 3월
25	법무공무원에 대한 인권 감수성 훈련	국립 법과대학 (Rajasthan)	법무분야 공무원	3일간 2005년 3월
26	아동 성 학대 법에 대한 판사와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	뉴델리 사회-법 정보센터	델리 법원 종사자	2일간 2005년 3월

자료: 인도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04-2005』

## 제4절 한국과 외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사례 비교·분석

- 지금까지 아시아 3개국 필리핀, 일본, 인도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사례를 살펴보았음. [표-59]는 아시아 3개국과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상황을 비교·분석한 표임. 공공분야 인권교육 추진 형태를 유형화해 보면 필리핀과 인도는 국가인권위원회 주도형이고, 일본은 법무성 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겠음.
  
- 필리핀의 경우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연구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인권위 산하조직으로 인권교육훈련센터인 ‘아태인권연구소’를 두고 있음. 필리핀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헌법차원으로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② UN 인권교육 10년의 이행차원으로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 1998-2007’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③ 국가인권정책조정실이라는 정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④ 필리핀 엠네스티, 아키노재단, 필리핀 사범대학 등 NGO와 대학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⑤ 경찰·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필리핀의 사례는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인권교육훈련센터 설립’, ‘경찰·군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본부’와 법무성이 담당하고 있음. 일본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 ② 독자적인 인권교육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 ③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④ 오사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 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휴-라이츠 오사카라는 인권정보센터를 만들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는 '인권교육 관련법을 제정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인권정보센터를 별도의 법인 형태로 설립했다는 점'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훈련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②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③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과정에 NGO와 유관 단체들이 협력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④ 공공분야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권까지 확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도의 사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과정에 NGO와 유관 단체들이 협력조직으로 참여', '공공분야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권까지 확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시행'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표-59] 아시아 4개국 공공부분 인권교육 비교분석표

구분		한국	필리핀	일본	인도
법적 기반	인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년)	헌법(1987년) 행정명령제163호 <sup>1)</sup> (1987년)	인권 옹호법안 추진중	인권보호법 (1993년)
	인권교육 관련법	없음	대통령령 제259호 <sup>2)</sup>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2000년)	없음
UN 인권교육 10년의 이행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 NAP에 포함 (2005년)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 1998-2007 (1997년)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국가행동계획 (1997년)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2001년)
제도적 기반	국가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법무성 인권옹호추진심의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 교육담당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연구국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 훈련국
	인권교육 훈련센터	없음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아태인권연구소	없음	없음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	공공분야에 인권교육 이행 권고	국가인권정책조정 실(1994년) -관련부처와 MOA체결 -교육부, 법무부, 내무부 참여	정부 관계부처 연락회의(1998년)	조정위원회 (2001년) -내부장관 직속
NGO 참여 및 협력조직		검경인권교육 연구회 군대인권교육 연구회	필리핀 엠네스티 아키노재단 필리핀 사범대학	휴-라이츠 오사카 (아태인권정보센터)	UNICEF와 다수 NGO들
주요 실천 사례		군, 검, 경 인권지도자 양성과정	경찰·군대 인권교육 훈련프로그램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 오사 카 행동계획 - 동화교육	- 공공분야 26개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대상 3개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

\* 주: 1) 필리핀 행정명령 제163호 - 1987년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위원회 설치 시행 지침.  
2) 필리핀 대통령령 제259호 - 법집행인, 경찰, 군대, 교도관의 인권교육 훈련 지침.

## V. 국내 인권교육 규정 및 제도화 추진 동향

- 인권교육은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 자신 및 타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포함함. 따라서 구성원들의 인권실태가 열악한 사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왜냐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지 못하거나,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라도 인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현재 국내법 중 인권교육 그 자체만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음. 따라서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관련법 중 인권교육에 대해 다루고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그러나 개별법을 통해서도 인권교육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조항은 발견할 수 없음.
-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최근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본 장에서는 한국의 공공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관련한 법적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화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함.

## 제1절 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관련법

- 본 절에서는 국가의 조직과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인권의 보호와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그리고 공무원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사회복지사업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조금이나마 공공분야 종사자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살펴보고자 함.

### 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영역에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국가만이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음.
- 국민들의 인권은 국가의 영역에서만 침해되거나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사회의 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대해 대처하고, 예방하는 활동을 통해 인권보장 의무를 다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사회에서 타인의 인권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인권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국민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1조의 세부 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받을 권리,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제도, 평생교육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의 내용, 특히 인권에 대한 교육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를 살펴보면,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인권교육과 홍보)

-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동법 제19조 제5항에서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9조를 더욱 구체화한 제26조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라는 사항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할 영역’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기관 혹은 단체 및 시설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교육에 관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인권교육에 관해서 구체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규정을 됴으로써 향후 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할 수 있거나 안 해도 되는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임.

### 3. 교육기본법

-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교육기본법 제1조의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본법에서도 인권교육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음. 그러나 그 내용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자격·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는 직접 인권교육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조문 전체의 내용이 모두 인권교육과 분리될 수 없음. 따라서 이 조문은 직접 인권교육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교육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법 제12조(학습자)의 조항들은 인권교육 그 자체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하지만 제12조 제1항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는 규정은 교육을 하는 당사자들이 학습자의 인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인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인권에 대한 교육과 타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동법 제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의 조문은 인권교육의 내용 중 특히 남녀평등교육에 관한 방법 및 행정주체와 그 소속기관의 정책수립 및 그 시행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규정이라 판단됨.

#### 4. 공무원교육훈련법

-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교육훈련관장기관)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의 수립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조 (교육훈련지침)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정책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에 관한 일반지침을 11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4.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수의 행정기관에 공통되는 전문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당해 분야의 전문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소속공무원의 전문 교육훈련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공공분야에서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이며, 이들의 정신자세와 기술 및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서는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인권교육 관련조항은 없음.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또한 공무원교육훈련법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시행령 제2조에서 교육훈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그 내용에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 및 시행령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음.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 제4조(교육훈련의무)

-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훈련과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훈련과정·전문교육훈련과정 및 정신교육 등 그 밖의 교육훈련 과정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후보자 또는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또는 승진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전문교육훈련과정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6.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으로 제정되었음.
- 사회복지사업분야의 종사자들은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회적 약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인권', '인권교육'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음.

- 다만 동법 제10조 1항을 통해 '……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지도와 훈련이 이행이 의무적 규정이 아니며, 그 내용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규정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지도 훈련업무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언급되어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기타 사회복지관련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 ③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대한 지도·훈련업무
  2.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업무

## 7. 출입국관리법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출입국관리법 제1조)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출입국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인권을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출입국관리 과정에서 내·외국인을 직접 대면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출입국 관리법

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법 중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외하면 어떤 법에서도 시민들이나 공공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법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현실은 한국 사회 각 부문에서의 인권교육 현실을 열악한 상태에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나타나며, 한국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고, 일반국민 및 공공분야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지 못하여 인권교육의 현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국내의 인권상황 및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다년간 있어 왔음.
  
- 인권교육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의 방향은 크게 인권교육 관련법의 제정, 각 부문 해당 법률의 개정을 통한 인권교육의 의무화, 인권교육기관의 설립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다음 절에서는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제2절 인권교육 법제화 및 제도화 추진 동향

### 1. 인권교육의 법제화 동향

-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인권의 내용과 함의를 깊이 이해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문화와 제도를 조성함에 있어서 인권교육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
-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분야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높여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국가가 나서서 인권교육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지만 근거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보면 인권교육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은 분명해 짐. 또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실행과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권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임.
-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 인권보장의 당위성 및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한 강조는 소수의 선각적인 인권운동 단체들의 노력으로 제기되었음. 그로 인해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막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인식이 점차 사회적으로

로 확산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이 가입한 각종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에 대한 유엔 해당 기구의 심의와 권고에서 한국의 인권교육 현실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받고 있으며, 각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개선에 인권교육이 필수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인권협약의 규정상 인권교육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므로 인권교육과 관련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인권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됨. 법제화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권교육 관련법의 제정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인권교육의 법제화임.

### 1) 인권교육 관련법의 제정

-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단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나 구제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음. 따라서 인권 침해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전향적인 전개와 보급이 당위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교육수요적 요청이 크게 일고 있음.
- 이에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 구현에 필수적인 인권의식의 형성, 인권교육 자원의 집중과 교육수요에 대한 대비, 체계적인 인권교육관련 기본원칙의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학교(학생), 시민사회(일반 시민 등), 국가사회(공무원 등)의 인권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추진기구의 필요성의 대두 등의 이유로 인권교육을 위한 관련법을 독립

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임.

- 인권교육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법안의 성격 및 법안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상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관련 등 일반적 교육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영역이기도 하여 향후 논란을 줄이기 위해 소관 부처와 법안의 성격 및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률로 제정을 추진하더라도 이 법이 공공기관 및 학교와 시민사회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간 협력이 고려된 법안 성격 및 법안 명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인권교육법을 기본법으로 할 것인지, 지원법으로 할 것인지,진흥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셋째, 법 제정의 목적은 규정 대상과 법 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국가적 편익을 기술하는데, 인권의식을 깨우쳐 인권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기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기술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그리고 시민적 차원에서만 편익을 언급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의 편익까지 언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김철준, 2006).
  - 첫째, 인권교육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인권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UN의 인권교육 개념에 대한 포괄적 규정

과 한국 사회 내 인성교육 등 유사 교육개념 등으로 인하여 인권교육의 혼란가능성이 내재하기 때문이며, 인권교육의 개념은 논란의 소지가 큰 개념이기 때문에 법률 상 명확히 하되,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개념을 반영해야 할 것임.

- 둘째, UN이 제시한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가치 기준 및 지향점을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권교육의 대상과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인권교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인간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국가 등의 의무사항을 적시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범위와 대상을 전국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인권교육 심의·의결 체계에 있어서, 인권교육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부처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인권교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심의 기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다섯째,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실행체계에 있어서, 학교 및 시민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촉진·지원하고 교육모델을 제시할 인권관련 교육원(가칭) 설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인권교육법이 선언적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인권교육 평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교육법과 별도로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인권교육기본법’, ‘인권교육연구원법’, ‘인권교육재단법’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인권교육기본법’안은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중요함. 또 부처간 이해관계나 인권문제, 인권교육에 대한 상이한 관점과 이해를 갖고 있는 현재의 부처간 교육사정을 감안할 때, 인권교육기본법과 같은 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적 인권교육정책의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체제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임.
- 둘째, ‘인권교육연구원’ 또는 ‘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개별기관이나 부처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에는 교육시간과 강사진, 교육내용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전담교육기관에서 충분한 준비와 교육체제를 갖추어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임.
- 셋째, ‘인권교육재단’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인권교육 수행의 중요성에 비추어 추진주체를 민관합동으로 할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음. 따라서 정부기관은 운영기금 등을 출연하고, 학계 및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은 교육내용 연구, 교과과정 개발 등 인권교육재단의 실제 운영을 맡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인권교육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대학 등 인권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등의 운영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음. 물론 재단 전체의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 맡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2) 기존 법률의 개정

- 인권교육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인권교육권 보장의 의무를 포함시키기 위해 인권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또 하나의 방향은 기존 법률의 개정임.

○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는 아직 풍부하지 못한 상태이며, 여기에서는 2003년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제안한 방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함.

- 첫째,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교육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임. 이 경우 인권교육을 기본권으로 성립하는 방법이 있음.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권교육의 실행과 실행기구의 설립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와 규칙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음. 이러한 교육기본법의 개정방안은 다시 두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 먼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개념)의 개정 방안임. 현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교육이념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인권교육은 교육이념상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임. 그러므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인권의식”으로 조문을 개정하여 인권교육의 법적 기초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임.

· 다음으로 인권교육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음. 교육기본법은 제19조(영재교육)<sup>42)</sup>, 제29조(국제교육)<sup>43)</sup> 등 주요 교육과제를 병렬적으

---

42) 교육기본법 제19조(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3)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

로 적시하고 있으나, 정작 교육 이념에서 밝힌 “민주시민의 자질”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핵심적인 인권관련 조항은 두지 않았음. 특히 제29조 국제 교육조항은 4항에 걸쳐 세부적인 내용까지 적시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제29조의 구성과 유사한 인권교육이 교육기본법에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임. 이 경우 법조문은 제19조~제29조의 구성을 참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로 신설할 수 있다는 방안임.

- 둘째, 현재 ‘협의’와 ‘권고’ 권한 조항에 그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와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조항의 개정임. 현재의 법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여하는 권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임. 이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인권교육조정위원회의 등을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이처럼 교육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할 경우 추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즉 초·중고등교육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지침, 교원과 교육공무원 연수 내용에 인권교육을 포함 또는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교육부령,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연수 내용에 인권교육을 포함 또는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교육부령 등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인권교육 심의·결정 기구의 설치

- 인권교육의 법제화·제도화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인권교육 추진체계이며, 추진체계는 심의·결정 기구의 성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권교육 심의·결정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함.
  
- 인권교육 심의·결정 기구의 소속에 관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방안임. 인권교육은 인적 자원개발 측면보다는 가치교육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다만 이 방안의 경우 위상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 형식으로 할 경우 전문성과 다양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관련 범부처 당연직과 외부(학계 및 인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소위원회로 하지 않았을 경우 참석 구성원의 문제와 심의·결정을 담당하는 인권교육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와 관계없이 인권교육위원회가 심의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인권교육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두되 심의 기능과 의결 기능을 분리하여 인권교육위원회는 심의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와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음.
  - 법률에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인권교육 정책의 계획과 추진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인권교육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둘 경우 조직이기주의, 외관의 확대로 비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됨.
- 둘째 방안은 국무총리실(대통령) 산하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임. 국무총리실(대통령) 산하 독립위원회를 두는 경우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협의) 등을 위해 유리하며, 당연직으로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 등을 참여시킬 수 있어 집행력의 담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됨.
  - 대통령 산하에 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추진 방향이 대통령의 의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소지가 있고, 업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권교육위원회를 두는 경우 협의 및 집행력 담보가 가능하나 정책의 입안·추진 등 실무적 기능 수행이 어려워 UN의 권고 사항이나 인권단체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인권교육에 대한 실질적 심의·결정·조정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3. 인권교육기관의 설립

- 앞서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초기 단계 수준임.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행의 초기단계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인권교육의 체계성 확보,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등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재 한국에는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전문인권교육기관은 없으며, 이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수행해오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분야 중 경찰, 검찰, 교정 등 법집행공무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 분야를 군대,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하고 있음.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각 부분별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인권교육확대에 기여해 왔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
  - 첫째, V장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둘째, 전반적으로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임.
    - 인권교육의 개념, 구성요소, 교육방법 등 기초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흡함.
    - I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야별 인권교육 중장기 로드맵이 부재하고, 분야별 교육프로그램의 특화 정도, 교수인력의 역량 등의 측면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그리고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 아직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분야가 있으며,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분야도 있음.
  - 셋째,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강사단 구성 및 파견, 인권교재 발간, 시청각 자료발간, 공공분야 연구과정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 운영 등의 인권교육을 실

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각 부문에 대해 뚜렷한 인권교육정책을 가지고 체계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함.

- 넷째, 경찰, 검찰, 군, 기타 공공분야에서의 인권교육에 있어서 직무교육, 입직교육, 연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시도되고, 사회적으로도 인권교육 교사모임, 학부모 모임 등 교육주체의 진지한 고민이 모색되고 있음. 그러나 그 방향이 기존의 도덕 및 윤리교육, 사회교육의 변형된 형태로 굳어지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인권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섯째, 한국의 고질적 입시교육으로 인해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가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군사문화, 획일적 문화, 교육 권위주의로 인해 인권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사회 인권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인권교육을 담당할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인권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인권교육의 법제화와 함께 논의되기도 하며, 인권교육기관 설립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음.

○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권교육의 법제화와 분리하여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을 정리해보고자 함.

- 첫째, 인권교육 전반을 계획, 조정,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함. 그 동안 인권교육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그 역량 또한 산발적으로 축적되어 있는데, 정부 관련부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협력을 통해 종합해 낼 필요가 있음. 인권교육의 역량을 종합하는 과정

을 통해 인권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체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조정·심의·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함.

- 둘째, 인권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현재의 인권교육 수준으로는 인권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며, 향후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요함.
- 셋째, 인권교육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적합한 인권교육 과정 및 교재, 교육방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전문 기관이 필요함. 이 기관을 통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자료를 포함한 각종 교재,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방법 등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임.
- 넷째, 인권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 현재는 인권교육 전문가, 학자, 인권활동가들이 강사로 파견되거나, 각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해당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인권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권교육기관이 필요함.
- 다섯째, 인권교육을 하나의 기관에서 모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따라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주거나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지원, 인권교육 강사의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 기관이 필요함.
- 여섯째, 인권교육은 중앙 집중형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지방 분권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따라서 각 지역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 수행하기 위해서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할 것임.

## VI. 결론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이후 지난 5년간 법무분야, 경찰분야 등 주로 법집행분야의 인권교육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왔으며, 2005년 이후 군대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 법집행분야는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으나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각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기반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한편 인권침해 가능성은 크지만 그동안 소홀했던 군대와 사회복지분야는 2006년에 인권교육이 도입되는 시점임.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총 5개의 분야 중 인권교육의 체계와 기반 구축, 인권교육 과정 운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분야는 경찰분야임.
  - 법무분야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는 못함. 군대분야는 2006년부터 장병기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교육역량 구축, 직위별 교육과정 개발,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활동을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향후 군대분야 인권교육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복지분야도 군대분야와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사회복지 직무교육내에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행정분야의 경우는 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 5개 분야 인권교육의 추진체계를 분석해보면, 경찰분야와 군대분야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경찰청은 인권보호센터를 두고 있으며, 군대는 국방부법무관리관실 내에 인권팀을 구성하였음. 앞서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조직에서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지의 여부가 해당부분의 인권교육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경찰, 군대와 같은 공공분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기반구축이나 교육 실행의 측면에서 보다 더 나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공공분야의 경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담부서가 있는 분야의 경우는 독자적인 인권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 추진기반 조성적 측면을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인권교육 자체 프로그램 개발, 자체 네트워크 조직 등의 지표로 살펴보면, 앞서 분석한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경찰과 군대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기반 조성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도 경찰과 군대분야는 공식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권교육 운영체계도 직무교육 체계 내에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자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경찰과 군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 행정 조직에서 자체 내에 법적 규정과 전담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해당 정책 추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군대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 특히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찰에서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는 조직 내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 조직 내의 적극적 의지의 부

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인권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공공분야 자체 내에서의 자구적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당 부처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 인권교육개선위원회'를 두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개 공공분야의 인권교육 과정의 실태를 살펴보면 경찰과 군대는 직무교육 내에 독자적인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다만 군대는 장병기본권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타 부문의 경우는 직무교육 과정내에 인권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행정분야는 일부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하고 인권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각 공공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교육의 범주를 6개로 설정하여 실태를 조사하였음. 이러한 교육 범주로 인권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는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사회복지분야의 경우는 사회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인권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한편 여성 및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권교육은 전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 대다수 공공분야에서 강의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인권감수성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찰과 군의 육군임. 인권교육 기반 구축 측면에서 인권 강사(지도자) 육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찰분야와 사회복지분야임.

- 이상의 인권교육과정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주고 있음.
  - 첫째, 공공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2005년 이후 경찰과 검찰분야는 본격적으로 인권교육 시행 2년차를 맞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담당자는 각 직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위에 맞는 단계별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함을 제시하였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검찰 및 경찰분야 인권교육 지침서와 매뉴얼 개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됨. 이러한 외부 인권교육기관의 지원 노력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음.
  - 둘째,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음. 조사결과 인권의 대상자와 접하고 있는 교정직, 출입국관리직,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교육과정, 교육참여도 면에서 타 직군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법무분야의 경우 교정직과 출입국관리직에 시행되는 인권교육이 검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인권교육이 직무와 연관된 교육 범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교육의 영역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임. 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은 별도의 국가 교육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직무와 연관된 인권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음. 그러나 직무와 관련된 인권교육에 배정된 시간이 대체로 1~2시간 사이로 매우 짧아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인권의 역

사, 세계 인권선언, 인권의 법적 의미 등 인권일반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과정의 수준은 초보적이라 할 수 있음.

- 넷째, 인권교육이 지식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권에 대한 가치관, 태도, 기술을 확립하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지식으로 서 인권교육'을 넘어 '실천으로서 인권교육'으로 발전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권교육은 대다수가 강의식의 주입식 교육임. 직무와 연관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 현장과 연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프로그램의 빈곤'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큼. 또한 인권감수성증진 프로그램과 같은 인권교육 관련 특별 프로그램이 거의 부재한 상황은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함.

- 다섯째, 공공분야에서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인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현재 공공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 인력을 육성하고 있는 곳은 경찰 분야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교육 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수준임. 경찰의 인권교육 인력도 자체 교육 과정 중 '경찰과 인권' 교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공공분야에서 국가 인권교육 인력의 '표준화된 인력 양성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의 주요 내용과 역할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필리핀의 경우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연구국이 담당하고 있으며 인권위 산하조직으로 인권교육훈련센터인 '아태인권 연구소'를 두고 있음. 필리핀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헌법차

원으로 인권교육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② UN 인권교육 10년의 이행 차원으로 '필리핀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 1998-2007'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③ 국가인권정책조정실이라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④ 필리핀 엠네스티, 아키노재단, 필리핀 사범대학 등 NGO와 대학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⑤ 경찰·군대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리핀의 사례는 '정부부처 협력체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인권교육훈련센터 설립', '경찰·군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본부'와 법무성이 담당하고 있음. 일본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인권교육을 위한 UN 10년 행동계획'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 ② 독자적인 인권교육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 ③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④ 오사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교육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점 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휴-라이즈 오사카라는 인권정보센터를 만들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사례는 '인권교육 관련법을 제정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까지 인권교육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인권정보센터를 별도의 법인 형태로 설립했다는 점'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인도의 경우 공공분야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훈련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특징은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②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 ③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과정에 NGO와 유관 단체들이 협력조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④ 공공분야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사회권까지 확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 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의 공공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도의 사례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과정에 NGO와 유관 단체들이 협력조직으로 참여’, ‘공공분야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권까지 확대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시행’,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시행’ 등의 내용에서 의미점을 찾을 수 있음.

## 제2절 결론 및 함의

- 인권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전수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한 가치와 태도,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며, 또한 이에 기반한 적극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인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기제로 부각되고 있음.
- 한국은 일제 식민지의 경험과 분단과 전쟁, 이념갈등, 비민주적 정치 권력의 지배 등 독특한 역사적 질곡으로 인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음. 최근 민주정부에 의해 관습화 되었던 인권침해의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음.
-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한 기반구축도 중요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 더 나아가 한국사회 구성원 전체가 각자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근본적 가치의 변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인권교육은 한국사회의 인권 확대와 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자 실천방법의 위상을 지닌다고 보여짐.
- 본 연구 과제인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실태 분석은,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인권교육의 현 위상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조사와 분석의 대상이 된 5개 공공분야, 10개 직군에서 공권력의 집행과 개인의 권리행사에 영향력이 큰 직무특성을 지니는 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이러한 특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인권교육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일반 행정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사회복지 시설 분야의 인권교육은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교육의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 법무분야와 군대분야의 경우에도, 내실 있는 인권교육의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음. 교육 대상자의 실적은 높았지만,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교재개발 강사진 육성 등을 고려하면, 효과적이고 질 높은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찰분야의 인권교육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육시간의 확대 등 인권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발전이 과제로 나타났음.

○ 공공분야 인권교육실태를 총괄적으로 평가한다면,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직무관련 교육과정 혹은 양성교육과정에 인권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배치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의 진지성과 체계성의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실태분석 결과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가 몇 가지 발견되었음.

- 인권교육이 시행되는 분야별(정부부처별) 내부 규정이 필요함.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주체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공공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극적,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조직의 경우 형식적이고 단편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인권교육이 필요한 정부부처별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함. 법무부의 경우 인권강화를 위해 인권국을 설립하였지만, 인권교육분야는 주요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법무연수원에서 총괄 관리하는 형태였음. 전담부서가 있고 인권교육 규정이 있는 경찰청의 사례와 비교하면 인권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의 원인 중의 하나로 판단됨.

-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연계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개별 부처들의 인권교육 담당자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교재개발과 강사진의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었으며, 이러한 과제는 현 체제에서 개별 부처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있었음. 현재의 체제에서 인권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은 공공분야 인권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점으로 판단됨.

- 이상의 정책과제는 인권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와 개별 정부부처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제도와 기구가 필요함.

- 인권교육에 관련된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 조항에 불과하며,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의 확대와 질적 개선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이념과 방법, 내용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인권교육법 제정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인권교육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기관이 직무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내실 있는 협의기구 혹은 논의체계가 필요함. 예컨대, 필리핀의

정부부처간 약정각서(MOA)체결과 국가인권조정실 설치 사례는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국가인권위원회,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참여)

- 인권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기구가 필요함. 개별 정부부처가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육성하는 전문기관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전담하는 인권교육센터 혹은 인권교육 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이 필요할 것임.

○ 이상에서 언급한 인권교육법과 인권교육기관의 위상과 구조는 정책적 판단사항임. 한국의 정책현실과 정부부처간의 협력 및 갈등관계, 실행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다만, 인권교육은 한국 사회의 각 영역에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고려되어야 하며, 개별 정부부처들이 인권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중요한 고려사항임.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외국의 사례는 다양한 인권교육의 역사와 배경을 지닌 국가들이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와 기구들을 마련하는 방식과 그 효과와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의 인권교육체계를 구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함.



## 참고 문헌

-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06 『교육훈련계획』 .
- 경상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06. 『공무원 교육훈련계획』 .
- 경찰청. 2005. 『인권교육강화기본계획』 .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2005. 『공감, 그리고 실천을 위한 한걸음』 . 경찰  
인권캠프자료집.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2006. 『경찰교육훈련계획』 .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2005. 대한민국 “인권경찰”입니다.- 연간보고서 .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2005. 『인권교육 강화 기본계획』 .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2005. ‘인권교육 실시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2006.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럽·미국의 인권교육실천과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 .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2006. 『2006년 업무보고 자료』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추진본부. 2006. 『신임 위원장 업무보고 자  
료』 .
- 국가인권위원회. 200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참고자료집』 .
- 국가인권위원회. 2005.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
- 국가인권위원회. 2005. 『세계 주요 국가인권기구 현황집』 국제협력담당  
관실 편.
- 공공교육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공공교육팀).
- 국가인권위원회. 2005.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권백서』 .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인권교육발전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 .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군내 구급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  
파악』 .

-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 국가인권위 소장 자료집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일본편』 .
- 국방부. 2006. 인권관련 교육현황 (공군본부 이참부 교육처).
- 김열수. 2006년. 『군대 인권교육 현황 및 향후 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세미나 자료.
- 김철준. 2006. “인권교육 법제화의 주요 쟁점”. 『인권교육법제화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
- 배경내. 2005. “법제화 자체보다 법제화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 .
- 법무연수원. 2005. 『교육훈련계획』 .
- 법무연수원. 2006. 『교육훈련계획』 .
- 법무연수원. 2006. 『인권교육 편성 현황』 .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4. 『인권과 평화』 - 제4권 1호.
-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심포지움 자료집.
-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심포지움 자료집.
- 인권운동사랑방. 2000년. 『1회 민간단체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샵』 자료집.
- 자치인력개발원. 2005. 『교육훈련계획』 .
- 정성호. 2005. “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 .
- 중앙공무원교육원. 2005. 『교육운영계획』
- 중앙공무원교육원. 2006. 『교육운영계획』
- 조난심. 2005. “학교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 『인권교육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 .
-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006. 『교육훈련계획』
-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2001. 『인권교육과 평화교육 국가 정책 방안』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교육운영계획』  
허종렬. 2006. “인권교육 법제화의 필요성”. 『인권교육법제화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

인도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nual Report 2004-2005』 .

Richard Pierre Claude. 1996. 『Education for Human Rights-The Phillipines and beyond』 . University of the Phillipine Press.

UNHCHR. 2003.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Treaties』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hr.gov.ph>)

휴-라이츠오사카 홈페이지 [www.hurights.or.jp](http://www.hurights.or.jp)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인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hrc.nic.in>



## 부 록

### 1. 인권 교육 사례

- 1) 검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사례
- 2)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사례
- 3)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사례
- 4) 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인권강사 양성과정
- 5) 사회복지분야 인권 증진 프로그램 사례

### 2. 설문조사지

## 1) 검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사례

-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5년 10월 18일부터 21일(3박 4일간)에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경기 양평)에서 시행한 검찰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임.

### ■ 교육일정

	1 일차 (10.18.화) (사립·주제 입문)	2 일차 (10.19.수) (인권감수성 증진)	3 일차 (10.20.목) (문제인식 및 해결)	4 일차 (10.21.금) (확산하기와 정리)
오전 09:00 ~12:00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12:00~) 및 오리엔테이션</li> <li>담당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18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관련 인권쟁점사례 (18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설계 및 기법설계(90분)</li> <li>◦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구성 발표 (9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창원(모더레이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 신양군(전북대) 천진호(경북대) 김성학(모더레이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수료식 (60분)</li> </ul>
오후 14:00 ~18:00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열기 (12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경험한 인권현장</li> <li>◦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14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함께 서로 찾기(Work Shop) (120분)</li> <li>◦ 검찰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으로 or 용문산 관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 김창원 (모더레이터)</li> </ul>	<p>담당: 천진호(경북대) 윤경아(모더레이터)</p>	<p>담당: 신양균(전북대) 김성학(모더레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그리고 그리고 공권력 (12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적 인권기준 이해(10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 만들기 (Vision Tour) (120분)</li> <li>-인권이 보호되는 바람직한 미래상</li> </ul>	
	<p>담당: 김창원 (모더레이터)</p>	<p>담당 :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윤경아(모더레이터)</p>	<p>담당 : 김성학 (모더레이터)</p>	
<p>저녁 19:00 ~21:00 (2시간)</p>	<p>장애인, Rock 그룹 '소리올림' 공연 및 느낌 나누기 등</p>	<p>터부토론(120분)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p>	<p>마음다짐(80분) - 나의 실천 약속 만들기</p>	
	<p>담당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p>	<p>담당: 천진호(경북대) 윤경아(모더레이터)</p>	<p>담당 : 김성학 (모더레이터)</p> <p>친교 및 정보 교환 (80분) - 뒷풀이</p>	

※ 체육행사: 2일차, 3일차 점심시간 활용

## 2)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사례

-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5년 10월 11일부터 24일(3박 4일간)에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경기 양평)에서 시행한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임.

### ■ 교육일정

	1일차 (10.11.화) (사립 · 주제입문)	2 일차 (10.12.수) (인권감수성 증진)	3 일차 (10.13.목) (문제인식 및 해결)	4 일차 (10.14.금) (확산하기와 정리)
오전 09:00 ~12:00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12:00~)</li> <li>◦ 오리엔테이션 담당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li> </ul>	<p>내안의 편견 벗어나기(180분)</p>	<p>교정관련 인권쟁점 사례 (18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설계 및 기법소개(90분)</li> <li>◦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 발표(90분)</li> </ul>
		<p>담당: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창원 (모더레이터)</p>	<p>담당 : 진수명 (국가인권위원회) 고상준(모더레이터)</p>	<p>담당 : 김철홍 (국가인권위원회) 고상준 (모더레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및 수료식(60분)</li> </ul>
오후 14:00 ~18:00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음열기 (12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경험한 인 권현장</li> <li>- 교도소 사람들 그리고 인권</li> </ul>	<p>Workshop(120분) - 교정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으로 or 용문산 관광</li> </ul>
	<p>담당 : 김창원 (모더레이터)</p>	<p>담당 : 이승호(건국대) 윤경아(모더레이터)</p>	<p>담당 : 진수명 (국가인권위원회) 고상준(모더레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 인권 그리고 공권력 (12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관련 국제인 권협약, 국내법이 해(100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sion Tour (120분)</li> <li>- 인권이 보호되는 바람직한 미래상</li> </ul>	
	<p>담당 : 김창원 (모더레이터)</p>	<p>담당 : 이호중 (한국외국어대) 윤경아(모더레이터)</p>	<p>담당 : 고상준 (모더레이터)</p>	

저녁 19:00 ~21:00 (2시간)	문화패 공연 (60분)	◦ 터부토론(120분)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마음다지기(80분) - 나의 실천약속 만들기	
	<Rock 그룹 '소리어올림'>		담당 : 고상준 (모더레이터)	
	소통마당(60분) - 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만남	담당 : 이승호(건국대) 이호중(외국어대) 진수명(국가인권위) 윤경아(모더레이터)	◦ 친교 및 정보교환 (80분) - 뒷풀이	

※ 체육행사: 2일차, 3일차 점심시간 활용

### 3)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사례

○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3박 4일간)에 흥원연수원(경기 파주)에서 시행한 군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임.

#### ■ 교육일정

	1 일차 (12.13.화) (사قم·주제입문)	2 일차 (12.14.수) (인권감수성 증진)	3 일차 (12.15.목) (문제인식 및 해결)	4 일차 (12.16.금) (메아리와 정리)
오전 09:00 ~12:00 (3시간)	등록 (11:30~12:00)	내안의 차별 및 편견 벗어나기 - 성차별·성폭력을 중심으로	군인의 인권보장 길 찾기 - 군대 인권목록제시	◦ 인권교육의 목표 담당: 김철홍 (인권교육담당관)
			담당: 송기춘 교수 (전북대)	◦ 인권교육 교수 설계·소개
(4시간 30분)	◦ 마음열기	시뮬레이션 토론 - 멀치사건 사례 등 (군인의 덕목은 복종 인가?)	군관련 인권쟁점사례 - 외국 인권보장사례 - 위원회 조사/결정 사례	담당: 노석준 교수 (성신여대) ◦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 사례 발표
			담당: 권인숙 교수 (명지대)	담당: 이계수 교수 (건국대)
	담당: 고상준 (아테나워 재단)	담당: 최강욱 변호사 (법무법인 청백)	담당: 송기춘 교수 (전북대)	점심(13:00~)  집으로

	<p>인간, 인권 그리고 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지식 및 감수성 증진 활동</li> <li>- “인권이란 무엇인가” 강의</li> </ul>	<p>인권의 시각에서 본 한국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인권상화야의 역사적 이해</li> </ul>	비폭력 대화기법	
	담당: 오동석 교수 (아주대)	담당: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담당: 케서린 한 교수 (이화여대)	
	저녁 식사 (17:30 ~ 19:00)			
<p>저녁 19:00 ~ 21:00 (2시간)</p>	<p>인권영화감사 및 느낌 나누기- 별별 이야기(애니)</p>	<p>간담회 - 군 사상자 가족과 함께</p>	<p>군 인권보호 네트워킹</p>	
	<p>담당: 김규홍 (인권교육담당관실)</p>	<p>담당: 정재영 (국군사상자유가족연대)</p>	<p>담당: 김규홍 (인권교육담당관실 학생대표)</p>	

#### 4) 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인권강사 양성과정

○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4박 5일간)에 경찰종합학교(인천 부평)에서 시행한 경찰 대상 인권강사양성 프로그램임.

##### ■ 교육일정

- ▷ 일시 : 2005. 6. 27.(월) ~ 7. 1.(금)
- ▷ 대상 : 총 20명(경찰 각급학교 교수요원 15,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요원 5)
- ▷ 시간 : 총 35시간(4박5일, 시간시간 제외)
- ▷ 장소 : 경찰종합학교 (인천 부평)

##### ◆ 6월 27일 (월)

시간	교육 내용	교수 방법 및 특징
09:00 ~12:00	마음열기(고상준) 인권교육 이해(고상준, 김철홍) 1. 인권교육의 접근원리 2. 인권교육의 교수방법	자기소개 전단, 컨디션 온도계, 인터뷰게임, 뗏목여행, 편집회의, 따로 또 같이, 강의안 작성 게임
점 심 식 사 (12:00 ~ 13:30)		
13:30 ~17:30	경찰과 인권 Workshop(고상준, 양동훈) 1. 경찰 직업의 특성 및 활동환경/조건 2. 민원인에 대한 이해 3. 경찰과 경찰의 업무 그리고 경찰의 인권	카드 브레인라이팅, 요리조리, 전신사진, 그룹 브레인라이팅, 포포 스탠딩
18:00 ~20:00	앞 풀이(김철홍)	교육소감나누기 및 상호 의사소통

◆ 6월 28일 (화)

시간	교육 내용	교수 방법 및 특징
09:00 ~12:00	인권보호하기 교수법 1 (고상준) 1. 인권교육 모델 탐색: 교수경험 나누기 2. 경찰관의 인권보호 프로그램: 거리의 심판자 모델	별집, 번개, For-You Brain Writing, 문장퍼즐, 번호게임, 두 마음 토론
점 심 식 사 (12:00 ~ 13:30)		
13:30 ~17:30	인권감수성키우기 교수법 연습1 (김희은) 1. 경찰업무의 인권관련적 특성 이해 2. 시민/여성에 대한 이해	참여학습: 체크리스트, 메타플랜, 작업기, 토론 및 발표, 편지 작성 등

◆ 6월 29일 (수)

시간	교육 내용	교수 방법 및 특징
09:00 ~12:00	인권보호하기 교수법 연습2 (고상준) 1. 경찰내부의 문화와 인권 2. 근무 장소와 대상에 따른 인권수호 방법찾기	퍼즐, 퀴즈, 결정게임, 그리고 다양한 좌석배치방법 및 효과, 강의구성 방법, 질문방법, 수사법 등을 익히는 시간
점 심 식 사 (12:00 ~ 13:30)		
13:00 ~17:30	인권감수성키우기 교수법 연습2(장윤경) 1. 청소년 이해 2. 다양성과 차이 존중하기 : 외국인 노동자를 예로	참여학습: 찬반토론, 시나리오 쓰기, 모서리 게임, 이미지 작업 등

◆ 6월 30일 (목)

시간	교육 내용	교수 방법 및 특징
09:00 ~12:00	갈등 해결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장윤경) 1. 갈등 드러내기 2. 갈등 유형 테스트 3. 문제해결 4원칙 배우기	카드 브레인라이팅, 개인간 갈등 유형 테스트, 팀별로 브레인스토밍 발표. 4가지 원칙에 대한 갈등상황을 예로 들어 해결책을 찾아보며 습득
점 심 식 사 (12:00 ~ 13:30)		
13:30 ~14:30	의사소통 기술 향상 교수법 연습(장윤경) 1. 적극적인 듣기 2. 바꾸어 말하기 3. 나 전달법	카드 브레인스토밍, 팀별 브레인스토밍, 발표
14:30 ~17:30	갈등 해결능력 향상 교수법 연습(장윤경) 1. 협상 실습 2. 중재의 3원칙 배우기 3. 중재의 5단계 배우기 4. 중재 실습	시나리오를 익힌 후 역할극을 하고 발표.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여 중재 원칙과 과정 습득
18:00 ~20:00	뒤풀이(김철홍)	교육소감 및 상호의사소통

◆ 7월 1일 (금)

시간	교육 내용	교수 방법 및 특징
09:00 ~12:00	교육기획 연습 (고상준) 1. 교수설계 방법 2. 교육기획 방법 3. 교수방법의 순서와 배치, 중/대형 교수 방법	중/대형 교수방법으로는 터부게임, Vision Tour 등을 소개
점 심 식 사 (12:00 ~ 13:30)		
13:30 ~17:00	인권수호자로서의 경찰되기 (김희은) 1. 인권친화적 경찰조식되기 2. 인권지킴이로서의 나의 비전선언문 작성하기	참여학습: 체크리스트, 퀴즈, 그림 그리기, 모의재판 등
17:00 ~17:30	1. 교육평가 하기 2. 수료식	연수 만족도 설문지 작성 등 표창 및 수료증 수여

## 5) 사회복지분야 인권 증진 프로그램 사례

○ 여기서 소개하는 사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07년 시행예정인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임.

○ 세부사업개요

- 사업명: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현장의 인권관점 확대와 전문성 강화
- 사업기간: 2007. 1. 1 ~ 2007. 12. 31까지
- 사업대상: 전국 사회복지생활시설(개인시고시설포함) 2,262개소의  
핵심관리자인 사무국장 또는 생활복지사 2,262명의 60%
- 교육인원: 1,357명(국장 또는 생활복지사)
- 사업주관 및 후원 : 우리협의회 ·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세부사업(교과)내용

- 사업수행인원 : 총 19인(중앙 3인, 16개 시·도의회 각 1인)
- 강사섭외: 사회복지학계, 인권NGO 전문가, 우수평가 사회복지시설장, 지역별 복지정책 담당관 등

세부 목표	투 입			산출근거	
	교육과목	교육내용(진행방법)	교육 시간	참여 인원	시행 횟수 시간
인권 이해와 실천	일반적인 인권의 개념과 배경	- 인권의 의미, 유형, 배경 - 인권위원회법, 인권선언, 인권교육의 이해 등(강의 및 질의응답)	1.5	1,357	20회, 8시간30분

	사회복지서비스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서비스와 인권</li> <li>- 사회복지현장의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li> <li>- 인권침해 체험 (단막극 영상자료 활용) (강의 및 영상 관람과 질의응답)</li> </ul>	2	"	"
	브레인스토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 시설내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 (각 분야별로 주요 토론내용 발표로 분야별 정보공유)</li> </ul>	1.5	"	"
사회복지서비스 현장 인권 강화	사회복지 실천과 인권의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의 인권관점 확대</li> <li>-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복지</li> <li>- 인권활동가로서의 사회복지인</li> <li>- 사회복지실천과 인권의 달성</li> </ul>	1.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젠테이션기법 강의 및 질의응답</li> </ul>			
	사회복지 정책과 인권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정책과 인권의 구축</li> <li>- 사회복지정책의 인권적 과제</li> <li>- 인권에 관한 질의응답</li> </ul>	1.5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젠테이션기법 강의 및 질의응답</li> </ul>			
	교육과정 평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내용 및 강의기법, 강의시간 적정성</li> <li>- 학습내용 활용</li> <li>- 향후 인권교육발전방향 등 설문 평가</li> </ul>	0.5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일련				
번호				

**공공분야 인권교육 기초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입니다.

본 조사지는 현재 7개 공공분야(경찰, 출입국사무소, 교정, 경찰, 군대, 행정,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으로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6. 9.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교육팀 이성규 02-2125-9883  
 연락처 성공회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김성기 02-2610-4132

**국가인권위원회·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응답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소속 기관명	
소속 부서		직위 또는 담당업무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	

※ 질문을 시작합니다. 해당란에 V표시하거나 적어 주십시오.

■ 귀 기관의 직무교육과 인권교육 관련한 부서 조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기관의 직무교육 전담부서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해주세요.

1-1. 귀 기관의 직무교육 수행을 관장하는 주관부처는 어디입니까?

\* 주관부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을 말함.

( )

1-2. 귀 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자들의 해당 직군에 대해 답해주세요.

\* 법무연수원의 경우 검사, 출입국관리소 직원, 법무행정직 등을 말함.

( )

1-3. 귀 기관의 주요 직무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_\_\_ ① 간부(과장급 이상)                      \_\_\_ ② 일반직원  
\_\_\_ ③ 유관 기관 간부                        \_\_\_ ④ 유관기관 종사자  
\_\_\_ ⑤ 기타 ( )

\* 예를 들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유관기관 종사자에 해당함.

**1-4. 귀 기관에서 직무교육 관련한 법적, 행정적 규정(훈령, 지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명칭	제정일	개정일	해당 조항

- \* 직무교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대한 사항
-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귀 기관의 인권 및 인권교육 전담 부서에 대한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작성해주세요.**

인권 및 인권교육 전담부서	담당 인력 현황	주요업무
(            )	(        명 )	

- \* 예를 들면 경찰청의 경우 인권 전담부서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있음.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2-1. 귀 기관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한 법적, 행정적 규정(훈령, 지침)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명칭	제정일	개정일	해당 조항

- \* 경찰청의 경우 인권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을 내부 훈령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
-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교육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3. 귀 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_\_\_ ① 예 (☞ 4번으로)                      \_\_\_ ② 아니오 (☞ 22번으로)

4.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과정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p>* 아래 제시한 작성기준과 인권교육 범주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작성기준은 2006년이며 올해 진행한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까지 포함한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2006년 1월 - 12월 현황과 계획)</p> <p>* ‘인권교육 범주’에 대한 범례</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u>직무 분야와 관련한 인권 교육</u> - 장병과 인권, 수사와 인권, 행정과 인권, 시설과 인권 등</li><li>2. <u>인권일반교육</u> - 인권의 정의, 역사, 국제인권기구, 국내인권기구 등</li><li>3. <u>자유권 교육</u> - 신체, 거주, 이주,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등과 관련한 교육</li><li>4. <u>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과 관련한 교육</u> - 외국인노동자, 탈북자, 성소수자의 인권과 그들의 차별에 대한 교육</li><li>5. <u>여성 및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u> - 성희롱, 양성평등, 여성인권 등</li><li>6. <u>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교육</u> -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인권 교육,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등과 같은 교육</li></ol> <p>※ 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론 및 정책교육, 자원봉사는 해당되지 않음.</p>
--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원	시행여부	강사	
						성명	현직 및 경력
직무 분야와 관련한 인권 교육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인권 일반 교육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자유권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사회적 소수자 및 그들의 차별 관한 교육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여성 및 양성 평등에관 한 인권 교육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사회적 약자에 관한 인권 교육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기타					___ ① 시행 ___ ② 예정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재 귀 기관에서는 인권관련 특별 프로그램(인권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_\_\_ ① 예 (☞ 5-1번으로)                      \_\_\_ ② 아니오(☞ 6번으로)

5-1. 인권 관련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면 아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프로그램 명	연간시행 회수	평균 참여인원	주요 교육내용	특이사항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재 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방법'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작성해주세요.

총 교육 과정 수	강의식	참여형 교육	현장체험형 교육
	(            )회	(            )회	(            )회

\* 참여형 교육 - 토론, 역할극 방식 활용하는 교육방법

\* 현장체험형 교육 - 캠페인, 현장방문, 체험활동과 같은 교육방법

7.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 강사 양성이나 지도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_\_\_ ① 예(☞ 7-1번으로)                      \_\_\_ ② 아니오(☞ 8번으로)

7-1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래 표를 작성해주시십시오.

사업명	교육기간	참여인원	주요교육내용	특이사항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8.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예산의 부족
- ② 인력의 부족
- ③ 활용할 수 있는 교재의 부족
- ④ 조직내 인식 부족
- ⑤ 인권교육에 필요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의 협조체제 미비
- ⑥ 인권교육 관련 시행 지침(가이드라인)의 미비
- ⑦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
- ⑧ 적절한 강사진의 부족
- ⑨ 기타( )

9.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경험의 부족
- ② 인권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의 부재
- ③ 담당자 본인의 인권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 ④ 조직내 인식 부족
- ⑤ 상부 지침이나 규정이 없음
- ⑥ 국가인권위원회나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부재
- ⑦ 인권교육 관련 교재의 부족
- ⑧ 기타 ( )

■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0.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습니까?

\_\_\_ ① 예(☞ 10-1번으로)                      \_\_\_ ② 아니오(☞ 11번으로)

\* 강사가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아니오'에 답해주십시오.

10-1) 인권교육 교재가 있다면 아래 표를 작성해주세요.

\* 여기서 인권교육 교재라 함은 순수하게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재를 말함.

교재명	저자	발행처	자료 형태	활용 교과목
			___ ① 공식출판 ___ ② 자체제작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1. 현재 귀 기관에서는 교재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_\_\_ ① 예 (☞ 11-1번으로)                      \_\_\_ ② 아니오(☞ 12번으로)

11-1) 개발 예정인 인권교육 교재가 있다면 아래 표를 작성해주세요.

교재명	책임 준비 단위	자료 형태	활용 목적
		___ ① 공식출판 ___ ② 자체제작	
		___ ① 공식출판 ___ ② 자체제작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현재 귀 기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인권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_\_\_ ① 예(☞ 12-1번으로)                      \_\_\_ ② 아니오(☞ 12-5번으로)

12-1) 활용하고 있는 교재에 대해 아래 표를 작성해주시오.

국가인권위 교재명	활용 교과목	비고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2-2)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발행 인권 교재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_\_\_ ① 매우 만족 \_\_\_ ② 만족 \_\_\_ ③ 보통 \_\_\_ ④ 불만족 \_\_\_ ⑤ 매우 불만족

12-3)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발행 인권교육용 교재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

12-4)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발행 인권교육용 교재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2-5) 국가인권위에서 발행한 인권교육 교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다음은 인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위와의 네트워크 및 기관 자체 내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직된 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 \_\_\_ ① 공식적인 인권교육 협력 체계가 존재 (☞ 13-1번으로)
- \_\_\_ ② 인권교육 관련한 제반 사항(강사, 계획수립 등)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와 협력
- \_\_\_ ③ 국가인권위가 자료나 정보 요청할 경우 협조
- \_\_\_ ④ 국가인권위와의 협력이나 협조 관계가 전혀 없음
- \_\_\_ ⑤ 기타 ( )

13-1)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식적인 협력 네트워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작성해주시시오.

국가인권위와의 협력 네트워크 명칭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회의 주기	비고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 귀 기관에서는 해당 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문회의나 연구모임 등이 있습니까?

- \_\_\_ ① 예(☞ 14-1번으로)
- \_\_\_ ② 아니오(☞ 15번으로)

14-1) 자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직된 자문회의나 연구모임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작성해주시시오.

자체 모임의 명칭	참여 인원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회의 주기	비고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4-2)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 모임 참여자의 경력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작성해주시오.

참여자 총인원	해당직종 종사자	인권분야 전문가	인권시민운동 단체 활동가	교육분야 전문가	기타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다음은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목적으로 수립된 계획서 및 보고서 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입니다.

15. 현재 귀 기관에서 2005년부터 최근 2년간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된 계획서, 지침서, 보고서가 있을 경우 아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계획서, 지침서, 보고서의 명칭	작성 시기	비고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6. 현재 귀 기관에서는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예정) 중인 계획서, 지침서, 보고서가 있습니까?

\_\_\_ ① 예(☞ 16-1번으로)                      \_\_\_ ② 아니오(☞ 17번으로)

16-1) 현재 인권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수립(예정)하고 있는 계획서 및 보고서에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작성해주시오.

계획서, 보고서의 명칭	작성 시기	비고

\* 칸이 부족할 경우 추가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현재 인권(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인식과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7. 귀하는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직무상 인권보호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 \_\_\_ ② 인권보호 취약 계층의 구제를 위해서
- \_\_\_ ③ 국가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 \_\_\_ ④ 인권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중요해서
- \_\_\_ ⑤ 기타 ( )

18. 현재 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시간은 적절한 인권교육을 위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부족하다
- \_\_\_ ② 보통이다
- \_\_\_ ③ 많은 편이다

18-1) 적절한 인권교육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요구되는 인권교육 시간은 연간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1인당 ( )시간

19. 현재 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적절하다
- \_\_\_ ② 적절한 편이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매우 부적절하다
- \_\_\_ ⑤ 매우 불만족

19-1)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 방법을 개선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 )

20. 현재 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매우 효과적이다
- \_\_\_ ② 대체로 효과적이다
- \_\_\_ ③ 별로 효과가 없다
- \_\_\_ ④ 전혀 효과가 없다

21.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을 직무교육에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23번으로)

- ① 현행대로 직무교육에 포함해서 하는 방안이 무난하다
- ② 국가인권교육훈련센터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구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 ③ 현행 직무교육에 인권관련 특별 교육 과정을 강화하여 개선해야 한다
- ④ 민간 인권 기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 ⑤ 기타 ( )

22. 현재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교육대상자들의 요구가 없어서
- ②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어서
- ③ 현행 직무교육에 인권교육과 유사한 범주의 교과정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 ④ 조직 내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 ⑤ 기타 ( )

22-1) 귀하는 귀 기관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대체로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없다
- ④ 전혀 필요없다

22-2) 귀 기관에서 향후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

---

23.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

---

24. 인권교육 전반(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개인적 의견 등)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